

北韓 核問題와 南北關係

— 展開過程 및 發展展望 —

1994. 4

吉烜宇(政策研究室長)

朴英鎬(政策研究室 研究委員)

朴鍾喆(政策研究室 研究委員)

黃炳憲(政策研究室 責任研究員)

朴淳成(政策研究室 責任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序 文

北韓은 핵무기개발 意圖를 포기하지 않은 채,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 권력승계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핵무기개발을 협상카드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主북·미대화, 從남북대화」라는 전략에 입각하여 한국을 疏外시킨 가운데 핵카드를 지렛대로 對美關係改善을 추구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는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民族內部 問題인 동시에 동북아 안보를 불안하게 하고 핵비확산조약 체제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國際問題라는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의 해결방안은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 및 세계의 안전과 평화를 염두에 두고 모색되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 핵문제의 이중적 성격을 감안하여 國際 共助體制를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남북대화에 의한 「비핵화공동선언」 이행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방법에 의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관계 진전의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대북사찰, 북·미회담, 남북대화가 交叉하는 가운데 북한 핵문제는 앞으로도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는 한·미관계 및 國際 共助體制를 공고

히하면서 북한 핵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한반도 및 동북아의 긴장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본 보고서는 북한 핵문제의 대두 경위 및 전개과정을 토대로 핵관련 북한의 意圖 및 戰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해결노력을 검토함으로써 북한 핵문제에 대한 올바른 理解를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다.

본 보고서가 향후 우리 정부의 정책구상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통일문제 관련 기관 및 각계 인사들의 균형된 연구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1994년 4월

民族統一研究院

院長 李 秉 龍

一 目 次

第Ⅰ章 북한 핵문제 및 남북관계 展開過程	1
1. 북한 핵문제 대두경위	1
2. 북한 핵관련 남북관계 展開過程	8
가. 「비핵화 공동선언」 채택과 남북대화	8
나. 북한의 NPT 脫退 宣言과 남북대화 斷絶	14
다. 북·미 고위급회담과 남북간 特使交換 논의	16
第Ⅱ章 핵관련 북한의 意圖 및 戰略	25
1. 북한의 意圖 및 目標	25
2. 段階別 북한의 意圖	28
가. 북한의 NPT 脫退 宣言 以前	28
나. 북한의 NPT 脫退 宣言 以後	33
다. 제2단계 북·미회담 以後	54
3. 핵관련 북한의 行態 및 協商戰略	68
가. 主要 行態 分析	68
나. 協商戰略 및 戰術	71
第Ⅲ章 우리 政府의 북한 핵문제 解決 努力	77
1. 우리 政府의 基本立場	77
2. 具體的 해결 노력	79

가. 「비핵화 공동선언」과 IAEA 핵안전조치 협정 체결 유도	79
나. IAEA 사찰과 남북 상호핵사찰 並行 推進	85
다. 國際共助體制 활용	90
라. 북·미회담 창구 활용	94
마. 남북 特使交換 협의 창구 활용	98
바. 對話를 통한 문제해결의 막바지 노력	103
第Ⅳ章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 發展展望	108
1. 북한 핵문제의 展開方向	108
2. 남북관계의 發展展望	114
添附: I. 북한 핵관련 주요 文件	
II. 북한 핵관련 주요 日誌	

第 I 章 북한 核問題 및 남북관계 展開過程

1. 북한 核問題 대두경위

북한의 핵개발 역사를 세 時期로 구분해 볼 수 있는 바, 제 1기는 북한이 1956년 3월 소련과 「조·소 원자력 평화이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이후 1974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가입하기 이전까지의 시기로서 원자력 개발 초기단계이다. 이 기간에 북한은 소련과 협정을 체결하여 소련의 핵기술 지원을 받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매년 수십명에 이르는 핵관련 과학자들을 「두브나 핵연구소」에 파견하여 기술훈련을 받게 하였다. 또한 북한은 1962년 영변에 원자력연구소를 설치하였고, 1965년 6월 소련으로부터 소형 연구용 원자로 IRT-2000¹⁾을 도입하여 핵개발을 위한 연구기반을 조성하는 등 원자력 개발체제 확립에 진력하였다. 이 기간에 북한은 에너지源으로서 원자력의 중요성과 함께 핵무기 개발계획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2기는 북한이 IAEA에 가입한 1974년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의 기간이다. 북한은 1974년 9월 IAEA에 가입하고 1977년 9월에는 IRT-2000 원자로에 대해 IAEA와 「부분 핵

1) IRT-2000: 1965년 북한이 소련으로부터 도입한 원자로로 용량 2MWt (1MW = 1,000KW)의 동위원소 연구 및 훈련용(Isotope-production Research and Training Reactor)이라는 데서 IRT-2000로 명명되었으며, 이후 북한이 용량을 증가시켜 현재는 8MWt(8,000KW) 임.

안전조치 협정」²⁾을 체결하여 이 원자로에 대한 사찰을 받았다. 이와 함께 북한은 1970년대에 일본과 프랑스, 그리고 1980년대 초 서독과 原電 도입을 위한 교섭을 하는 등 원자력발전소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이 시기에 한국은 대북 군사력 열세를 극복하기 위하여 재래식 戰力의 증강 및 방위산업 건설에 진력하였고, 월남패망과 함께 미국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방침이 세워짐에 따라 1970년대 중반 안보차원에서 핵개발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이 1977년 한국에 대한 프랑스의 재처리시설 수출을 중단시킴으로써 한국의 핵개발 사업은 중단되었으나, 북한은 한국의 의도에 자극받아 핵무기 개발을 구체적으로 구상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 제3기는 1981년부터 현재까지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한 시기이다. 이 기간 동안 북한은 원자력 교육기관을 증설하고, 정무원 산하에 원자력 공업부를 정식 설치하였다. 또한 핵개발의 주요시설인 제2원자로를 독자적으로 완공했으며, 재처리시설 건설도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1985년 12월 북한은 소련과 「원자력발전소 건설 관련 경제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소련으로부터 440MW급 원자력 발전소 4기의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협정 발효기간의 종료로 同 도

2) IAEA 부분 안전조치 협정: NPT(제3조)는 핵무기 비보유 당사국에 대해 IAEA와 전면 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NPT 비가입국은 동 의무에 귀속되지 않는 바, IAEA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NPT 비가입국이나 NPT 핵무기 보유 당사국을 대상으로 '부분 안전조치 협정'을 맺고 사찰 등 안전조치를 실시함.

입계획은 중단되었다. 그리고 소련측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북한은 1985년 12월 12일 핵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하였으나, NPT 가입후 18개월 이내 체결해야 하는 핵안전조치 협정 체결의무(제3조 4항) 이행을 계속 지연함으로써 핵무기 개발 의혹을 야기하였다. 더욱이 1989년 9월 프랑스의 상업위성 SPOT의 영변 핵시설 촬영사진이 공개됨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증대되었다. 이 위성 사진으로 북한이 1987년 이후 가동중인 자체 설계한 5MW급 연구용 원자로외에 50MW급, 200MW급 원자로 및 핵재처리 시설이 新規 건설중임이 확인되었다.

현재 북한의 핵무기 보유 여부를 판정할만한 정확한 자료와 분석은 결여되어 있으나, 북한은 재처리시설을 포함한 核燃料 週期를 완성한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핵개발 상황에 대한 미국, 러시아 등의 정보 분석결과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재 최소한 1~2개의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자체 抽出·保有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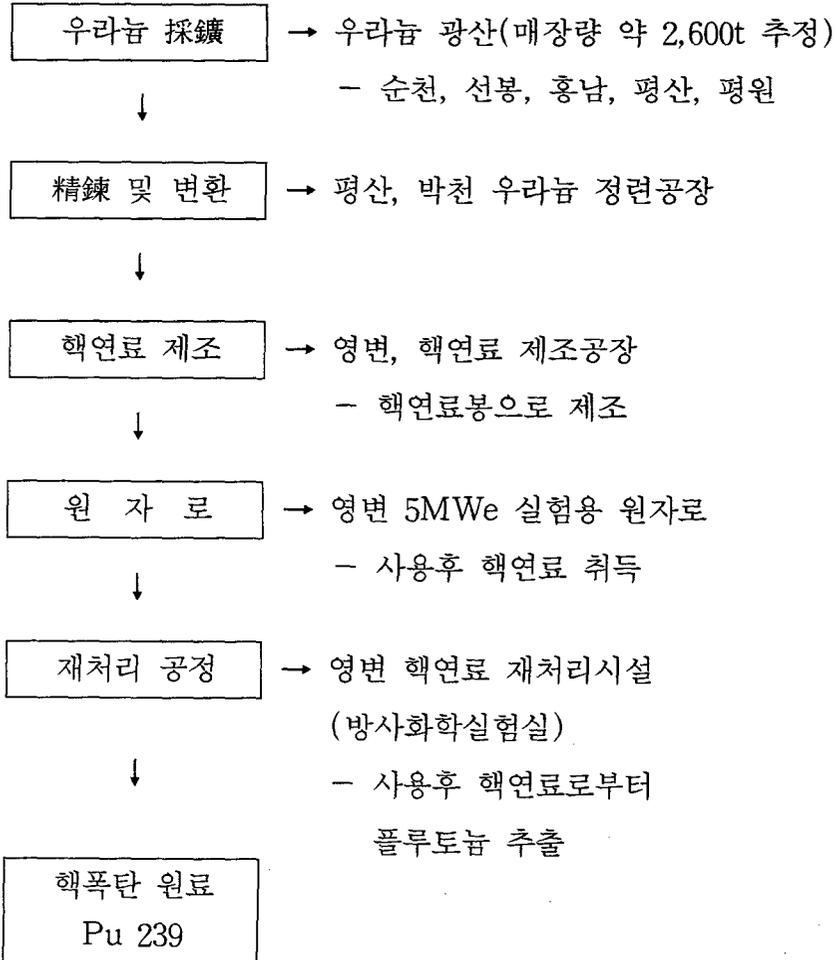
- 러시아 대외정보처 프리마코프(Yevgeny Primakov) 국장: “북한이 상당히 발전된 핵기술을 갖고 있으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Korea Herald, '93. 1. 30)
- 미국의 울시(James Woolsey) CIA국장 미의회 증언:

“북한이 최소한 한개의 핵무기 제조에 충분한 핵물질을 생산했을 가능성이 크다.” ('93. 2. 24, '94. 1. 25)

- 한국 안기부: 북한이 7~22Kg의 플루토늄을 추출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1994~5년 쯤 1~3개의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 '93. 5. 14)
- 미 CIA 보고서(National Intelligence Report): “북한이 이미 한개의 핵무기를 보유했을 가능성이 50%이상이며 최대 12kg의 플루토늄을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다.” ('93. 12. 26 NYT 보도)
- 러시아 국방부 참모본부: 북한이 이미 최소한 1~2개 핵폭탄을 제조했다는 결론의 보고서를 작성함. (일본 週刊文春, '94. 1. 27)

북한의 핵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핵안전조치 협정 체결을 촉구하자, 북한은 1990년 2월 핵안전조치 협정 체결 및 IAEA사찰의 전제조건으로 핵보유국의 비핵국가에 대한 핵위협 금지, 한반도 핵무기 철수, 대북한 핵무기 不使用의 법적 보장 등을 요구함으로써 핵안전조치 협정 체결을 지연하면서 국제사회의 압력을 회피하였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내 미국의 전술핵무기 철수, 남한내 核不在 선언 등을 통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남북간 「비핵화 공동선언」 채택('91. 12)과 북한의 IAEA 핵안전조치 협정 체결('92. 1)을 유도하였다.

<북한의 핵개발 관련시설>



북한 핵개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비핵화 공동선언」에 의거한 남북 상호핵사찰을 통해 IAEA 사찰이 補完되어야 한다.

IAEA사찰은 신고된 핵물질 및 핵시설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특정 핵시설 및 핵물질을 보고서에서 누락·은닉할 경우, 효과적인 사찰 실시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IAEA 사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남한은 「비핵화 공동선언」에 입각, 북한과 함께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JNCC)를 구성('92. 3. 19)하고 상호핵사찰 규정 채택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사찰대상 및 방법에 대한 양측의 의견대립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1992년 5월부터 실시된 IAEA의 대북 핵사찰 결과, 북한 핵개발 계획에 대한 의혹이 증대되는 가운데 IAEA가 1993년 2월 정기이사회에서 북한 핵시설에 대한 위성사진을 공개함으로써 북한 핵에 대한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었다.

한편 IAEA는 이라크의 핵무기 비밀개발을 사전 탐지하는데 실패한 후 사찰체제를 대폭 강화하였는 바, 강화된 사찰체제는 ① 미신고 핵시설 및 핵물질에 대한 정보수집 능력이 없는 IAEA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3국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 부여, ② 의혹이 있는 미신고시설 및 물질에 접근할 수 있는 특별사찰 권한 재확인, ③ 피사찰국가의 특별사찰 거부시 유엔 안보리에 상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등으로 구성되었다. IAEA는 북한이 제출한 최초 보고서의 내용과

사찰 결과간에 「중대한 不一致」를 발견함에 따라 북한의 핵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강화된 사찰체제에 입각, 1993년 1월 제6차 임시사찰시 영변 핵단지내의 2개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청하였다. IAEA의 특별사찰 요구에 대해 북한은 IAEA는 제3국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여 사찰할 권리가 없으며, 영변의 미신고시설은 일반군사시설로서 IAEA의 사찰대상이 아니라고 강변하면서 특별사찰을 거부하는 한편, 부당한 조치가 강요된다면 「自衛的 措置」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IAEA는 북한에 대해 1993년 3월 25일까지 특별사찰 수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93. 2. 25)하였다.

이후 북한 핵문제는 협상창구 및 핵사찰 방식 논의의 변화에 따라 북한의 NPT 탈퇴,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 채택, 제1·2단계 북·미회담, 남북 특사교환 논의, 북·미 실무접촉, 북·IAEA간 사찰협의 등의 순으로 전개되었다. 북한 핵문제를 총체적으로 조망해 볼 경우 발전과정을 아래와 같이 3段階로 구분할 수 있다.

- ① 1단계: 북한 핵문제가 국제적 사안으로 대두된 시기로서 「비핵화 공동선언」 채택, 남북한 핵통제공동위원회의 상호사찰 논의, 북한의 IAEA 핵안전조치 협정 체결 및 IAEA의 임시·일반 핵사찰 실시과정에서 북한 핵개발에 대한 의혹이 집중되고 이를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 시도되었다.

- ② 2단계: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심화된 시기로서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多角的 대응책이 강구되었다.
- ③ 3단계: 북한 핵문제의 해결책 摸索期로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협상 및 남북간 특사교환 논의가 전개되고, 북·미 실무접촉에 따라 북·IAEA간 사찰협상이 본격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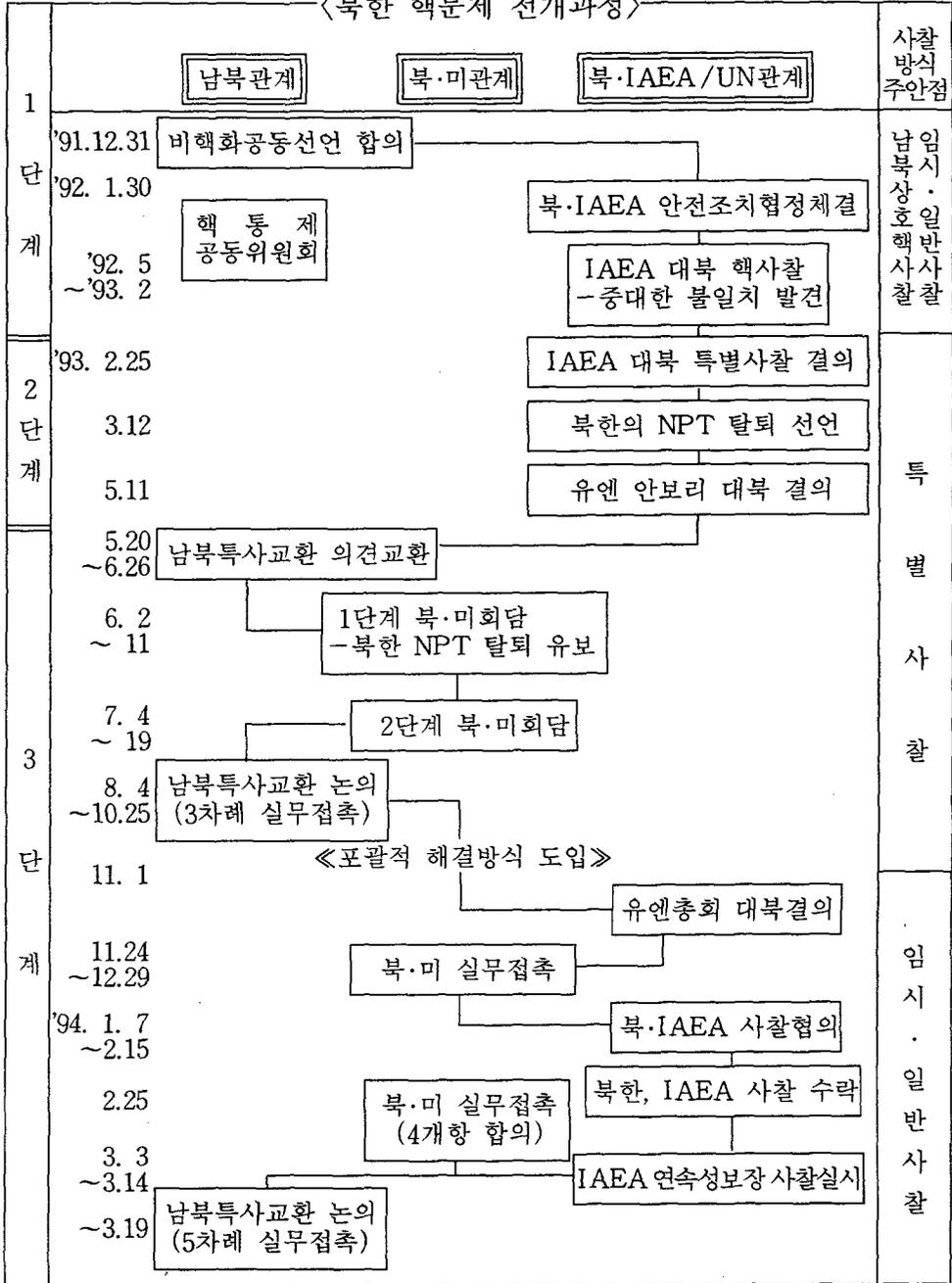
2. 북한 핵관련 남북관계 展開過程

가. 「비핵화 공동선언」 채택과 남북대화

북한은 1950년대 중반 이후 남한에 주한미군 보유의 핵무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한반도 非核地帶化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북한은 1991년 7월 30일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제안」을 통해 구체화된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주장한 바 있다.

1991년 10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핵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등장하였다. 우리측은 북한에게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모든 핵물질 및 핵시설에 대한 국제기구의 사찰을 무조건 수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반면 북한은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에 관한 선언」을 제의하고 동 제안에서 ① 핵무기의 생산, 소유, 반입 금지, ② 핵무기 적재가 가능한 항공기, 함선의 영토 통과, 착륙, 기항 및 일체의 군사훈

〈북한 핵문제 전개과정〉



련 금지, ③ 주한미군 및 핵무기 철수를 위한 공동노력과 同時核査察을 주장하였다.

1990년 중반부터 한·미 양국은 북한의 IAEA 핵안전조치 협정 체결과 핵사찰 수용을 유도함과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체결을 추진하였다. 부시 미대통령의 전술핵 폐기 선언('91. 9. 27)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의 상응조치('91. 10. 5)에 따라 국제적 핵감축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11월 8일 노태우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을 발표하여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사자간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991년 12월 개최된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기본합의서)가 채택되어 남북간에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남북한이 「기본합의서」 타결과 핵문제의 分離論議에 합의함에 따라 핵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은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에 관한 선언」을 수정없이 제시한 반면, 우리측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에 相互核査察 조항을 추가·보완하여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을 제의하였다.

노태우 대통령은 1991년 12월 18일 “우리나라의 어디에도 단 하나의 핵무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한반도의 비핵화와 관련한 발표문」을 통해 남한내 核不在를 천명하였다. 주한미군의 핵철수를 간접적으로 시인한 노대통령의 核不

在 선언은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북한 핵문제가 미해결된 채 「기본합의서」가 채택된 데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가 제기 되는 가운데 발표된 것으로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려는 우리 정부 노력의 일환이었다.

우리측의 核不在 선언에 호응, 북한이 제1차 핵관련 대표접촉('91. 12. 26)에서 非核地帶化 주장을 철회함에 따라 남북한은 1991년 12월 31일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하였다. 더욱이 북한측의 IAEA 핵안전조치 협정 체결의사 표명과 함께 우리측은 '92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을 발표('92. 1. 7)하였다.

남북한이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주요 내용은 ①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 금지, ②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③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

〈「비핵화 공동선언」의 주요내용〉

- ①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의 금지
- ②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 ③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 보유 금지
- ④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해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한 상호핵사찰 실시
- ⑤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JNCC)의 구성·운영

설보유 금지, ④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해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한 상호핵사찰 실시, ⑤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으로 되어 있다.

남북한은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함으로써 남북 당사자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합의에 의해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으며, 이와 함께 「기본합의서」 이행과 한반도 비핵화를 並行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1991년 12월 「기본합의서」 채택 이후 남북관계는 화해·협력의 기본틀 구축단계에 있었던 바, 남북한은 「비핵화 공동선언」의 발효('92. 2. 19)이후 이를 이행하기 위해 「남북 핵통제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남북한은 “핵통제공동위 1차회의 이후 2개월 정도의 기간안에 「비핵화를 檢證하기 위한 문건」을 채택하는데 공동 노력하며, 이후 20일 안에 사찰을 시작한다”는 「공동발표문」에 합의('92. 3. 14)하고 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92. 3. 19), 남북 相互核査察의 절차와 범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공동발표문」 이행에 성의를 보이지 않았으며 남북간에 1993년 1월까지 13차례의 핵통제공동위 전체회의, 8차례의 위원접촉, 1차례의 위원장 접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견해 차이로 인해 상호핵사찰 규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측은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 연간 동일횟수의 사찰실시와 24시간전 통보하에 핵시설 및

군사기지에 대한 「특별사찰」³⁾ (challenge inspection) 실시 등을 주장한 반면, 북한은 「의심동시해소 원칙」에 입각, 영변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허용하는 대가로 남한내 모든 주한 미군기지에 대한 사찰 실시를 주장하였다.

〈사찰규정 관련 남북한 입장 비교〉

구 분	남 한	북 한
사찰原則	○ 상호주의원칙	○ 의심동시해소 원칙
사찰方法	○ 정기사찰과 특별사찰 並行실시	○ 특별사찰 거부
사찰對象	○ 핵물질, 핵시설, 핵관련 군사기지 ○ 聖域 不許 * 對稱查察	○ 모든 주한 미군기지 ○ 북측 군사기지 제외 * 非對稱查察

남북한은 「기본합의서」 및 각종 부속합의서를 채택하고 분과위원회 및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북한은 남북 합의사항의 이행 실천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으며, 이인모 문제,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 화랑·독수리훈련, 핵문제 등을 이유로 이산가족, 남북경협, 군사직통전화 가설 문제 등을 협의하기

3) 특별사찰: 상호사찰 협상에 있어 우리측은 모든 핵 활동의 투명성과 예측성을 확보, 완전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일방이 지정하는 장소에 대해 불시에(any time, any place) 실시하는 강제적 성격(challenge inspection)의 사찰을 도입하려 했으나, 북한측의 거부로 무산됨. 이 개념은 IAEA 안전조치협정상(제73조, 77조)의 '특별사찰'과는 다름.

위한 각종 접촉을 중단하였다. 북한은 1992년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시 한·미간 '93년 팀스피리트훈련 재개 논의를 이유로 11월로 예정된 각 공동위 제1차 회의 및 12월로 예정된 남북고위급회담을 무산시켰다. 더욱이 1993년 1월 25일 핵통제공동위 위원장 접촉 이후, 북한은 우리측의 '93 팀스피리트훈련계획 발표('93. 1. 26)를 구실로 핵통제공동위 회의를 일방적으로 거부함으로써 남북대화를 전면 중단시켰다.

1992년 9월 제8차 고위급회담 이후 북측이 남북대화를 거부한 것은 ① 팀스피리트훈련 중지 요구, ② 한·중 수교('92. 8)에 따른 외교환경 梗塞, ③ 남북교류 협력 실시에 대한 內的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상통제 및 체제정비, ④ 남북 상호핵사찰을 지연시키기 위한 시간 획득, ⑤ 한국의 대통령 선거 교란 및 한·미 신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관망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평가된다.

나. 북한의 NPT 脫退 宣言과 남북대화 斷絶

IAEA는 1992년 5월부터 1993년 2월까지 6차례의 임시사찰을 실시한 결과, 북한이 보고한 내용과 사찰을 통한 분석 결과간에 「중대한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IAEA는 영변에 소재한 2개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하였으나, 북한은 IAEA가 제3국 정보에 의한 특별사찰 요구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며 영변의 미신고시설 2개는 일반 군사시설로서 사찰대상이 아니

라고 주장하면서 IAEA의 특별사찰 요구를 거부('93. 3. 10) 함으로써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증폭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2월 25일 취임사를 통해 “어떤 이념이나 사상도 민족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민족우선론을 주창하였으며, 신정부는 「국민적 합의, 공존공영, 민족복리」라는 3대 정책기조하에 새로운 통일정책을 추진하면서 前向的인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미전향 장기수 이인모를 무조건 송환(3. 18)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1993년도 팀스피리트훈련 재개를 이유로 「準戰時상태」를 선포(3. 8)하였고, 한·미 양국의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와 IAEA의 대북한 특별사찰 촉구 결의안을 비난하면서 “나라의 최고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NPT를 탈퇴한다고 선언(3. 12)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NPT 탈퇴 반복의 조건으로 ① 팀스피리트훈련의 영구중지, ② 남한내 미군의 핵무기 및 핵기지 공개, ③ 북한에 대한 핵위협 해소, ④ IAEA의 公正性和 中立性 회복 등을 제시함으로써 협상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으며, 외교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촉구(3. 29)하였다.

膠着狀態에 빠진 남북관계는 북한의 NPT 탈퇴 선언으로 더욱 경색되는 한편,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최대 현안이자 국제 핵확산금지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대두되었다. 한국정부는 정부대변인 성명('93. 3. 12)을 통해 북한의 NPT 탈퇴 선언이 기존의 모든 남북간 합의사항에 대한

신빙성을 상실하게 하는 중대한 행위로 간주한다고 선언하는 한편, 북한이 NPT 탈퇴 성명을 즉각 철회하고 IAEA의 핵사찰을 허용할 것과 남북 상호사찰에도 호응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북한은 남한의 文民政府에 대한 공식비난을 자제하다가 1993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 회의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및 「4개 대남요구사항」(외세의존정책의 포기, 미군철수 의지 표명, 외국군대와의 합동군사훈련 연습의 중지, 미국의 핵우산 제거)을 제기(4.7)하여 통일전선전술의 체계화를 시도함으로써 한·미공조체제를 이완시키는 한편, 핵문제를 북한이 처한 총체적 난국 탈피를 위한 외교적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노정하였다.

이처럼 북한이 남한에 대한 통일전선전술을 포기하지 않는 채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모색하는 반면, 남북당국간 대화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남북대화는 斷絶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다. 북·미 고위급회담과 남북간 特使交換 논의

우리 정부는 북한의 NPT 탈퇴 시한('93. 6. 12)을 앞두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고위급회담 대표접촉을 북한측에 제의(5. 20)하였다. 이 제의는 한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최초의 대북제의로서 6월초 북·미간 고위급접촉 움직임을 고려, 남북 직접대화를 통해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모색하

- | | |
|------------|---|
| '93. 5. 20 | 북한측 강성산 정무원총리 명의 대남서한
- 남북간 최고위급 특사교환 逆提議
- 차관급 실무자 접촉 개최(5. 31) 제안 |
| '93. 6. 22 | 우리측 대북 전화통지문
- 회담형식, 협의대상 등 북측 주장 수용
- 핵문제와 특사교환 절차문제 並行협의 제의 |
| '93. 6. 26 | 북한측 강성산총리 명의 담화
- 특사교환 제안 철회
우리측 정부대변인 담화
- 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간 대화 필요성 강조
- 북측의 성의있는 태도 촉구 |

북한의 NPT 탈퇴 선언 이후, 국제사회의 긴급 현안으로 대두된 북한 핵문제는 남북접촉, IAEA 및 유엔 등의 국제기구와 북한과의 관계, 북·미간 직접협상 등을 통해 전개되는 양상을 보였다. 북한은 핵문제가 본질상 북한과 미국 사이의 문제이므로 양자간 직접협상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반면,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유지 뿐 아니라 핵비확산체제 유지 차원에서 북한 핵문제를 중시해 왔다. 직접대화를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미 양국은 1993년 6월 뉴욕에서 제1단계, 7월 제네바에서 제2단계 高位級會談을 개최하였다.

1993년 7월 제2단계 북·미회담 이후 IAEA의 대북사찰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핵통

제공동위 再開를 제안(8. 4)하였으나, 북한은 팀스피리트훈련, 국제공조체제, 제4차 「범민족대회」 不許 등을 이유로 우리측의 제안을 거부(8. 9)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북·미 후속회담의 先決條件인 남북대화 진전을 과시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1993년 8월 31일 남북 최고위당국자가 임명하는 「임의의 급」 특사교환을 제안하면서 특사교환의 전제조건으로 핵전쟁연습 중지, 국제공조체제 포기 등 2개 요구사항을 공식 제기하였다. 북한은 이 제의를 통해 특사교환에서 ① 비핵화문제, ② 긴장완화와 「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공동대책을 시급히 취하는 문제, ③ 전민족 대단결 도모문제, ④ 최고위급회담 실현에서 제기되는 제반문제 등을 包括적으로 협의 해결할 것을 제의하였다.

우리 정부는 대화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한다는 입장에서 1993년 9월 2일 특사교환에서 핵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협의 해결하고 그밖의 남북간 주요 현안을 다룰 것을 제안하면서 북한의 「임의의 급」 특사교환 제의를 수용하였으며, 이와 관련 10월 2일까지 남북간 일련의 의견교환이 있었다. 우리 정부가 핵문제의 우선적 해결을 위해 북한측 주장을 대폭 수용한 특사교환을 제의하였으나, 북한은 남북대화 재개 없이도 제3단계 북·미회담을 추진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핵전쟁연습 중지 및 국제공조체제 포기라는 2개 요구사항에 대한 남측 답변을 촉구하면서 실무접촉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1993년 9월 북·IAEA간 사찰협의 및 남북대화가 있어야 후속 북·미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는 미국측 의사가 북한에 전달된 이후 남북대화에 대한 북한의 소극적 태도는 변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유엔에서 IAEA 핵사찰 수용을 촉구하는 對北決議案이 채택(10. 1)됨으로써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가중되자 북한은 우리측의 특사교환 제의에 호응하였다. 북한은 전제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실무대표를 10월 5일 판문점에 파견할 것을 통보(10. 2)하였고, 이러한 북측의 제의를 남한이 수용함으로써 1993년 들어 처음 남북 당국간 대화가 이루어졌다.

제1차 실무대표 접촉에서 남한측은 핵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실무접촉에서는 특사교환 절차문제만을 협의 타결할 것을 요구, 특사교환 절차에 대한 합의서를 제시하였으며, 북한측은 절차문제를 제시하면서도 핵전쟁연습 중지, 국제공조 체제 포기 등 2가지 요구조건과 서해 간첩선 문제, 생화학무기 개발문제 등 특사교환을 위한 분위기 조성문제를 제기하였다. 제2차 실무접촉(10. 15)에서 양측은 특사교환에 따른 절차문제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제3차 실무접촉(10. 25)에서는 북한측도 특사교환 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제시하였는 바, 특사의 임무, 교환방법 등을 제외하고 특사의 급, 수행원, 교환방식, 왕래절차, 신변안전보장 등에 있어서 양측의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유엔 총회에서 핵사찰 수용을 촉구하는 대북결의안

〈특사교환 관련 남북한 입장 비교〉

	남 한	북 한
특 사 의 임 무	①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突破口 마 련 문제 ② 남북합의서 이행 및 실 천기구의 정상화문제 ③ 조국의 평화통일문제 ④ 그밖에 쌍방이 제기하 는 문제 ⑤ 남북최고당국자가 만나 는 문제	① 조선반도 비핵화공동선 언 이행문제 ② 긴장완화와 남북합의서 이행대책 강구문제 ③ 전민족대단결 도모문제 ④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 일 방도 확정문제 ⑤ 민족자주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문제 ⑥ 그밖에 쌍방이 관심하 는 현안문제 ⑦ 북남최고위급이 만나 는 문제
특사교환 방 법	합의서 채택후 10일안에 先 북측특사 서울방문 後 남측특사 평양방문	합의서 채택후 15일안에 先 남측특사 평양방문 後 북측특사 서울방문
체류일정	4박 5일	3박 4일
전제조건	① 최고 당국자에 대한 비 방 중상 금지 ② 반정부 투쟁선동 중지 ③ 핵문제 우선해결 입장 에서 특사교환 실현	① 핵전쟁연습 중지 ② 국제공조체제 포기 ③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 취소 ④ 패트리엇 미사일 반 입중지

〈특사교환 관련 남북대화 과정〉

- '93. 8. 4 우리측, 핵통제공동위 개최 제의
- '93. 8. 6 북한측, 특사교환 주장
- '93. 8.31 북한측, 「임의의 급」 특사교환 제안
 - 4개항 논의와 2개 요구조건 제시
- '93. 9. 2 우리측, 특사교환 제의
- '93. 9. 6 북한측, 2개 요구조건에 대한 남한측 입장표명 요구
- '93. 9. 8 우리측, 조건없는 호응 촉구
- '93.10. 2 북한측 호응
- '93.10. 5 제1차 실무접촉
 - 우리측, 특사교환 절차문제만 논의 요구 및 「특사교환
 절차에 관한 합의서」(안) 제시
 - 북한측, 절차문제와 함께 핵전쟁연습 중지, 국제공조체
 제 포기 등 2가지 요구조건 및 특사교환 분위기 조성문
 제 제기
- '93.10.15 제2차 실무접촉
 - 남북한, 특사교환의 절차문제 협의
 * 제1차 쌍방 수석대표 단독접촉
- '93.10.25 제3차 실무접촉
 - 북한측, 「특사교환 절차에 대한 합의서」(안) 제시
 - 특사의 級 및 절차문제 등에 의견접근
 - 11월중 특사교환 및 제4차 실무접촉 개최(11. 4) 합의
 * 제2차 쌍방 수석대표 단독접촉
- '94. 3. 3 제4차 실무접촉
 - 북한측, 핵전쟁연습 중지, 국제공조체제 포기 外 패트리
 어트미사일 반입 중지, 김영삼 대통령 발언 취소 등 4개
 전제조건 제시
- '94. 3. 9 제5차 실무접촉
- '94. 3.12 제6차 실무접촉
 - 북한측, 4개 전제조건 철회, 공동발표문 발표제안
- '94. 3.16 제7차 실무접촉
- '94. 3.19 제8차 실무접촉 결렬
 - 북한측, 4개 전제조건 재주장

이 채택(11. 1)된 상황에서 북한측은 인민무력부 부부장 김광진의 담화(11. 3)를 통해 남한 국방장관이 11월 2일자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군사대응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은 남한이 군사적 대응을 선포한 것이므로 북한은 언제까지나 대화에만 의거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결국 이를 구실로 특사교환 실무대표단 북한측 단장은 제4차 실무접촉을 거부(11. 3)하였다. 북한이 11월 4일로 예정된 제4차 실무대표 접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은 유엔 총회의 대북한 핵사찰 촉구 결의안이 찬성 140, 반대 1로 채택됨에 따라 핵관련 입장을 재점검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필요성을 인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993년 11월 9일 실무대표단 북한측 단장은 제25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팀스피리트훈련을 중지하지 않기로 한 것은 특사교환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대화에는 대화로 전쟁에는 전쟁으로 대답"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은 외세배격, 각종 전쟁연습 중지 등을 요구하며 한국정부에 대해 전례없이 강경한 적대적 태도를 표출하는 한편, 「기본합의서」 채택 2주년이 되는 12월 13일 「평양방송」을 통해 남한정부의 외세와의 야합, 「기본합의서」 정신 위배, 각종 전쟁연습 등의 이유로 인하여 「기본합의서」가 불이행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1993년 12월 북한과 미국은 일련의 실무접촉을 통해 북·미 3단계 회담 개최와 북한의 7개 신고시설에 대한 IAEA

의 임시·일반사찰 실시에 대해 합의하였다. 그후 북·IAEA간 세부 사찰문제에 대한 협상결렬로 유엔 안보리에 의한 대북 제재가 논의되자 북한은 1994년 2월 15일 IAEA의 사찰수용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1994년 2월 25일 북·미 실무접촉을 통해 북한과 미국은 '94팀스피리트훈련 중단, 3단계 북·미회담 개최(3월 21일 예정), 남북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 재개, IAEA 사찰실시 등 4개항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3월 3일 4차 남북실무접촉이 재개되어 5차(3. 13), 6차(3. 12), 7차(3. 16), 8차(3. 19) 실무접촉이 개최되었으나 북한의 4개 전제조건 주장, 「공동보도문」 발표 등의 주장으로 진전이 없었다. 남북한은 절차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사의 임무, 방문순서, 체류기간, 전제조건 등에 대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 이유는 북한의 체제불안 증대와 핵문제 膠着에 연유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핵문제를 정치·군사적 안전보장, 서방세계로부터의 경제지원 확보 등을 해결하기 위한 관건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 해소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과 직접협상을 통해 체제안전 보장 및 국제고립 탈피를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남북대화에 진정한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 핵문제의 包括的 해결을 위한 미국과의 실무접촉과 이에 따른 IAEA와의 사찰협상에 주력함으로써 남북관계는 膠着狀態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第 II 章 核관련 북한의 意圖 및 戰略

1. 북한의 意圖 및 目標

북한의 핵개발 추진 目標은 ① 핵무기 개발을 통한 대남 군사력 優位 유지, ② 핵카드 활용에 의한 북·미관계 개선 및 남한의 상대적 孤立 유도, ③ 체제유지용 안전장치 확보 등이 라고 판단된다.

먼저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통해 대남 군사력 우위를 유지 하려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 북한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남한 에 대한 재래식 군사력의 우위를 점차 상실해감에 따라, 안보 상의 불안감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도입하였던 핵개발 기술을 軍事的으로 전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판단된 다. 즉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에서의 우위상실로 인한 불안감 을 핵무기 개발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 렸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북한 지도부는 점차 핵무기 개발 및 확보에 내포된 전략적 한계를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 개발 자체에 필요한 기술수준은 차치하고라도, 핵개발은 엄청난 財源을 요구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경제적·기술적 요구에 비추 어 볼 때, 핵무기 개발은 북한 체제유지에 반드시 긍정적인 측면만을 지닌 것은 아니다.

한편 80년대 말 동구 공산주의체제가 붕괴되고 남한의 北方政策이 성공함으로써 북한은 외교적으로 고립되기 시작하였다. 경제적 위기와 외교적 고립이라는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모종의 활로를 개척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은 핵무기 개발 자체를 외교적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보유가 안보적 차원에서 최후의 安全裝置라는 인식하에 국제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 자체를 포기하지 않은 채, 핵개발 문제를 외교적 협상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외교적 고립 탈피와 경제적 위기 극복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은 핵무기 개발의 불투명성을 협상수단으로 사용하여 체제인정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협력과 궁극적인 대미수교를 달성하려는 意圖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김정일 權力承繼의 최종단계에서 북한은 ① 김정일에 대한 軍部の 지지확보, ② 주민들의 내부동요 방지, ③ 김정일 역량의 대내외적 과시 등을 통하여 체제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북한은 이러한 대내적 목적에서 또한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핵개발과 관련한 외교적 협상에서도 가능한 한 최대의 성과를 거두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북한은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핵무기 개발을 위한 시간확보 전략」을 구상하였으며, 그 후 점차로 「핵의 대

남·대외용 협상수단으로의 활용전략」으로 그 主眼點을 이동시키고 있다. 특히 핵무기 개발을 협상수단화한 이후, 북한은 핵카드의 효용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실질적인 대가를 확보하기 위해 핵사찰에 있어서 「最大지연·最少공개」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협상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해 남한, 미국, IAEA 등 주요 협상상대와의 대화 비중을 조정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압력을 緩和시키고 국제공조체제의 弛緩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즉 북한은 북·미회담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통해 實益을 확보하는 한편 한·미관계 離間을 시도하고 있는 바, 실질적인 남북관계 진전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 북·미회담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충족 차원에서 남북대화에 임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행태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의하여 입증된다. 첫째, 북한은 제2단계 북·미회담 성사 논의가 긍정적으로 전개되자, 남한에 대한 특사교환 제의를 철회하였다. 둘째, 제2단계 북·미회담 이후 북·미 후속회담의 선결조건인 남북대화의 진전을 과시할 목적에서 북한은 「임의의 급」 특사교환을 제의하였다. 셋째, 북한은 북·미회담의 조건충족차원에서 남북실무접촉에 호응하였으나, 유엔 총회에서 대북한 결의안이 채택('93. 11. 1)되어 국제공조체제가 강화되고 후속 북·미회담이 불투명해지자 남북대화를 중단하였다. 넷째, 북한은 북·미간 4개항 합의('94. 2. 25)에서 3단계 북·미회담의

조건으로 남북대화 재개가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특사 교환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3단계 북·미회담만을 개최하고자 하였다. 다음에서는 핵개발 및 핵협상과 관련한 북한의 意圖와 戰略을 북한 핵문제의 전개과정에 따라 段階別로 정리 서술한다.

2. 段階別 북한의 意圖

가. 북한의 NPT 脫退 宣言 以前

(1) 非核地帶化 주장

한반도 핵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입장은 「한반도 비핵지대화」 주장에 잘 나타나 있다. 김일성은 1957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 1차 회의에서 “남한의 원자기지화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한반도 비핵지대화 문제를 최초로 제기하였다. 북한은 1977년 1월 25일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에서 한반도 비핵지대화 문제를 재거론 한 후, ① 「고려민주연방공화국 10대 시정방침」(’80. 10. 10), ② 「조선반도를 비핵지대로 만들 데 대한 제안」(’86. 6. 23), ③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제안」(’91. 7. 30) 등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점차 구체화하면서 이를 반복 제의해 왔다.

북한은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91. 10. 22~25)에서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에 관한 선언」을 제의하였는데, 그 내용은

① 핵무기의 생산, 소유, 반입 금지, ② 핵무기 적재가 가능한 항공기, 함선의 영토 통과, 착륙, 기항 및 일체의 군사훈련 금지, ③ 주한미군 및 핵무기 철수를 위한 공동노력과 동시핵사찰 등이다.

그런데 1975년 유엔 총회에서 정의된 비핵지대화(nuclear-weapon free zone)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첫째, ① 조약 적용 대상지역의 경계설정 절차 및 해당지역내 핵무기不在 규정, ② 동 규정상의 제의무 이행을 보장할 국제적 檢證 및 統制體制의 확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비핵지대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둘째, 유엔 총회에 의해 비핵지대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지대화 주장은 국제적으로 규범화된 비핵지대화(예: Tlatelolco 조약, Rarotonga 조약)와는 구별되는 북한식 비핵지대화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즉 북한은 외국 선박 항공기의 기항(착) 및 영해(공) 통과와 자유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한반도 비핵지대화 주장을 검토할 때, 그 意圖는 ① 미국의 對韓 핵우산 제거, ② 주한미군 철수와 팀스피리트훈련 중지 유도, ③ 국제사회에 북한의 평화적 이미지 부각, ④ 남한의 독자적 핵개발 가능성 저지, ⑤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 은폐 등이라고 판단된다. 즉 북한은 한반도 비핵지대화 주장을 통해 자국의 안보상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개선함으로써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혹을 희석시키

고자 하였다.

(2) 「비핵화 공동선언」 채택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한반도 비핵지대화 주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북한이 핵무기 개발 의도를 포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추진하였다. 특히 북한의 IAEA 안전조치 협정 체결이 지연되고 북한 핵개발의 實相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한·미 양국은 1990년 중반부터 북한에 대해 IAEA 안전조치 협정 체결과 핵사찰 수용을 촉구하는 한편, IAEA 사찰의 제한된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남북한간 직접접촉을 통해 핵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던 것이다.

부시 미대통령은 1991년 9월 27일 전술 핵무기 폐기선언을 하였는 바,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전술핵 철수도 기정사실화 되었다. 그 후 노태우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91. 11. 8) 및 「한반도의 비핵화와 관련한 발표문」('91. 12. 18)을 통해 남한내 核不在를 천명하였다.

「비핵화 공동선언」 체결을 위한 분위기가 한·미 양국에 의해 조성된 상황에서 남북한은 1991년 12월 31일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합의하였으며, 이 선언은 1992년 2월 19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동시에 발효되었다.

북한이 자신의 비핵지대화 주장을 철회하고 남한과의 「비

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한 意圖는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첫째, 북한은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외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바, 이를 위해 한반도에서의 평화유지 및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과시하려고 하였다.

둘째, 「비핵화 공동선언」을 통해 핵문제를 민족내부문제로 전환함으로써 북한은 자신의 핵개발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회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였다.

셋째, 북한은 자국 안보상의 불안감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남한내 군사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남한내 미군기지에 대한 사찰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확보를 시도하였다.

넷째, 북한은 핵무기 개발 계획을 은폐된 상황에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감안, IAEA 사찰을 회피하는 한편, 보다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남북 상호핵사찰 논의를 통해 핵사찰 압력을 무마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북한은 남북 핵통제공동위의 상호핵사찰 세부규정 합의과정에서 무리한 요구를 함으로써 남북 상호핵사찰을 지연시켜 왔다.

(3) IAEA 핵안전조치 협정 체결

북한은 자신의 핵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자 1990년 2월 IAEA 이사회에서 안전조치 협정 가입 및 IAEA 핵사찰 수락의 조건으로 ① 핵보유국의 비핵국가에 대한 핵 위협 금지, ②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철수, ③ 대북한 핵무기

불사용에 대한 법적 보장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IAEA측은 북한의 요구조건이 자신들의 권한을 벗어나는 문제라는 이유로 북한측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남북간 「비핵화 공동선언」 합의에 따라 북한이 요구한 IAEA 안전협정 가입 조건들이 충족됨으로써 북한은 더 이상 NPT 체제의 의무사항인 IAEA 안전협정 가입을 지연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여 1992년 1월 30일 IAEA와 핵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하였다.

북한이 IAEA 안전협정에 가입한 意圖는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첫째, 북한은 IAEA 핵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하더라도 IAEA사찰의 한계를 이용하여 핵무기 개발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둘째, 북한은 남북한간 「비핵화 공동선언」에 이어 IAEA 핵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자신의 핵개발에 대한 국제적 의혹 및 압력을 완화시켜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이점은 북한이 대미·일 관계개선을 위한 접촉에 상당한 열의를 보인 점에서 입증된다.

그러나 1992년 5월부터 1993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친 IAEA의 대북사찰 과정에서 북한 핵개발이 軍事的 目的을 갖고 있다는 의구심이 증폭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IAEA는 ① 북한이 신고한 플루토늄 추출량과 IAEA측 추정치 간의 불일치가 심각하다는 점, ② 사용후 핵연료의 행방이 불확실하다

는 점, ③ 북한이 주장한 방사화학실험실은 실제 건설중에 있는 재처리시설이라는 점을 들어, 북한의 핵개발이 핵무기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들을 공식 제기하였다.

나. 북한의 NPT 脫退 宣言 以後

(1) NPT 脫退 宣言

북한 핵개발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북한과 IAEA간에 사찰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1993년 1월 26일 '93 팀스피리트훈련 실시를 발표하자, 북한 외교부는 한·미 양국의 팀스피리트훈련 재개로 인해 북한이 NPT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비난(1. 27)하면서 IAEA 핵사찰 거부를 시사하였다. 이어 북한은 1월 29일 남북고위급 회담 북측 대표단 성명을 통하여 모든 남북대화를 중단한다고 발표하였다.

IAEA는 1993년 1월 31일 북한 핵개발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제6차 임시사찰 실시 기간중 영변 근처 핵물질 폐기장 소로 추정되는 2개의 미신고시설에 대한 참관을 요구하였으나 북한은 이를 거부하였다. 북한은 2월 7일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IAEA의 영변지역 미신고시설에 대한 사찰요구가 북한의 自主權과 安全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아울러 핵사찰 문제를 다른 군사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여 북한에 대해 부당한 조치를 강요할 경우 이에 대응한 「自衛的 措置」를 취할 것임을 언급하였다.

IAEA는 2월 10일 대북한 특별사찰을 결정하고 「특별사찰 수락요구서」를 발송하였으며 북한은 2월 12일 「로동신문」 논평을 통해 특별사찰 거부를 표명하였다. 이에 따라 IAEA 정기이사회는 1993년 2월 25일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의혹 해소 차원에서 영변의 미신고 시설 2개에 대한 「特別査察 수락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북한은 1993년 2월 28일 「기본합의서」 발효 1주년과 관련하여 한반도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① 팀스피리트훈련을 중지할 것, ② 남한은 민족자주의 원칙을 지킬 것, ③ 미국은 냉전시대의 낡은 대조선정책을 버릴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 비망록」을 발표하였다. 그 후 3월 8일 북한은 '93 팀스피리트훈련 (1993. 3. 9~18)과 관련하여 「準戰時상태」를 선포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1993년 3월 10일 미신고시설 2개는 일반 군사시설로서 사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IAEA의 특별사찰 요구를 거부하였다.

첫째, IAEA가 북한에 적대적인 국가의 사주로 핵과 무관한 군사시설을 사찰하려는 것은 북한을 壓殺하려는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의 강요를 수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不公正한 특별사찰 요구는 주권침해이며, 이는 앞으로의 IAEA 안전협정 이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셋째, IAEA가 압력과 강제를 통해 불공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북한은 국가의 최고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自衛的인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2개 미신고시설에 대한 IAEA의 특별사찰은 북한 핵개발의 의혹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이다. 2개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의 목적은 북한의 과거 핵개발실태를 파악하는 것으로서, 핵폐기물 저장소로 추정되는 동 시설을 조사해 보면 그동안 북한이 추출한 플루토늄량을 추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곳에는 5MW(E) 원자로 이외에 8MW(T) 원자로에서 나온 핵폐기물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5MW(E) 원자로는 북한의 독자기술에 의해 1986년 완공된 것으로 1992년 IAEA와 핵안전협정 체결 후 사찰을 받아 왔으며, 8MW(T)⁴⁾는 1960년대 초 소련에 의해 건설된 것으로 북한의 NPT 가입('85. 12) 전인 1977년부터 IAEA의 사찰을 받아 왔다.

북한은 1993년 3월 12일 북한 중앙인민위원회 제9기 제7차 회의에서 팀스피리트훈련 재개와 IAEA의 특별사찰 요구를 비난하면서 NPT 脫退를 결정하고 이를 선언하였다. 특히 북한은 자신의 NPT 탈퇴 선언이 조약당사국에 「특수상황」이

4) 5MW(E: Electricity) 원자로의 용량은 전기출력으로 5MW이며 8MW(T: Thermal) 원자로의 용량은 열출력 8MW인 바, 열출력으로 비교하면 5MW(E)의 용량이 8MW(T)의 4배가 된다.

구성되었거나 당사국의 국가 「최고이익」이 침해당하는 경우 탈퇴를 허용하고 있는 조약 제10조 1항에 전적으로 부합된다고 주장하였다.

〈핵무기의 非擴散에 관한 조약〉

제10조 1항 각 당사국은 당사국의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본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至上利益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각 당사국은 동 탈퇴 통고를 3개월 전에 모든 조약당사국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 행한다. 동통고에는 동 국가의 至上利益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그 국가가 간주하는 비상사태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북한은 NPT 탈퇴 선언 이후 몇 차례에 걸쳐 NPT 복귀 가능성을 시사하였는 바, 복귀 조건으로 ① 팀스피리트훈련의 영구중지, ② 남한내 미군의 핵무기 및 핵기지 공개, ③ 미국의 대북한 핵위협 해소, ④ IAEA의 公正性和 中立性 회복 등을 제시하였다. (이철 주제네바 북한 대사의 93년 3월 16일 교도통신 기자회견, 주유엔 북한 대표부 허종 차석대사의 3월 18일 마이니찌신문 기자회견)

IAEA 핵사찰 과정 및 NPT 탈퇴 선언 과정에서 나타난 북한의 행태를 살펴볼 때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한 意圖는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첫째, IAEA 핵사찰 결과 북한은 자신의 핵개발 의도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IAEA 특별사찰을 회피함으로써 핵무기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고 하였다.

둘째, 북한은 IAEA 핵사찰을 거부하여 핵개발 진전상황의 모호성을 증대시킴으로써 핵카드의 효용성을 유지하는 한편, 이를 이용하여 총체적 난국을 돌파하기 위한 대외협상력을 강화하려고 하였다.

셋째, 북한은 남한을 배제한 對美 직접협상을 통해 남북대화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대미수교를 얻어 낼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북한은 1993년 3월 29일 외교부 대변인의 담화를 통해 북한 핵문제의 유엔안보리 상정을 비난하는 동시에, 북·미협상을 제의하였다. 즉 북한은 미국에게 자국에 대한 敵對政策을 포기하고 팀스피리트훈련을 통한 핵위협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무조건적인 핵불사용 보장을 위해 북·미 사이에 상호 신뢰가 보장되고, 平等과 互惠의 원칙에 기초한 협상을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1993년 3월 29일 「로동신문」 논평을 통해 자신의 NPT 탈퇴 선언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음을 강조하고 당사자로서 미국이 반드시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직접협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넷째, 북한은 핵문제와 관련한 대미·대남 대응에 있어서 강경 軍部の 입장을 반영함으로써 김정일의 權力承繼과정에서 이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아울러 핵문제 공론화를 통해 대내 결속력을 강화하려고 하였다. 남북고위급회담 북측 대표단장 강성산 총리가 1993년 3월 12일 「準戰時상태 선포지지 담화」에서 한·미간의 핵전쟁 연습에 대응하여 김정일이 내린 「準戰時상태」 선포 명령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발표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2) 남북 特使交換 제의

북한의 NPT 탈퇴 선언 이후 국제사회의 압력이 가중된 상황에서 북한의 강성산 총리는 3월 12일 우리 정부에게 「민족 자주의 원칙」에서 팀스피리트훈련을 재개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우리 정부를 비난하였다. 또한 북한은 4월 7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회의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을 채택하는 한편, 우리 정부에게 ① 외세의 존정책 포기, ② 미군철수를 추진할 의지 표명, ③ 외국군대와의 합동군사훈련 영구중지, ④ 핵문제에서의 자주적 입장 견지 및 미국의 핵우산에서의 탈피 등 4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북한은 다음과 같은 의도에서 「4개 對南要求事項」을 제시하였다고 분석된다.

첫째, 북한은 새로 출범한 김영삼 정부의 통일정책을 북한에 유리한 방향으로 調律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북한은 김영삼 대통령의 前向的인 통일정책 의지를 표현한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 수 없다”는 취임사 내용과 김영삼 정부의 정치적 正統性의 기초인 「문민정부」를 구실로 네가지 사항의 수용을 촉구하였다.

둘째, 한국의 정치·군사적 대외협력 역량을 약화시킴으로써 북한 체제위협외의 외적 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한국의 국력을 약화시켜 남한에 대한 힘의 상대적 우위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셋째, 한국이 자주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한국내 자주성에 관한 정치적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국론분열을 시도하였다.

넷째,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관해서는 주한미군 철수 의지표명만을 요구함으로써 현실성있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고 하였다.

한편 북한은 핵문제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남북대화에 표면적인 관심을 보였다. 주유엔 북한 대표부 차석대사 허종은 5월 13일 핵문제와 관련 IAEA에 대표단을 파견할 것임을 밝히고,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 개최 등 남북대화 재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는 북한측의 태도변화를 감지하여 1993년 5월 20일 황인성 남북고위급회담 수석대표 명의로 북한 핵문제 협의를 위해 남북고위급회담 대표접촉을 제의하였다. 이 제의에서

우리 정부는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5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쌍방 각기 2명의 고위급회담 대표가 참가하는 남북고위급회담 대표접촉 개최를 제안하면서 남측 대표단 명단을 통보하였다.

우리 정부의 제의에 대응하여, 북한은 1993년 5월 25일 정무원 총리 강성산 명의로 「특사교환」을 逆提議하였다. 이 제의에서 북한은 특사를 남북한의 '통일을 담당하는 부총리급'으로 하자는 것과 함께, 특사의 임무를 ① 통일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제의 논의 및 ② 남북사이의 현안문제들을 타결하기 위한 최고위급의 「중대한 뜻」의 전달에 국한하자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또한 특사교환을 실현하기 위해 부부장(차관)급을 책임자로 하여 쌍방 각기 2명의 대표로 5월 31일 통일각에서 실무자 접촉을 갖자고 제의하였다.

우리 정부의 남북고위급회담 대표접촉 개최 제안에 대응하여 북한이 특사교환을 제의한 意圖는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첫째, 북한은 핵무기 개발 의혹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과 제재결의를 희석시키려는 수단으로 남북대화를 이용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즉 NPT 탈퇴 발효 시한인 6월 12일이 임박하면서 대북제재가 국제적 관심사로 부상하게 되자, 북한은 남북대화를 재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압력을 회피하려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북제재가 시작될 경우 북한은 민족대단결을 내세워 한국과 미국의 대북 共助體制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분석된다.

둘째, 북한은 한국 신정부의 북한관과 대북정책에 대한 기본적 입장을 탐색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민족우선주의」를 언급하는 한편, 신정부의 통일정책 基調가 「민주적 국민합의, 공존·공영, 민족복리」로 밝혀지자, 북한은 「10대 강령」을 통해 이에 대응하는 한편, 특사교환 제의를 통해 김일성·김정일 체제유지에 대한 한국의 긍정적 답변을 유도하고자 한 것이다. 동시에 협상의 대상자를 지목함으로써 한국내 대북정책 관련 당사자들간의 反目과 葛藤을 조장하는 전술적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북한은 새로운 방식의 남북대화가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폐쇄적인 북한 사회의 특성상 그간에 진행된 남북고위급회담이 계속될 경우 체제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여 고위급회담을 중단하였으나 북한이 처하고 있는 체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남북대화를 지속해야 할 입장에 있었다. 이에 따라 특사교환이라는 일종의 간접 정상회담 형식의 남북협상 방법을 제안하였다.

넷째, 북한은 통일전선전술 차원에서 특사교환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한국이 핵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접촉을 제안하자 대화자체를 전면 거부하기가 어려워 특사교환 카드를 제시하는 한편, 한국이 이를 받아들이면 민족대단결 전략에서 이용하고, 수용하지 않더라도 북한의 대화의지를 대내외에 선전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특사교환 제의를 前向적으로 수용함

에 따라 남북한은 1993년 6월 26일까지 총 11차례 (남: 6회, 북: 5회)에 걸쳐 전통문을 교환하였으나 특사교환 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 특히 우리측은 핵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해결하자는 입장을 취한 반면, 북한은 핵문제와 함께 다른 모든 현안들을 包括적으로 협의 해결하자는 一括妥結 입장을 고수하였다.

한편, 북한은 핵카드의 최종적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대미관계 개선 및 체제인정이 미국에 의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라 미국을 북한 핵문제의 당사자로 인식하고 북·미 회담 개최에 협상의 최우선 순위를 두었다. 따라서 북한은 남북간 특사교환에는 형식적 의미만을 부여하고 실질적 성사에는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 북한은 결국 6월 26일 강성산 총리의 담화를 통해 '93 을지훈련을 구실로 4차 실무접촉을 무산 시킴으로써 특사교환 제의를 자진 철회하였다.

1993년 6월 제1단계 북·미 회담 이후 특사교환 논의에 소극적 자세를 보이던 북한이 제2단계 북·미 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이 이루어 지고 있던 시기에 특사교환 제의를 자진 撤回하였던 이유는 다음과 같이 분석될 수 있다.

첫째, 북한은 남북대화 과정에서 핵문제를 남북간 현안문제와 연계시켜 남북간에 一括妥結하려고 기도하였으나, 이러한 전략이 핵문제의 국제적 성격과 남한 정부의 단호한 입장 때문에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을 것이다.

둘째, 북한은 6월 10일 북·미 회담에서 NPT 탈퇴 유보를

미국에게 양보한 대신 미국으로부터 핵선제 불사용, 체제인정 보장 등 성과를 얻고 향후 북·미 고위급접촉의 협상통로를 확보함으로써 남북대화가 더 이상 긴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북한은 남한 신정부의 前向的 대북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향후 있게 될 제2단계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특사교환 카드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즉 남한의 신정부가 핵·경협 連繫정책을 지속하고 대북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고 미국에게 북·미 제2단계 회담에서 더 이상 양보하지 말 것을 촉구하자, 북한은 남북관계 膠着의 책임을 남한에 떠넘기면서 향후 남북관계에서 主導權 장악을 모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넷째, 북한은 특사교환을 철회함으로써 남북대화의 의미를 격하시키고 북·미회담을 통하여 대미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한편 한국정부가 자주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부각시켜 북한정권의 位相을 격상시키려는 선전효과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북한의 특사교환 제의 철회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들을 분석해 보면, 북한은 우리 신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태도변화를 보였다. 즉, 특사교환 제의시 북한은 우리 신정부가 「민족이익 중시」 입장을 표명하였다고 긍정적 평가를 하는 등 정치협상의 대상으로 기대하였으나, 제의 철회 담화에서는 남한이 외세의존정책, 대결분열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함으로써 신정부를 대결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주었다.

(3) 북·미회담 개최

북한은 NPT 탈퇴 선언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주장하였다. 북한은 1993년 3월 29일 외교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미사이에 서로 신뢰가 보장되고, 平等과 互惠의 원칙에 기초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북·미협상을 제의하였으며, 같은 날 「로동신문」 논평 및 주러 북한대사 손성필의 타스통신 기자회견에서 북·미협상 제의를 재확인하였다.

이후 북한은 IAEA의 북한 핵문제 유엔 상정 결의안 채택 관련 외교부 성명(4. 5), 주러 북한대사 손성필의 프라우다지 기자회견(4. 7),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 관련 외교부 담화(4. 10) 등을 통해 북·미 직접협상을 지속적으로 제의하였다.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유지 뿐 아니라 핵비확산체제 유지 차원에서 북한 핵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북·미 직접협상의 가능성을 검토한 후, 한국을 방문한 국무부 피터 타노프 정무차관을 통해 1993년 4월 22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북한간 고위급 접촉(차관급)을 가질수 있다는 사실을 남한측에 통보하였다. 한편, 같은 날 국무부 대변인의 정레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안전조치 협정 불이행 및 NPT 탈퇴 선언으로 야기된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는 데 도움

이 될 수 있다면 북한과의 회담을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공식 천명하였다.

미국과 북한은 1993년 제32차(5. 5) 및 33차(5. 10) 북경 참사관 접촉에서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북·미 고위급접촉을 갖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유엔은 1993년 5월 11일자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825호 4항에서 모든 회원국에 대해 북한 핵문제 해결 촉진을 권유하였으며, 이는 미국에게 북·미 직접협상의 名分을 제공해 주었다.

한편 5월 11일 미국은 윌리엄 페리 국방차관을 통해 미·북한 고위급회담 개최와 관련한 미측의 입장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통보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 채택 후 미·북한간 양자회담을 개최한다는 점과 미·북한 고위급회담에서의 미국의 입장은 ① 북한 핵문제만을 議題로 상정하고, ② 대화과정에서 한·미간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며, ③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 채택 이후 보다 중요한 역할은 남북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었다.

북·미회담과 관련한 미국의 입장이 우리 정부에 전달된 후, 한·미 양국은 제1단계 북·미회담을 통해서 일단 북한을 NPT 체제에 잔류시키고 IAEA 핵사찰 지속의 근거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의 구체적 태도변화와 連繫하여 북한에 대해 실질적 誘引策을 제공한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하였다. 특히 평화적 해결 노력이 실패했을 경우에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동원할 수 있는 名分을

축적한다는 의미에서 북·미 직접 협상이 의미가 있다는 점에 대해 한·미 양국은 인식을 같이 하였다.

1993년 5월 북·미 고위급회담 개최를 위한 제1차(5. 17) 및 제2차(5. 21) 예비접촉이 뉴욕에서 개최된 후, 6월 2~11일 뉴욕에서 제1단계 북·미 고위급회담이 개최되었다. 회담에 임하는 미국측의 기본입장은 북한이 ① NPT 복귀, ② 특별사찰을 포함한 IAEA 핵안전협정의 완전한 이행, ③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미국은 북한 핵시설의 軍事的 목적으로의 전용을 사실상 방지하고 있는 현재의 핵안전조치의 틀에서 북한이 벗어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회담을 계속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북한이 이러한 사항들을 이행할 경우 미국은 경제관계의 개선은 물론 정치적 접촉을 定例化하여 段階的으로 상호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한편, 북한은 ① 핵무기 불사용 보장, ② 팀스피리트훈련의 영구 중단, ③ 주한미군기지 공개, ④ 對韓 핵우산 제공 중지, ⑤ IAEA의 公正性 보장, ⑥ 북한 사회주의체제 존중 등을 요구하였으며, 특히 북·미간 회담이 핵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북·미 관계개선을 위한 정치회담으로서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 회담에서 북한은 6월 12일 이후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피하여야 한다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제1단계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양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발표문(Joint Statement)에 합의하였다.

〈제1단계 북·미회담 공동발표문〉

- ①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 위협 및 사용 금지 보장
- ② IAEA 전면 안전조치의 공정한 적용을 포함한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전 보장, 상대방 주권의 상호존중, 내정불간섭
- ③ 한반도의 평화통일 지지
- ④ 미국과 북한은 평등하고 공정한 기초 위에서 대화 지속
- ⑤ 북한의 NPT 탈퇴 효력 발생의 임시 정지

제1단계 북·미회담은 북한 핵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북한의 NPT 탈퇴 유보 선언을 유도함으로써 북한의 NPT 탈퇴 선언 이후 고조되었던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켰으며 남북대화 및 북·IAEA간 협상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제1단계 북·미회담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미국, 남한, 일본 등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과 미국은 1993년 7월 14~19일 제네바 북한대표부에서 제2단계 회담을 개최하였다.

제2단계 북·미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이 NPT 잔류 및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원칙을 이미 수용했다는 전제하에 IAEA 사찰문제 해결에 주력한 반면, 북한은 ① 핵무기 不使用 문서

보장, ②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 중지, ③ 한반도에 핵무기 불배치 선언, ④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代替, ⑤ 북한에 대한 테러국 지정 철회, ⑥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지지 등 6개 항을 요구하였다. 또한 북한은 현재 가동중인 흑연감속로를 경수로로 전환할 용의가 있음을 전하는 한편, 이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요구하였다.

특히 북한은 제2단계 회담에서 경수로 전환에 대한 미국의 지원요청이라는 새로운 안건을 북·IAEA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제기함으로써 협상상대방을 당혹하게 하였다. 북한의 경수로 전환에 대한 지원문제에는 복잡한 법적·재정적 문제가 걸려 있다. 법적으로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은 코콤(COCOM)의 규제사항이며, 미국내의 적성국교역법(Trading With the Enemy Act: TWEA) 및 수출관리법(Export Administration Act: EAA)의 저촉사항이기도 하다. 또한 경수로 1기를 건설하는 데는 20~30억달러가 소요되며, 7~8년 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다.

북한이 이처럼 현실성을 무시한 채 미국에 대해 경수로 전환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 것은 다음과 같은 多目的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해 핵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북한의 관심을 부각시킴으로써 국제사회의 압력을 완화시키고자 하였다. 둘째, 북한은 경수로 전환문제를 대미 관계개선 및 경제협력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였다. 셋째, 경수로 전환을 통하여 에너지난 해소라는 중·장기적 고

려도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핵무기를 제조하는데 있어서 경수로로는 흑연감속로보다 기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바, 핵개발의 투명성 확보와 안전성에 대한 고려에서 북한 원자로의 경수로 전환문제를 긍정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기술적으로 한국형 경수로를 수출할 수 있는 단계에 있는 바, 북한이 IAEA 사찰을 수용하고 남북대화에 성실히 임한다는 전제하에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가들과 북한의 경수로 전환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기술이전에 협조하고, 일본은 자본을 제공하며, 우리나라가 설계 시공 운전을 맡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제2단계 회담의 결과 북·미 양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언론보도문에 합의하였다.

〈제2단계 북·미 회담 언론보도문〉

- ① '93. 6. 11자 북·미 공동발표문의 원칙 재확인
- ② 북한 핵문제의 종국적 해결의 일환으로서 경수로 도입 지지 및 이를 위한 협의 용의 표명
- ③ IAEA 핵안전조치의 완전하고 공정한 적용이 NPT 체제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데 견해 일치
- ④ 북한은 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IAEA 협의 및 남북 대화 재개 용의 표명

⑤ 핵문제 관련 현안 및 북·미간 전반적 관계개선 문제
토의를 위해 2개월내 북·미 회담 개최

제2단계 북·미회담에서 북한이 핵사찰 관련 IAEA 사찰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IAEA와의 협상 용의를 표명함으로써 북한의 NPT 잔류가 기정 사실화되었으며, 북·IAEA 협상과 남북대화가 북·미회담 지속의 전제조건으로 설정됨으로써 IAEA의 대북사찰단 파견 및 남북간 특사교환 논의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제2단계 북·미회담 성과에 대한 미국측 평가는 갈루치 차관보의 기자회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미국은 ① 북한이 영변 미신고 2개 시설에 대한 추가정보 제공 및 방문(특별사찰)을 포함한 핵안전협정 이행 문제 등에 대해 IAEA와 협의한다는 데 합의한 점과, ②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에 관해 남북회담을 재개할 것에 동의한 점, ③ 흑연감속로를 포기하고 군사적 목적으로의 전용이 어려운 경수로로 교체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제1·2단계 북·미회담에서 북한은 아래와 같은 協商戰略을 구사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핵무기 개발현황의 모호성을 협상카드로 삼아 대미 직접접촉을 지속함으로써 대미관계 정상화를 통한 체제인정 및 서방세계와의 경제협력 가능성을 계속 모색하려고 하였다.

둘째, 북한은 향후 생화학무기,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의 개발 및 수출, 인권문제 등이 대미관계 개선의 장애요인으로 대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一括妥結(a package deal) 방식을 북·미협상에서 견지하였다.

셋째, 북한은 미측이 제시한 段階的 해결방식을 수용할 경우 핵카드의 효용성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하여 영변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대미협상에서의 一括妥結을 위한 최후 수단으로 확보하려고 기도하였다.

북·미회담에서 드러난 북한 行態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미국측이 의도하는 段階的 해결구도에 대하여 각 단계마다 탈출구를 마련하는 데 노력해 왔다. 요컨대 NPT 잔류 문제에 있어서도 북한은 복귀가 아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큼 一方的으로 탈퇴효력을 정지시킨다」고 주장하면서 상황에 따라 탈퇴 상황과 잔류를 恣意的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북한은 IAEA 사찰이행 문제에 있어서는 IAEA의 불공정성을 구실로 궁지에서 벗어나고자 하였으며, 한반도 비핵화의 이행문제에 대해서는 남북현안에 관한 특사교환 문제를, 그리고 북·미회담에서는 경수로지원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협상에서의 불리한 입장을 모면하고자 하였다.

둘째, 북한은 핵문제 해결에 협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여전히 형식적 사찰만을 수용함으로써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회피하였다. 북한은 북·미회담에서 NPT 복귀 없이도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새로운 남북 상호사찰방식을 제시하였는 바, 이와 관련 김광섭 빈주재 북한대사는 NPT 가맹국이 아닌 브라질·아르헨티나 간의 실례를 들면서 투명성을 제고하는 문제는 남북 지도자가 결심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1991년 7월 「핵물질 산정·통제 공동체제」(Joint System of Accounting and Control of Nuclear Materials: SCCC)를 구성하고 이의 檢證實行기구로 「핵물질통제위원회」(Brazilian-Argentine Agency for Accounting and Control of Nuclear Materials: ABACC)를 설치하는데 합의하였으며, 아르헨티나·브라질·ABACC·IAEA는 4자간 사찰협정을 체결('91. 12. 13)하였다. 이에 따라 ABACC와 IAEA가 사찰결과를 독자적으로 평가하되, ABACC가 양국의 핵활동에 대한 사찰임무를 주로 담당하며, IAEA는 ABACC보다 제한된 범위의 사찰권한만을 지니고 ABACC사찰과의 중복을 피하되, 필요한 경우 ABACC와 공동사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북한이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예를 들어 남북 상호사찰에 IAEA를 참여시키는 문제를 거론한 것은 NPT탈퇴 입장을 고수하면서 북한의 핵무기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였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남북한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중남미에는 비핵지대화

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간에는 4자간 사찰협정 이전에 이미 상당한 정도로 핵문제에 대한 신뢰가 구축되어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또한 남북한은 이미 개별적으로 IAEA사찰을 받고 있으며, 남북 상호사찰은 당사자해결 원칙에 입각하여 IAEA사찰과 무관하게 실시되는 것이다. 그리고 남북 상호사찰과 IAEA사찰을 접합시키는 것은 ① 북한의 NPT 완전복귀를 어렵게 하고, ② IAEA의 기존 사찰체제를 無用化시키며, ③ 남북 상호사찰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단, 남북한 상호사찰 규정가운데 남북한이 합의하는 경우 특정시설에 대한 IAEA의 사찰실시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2개 미신고시설에 대한 사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회에 한하여 남북한 상호사찰과 IAEA사찰을 연계시키는 방안이 고려될 수도 있다.

그러나 남북 핵협상에 비추어 볼 때, 상호사찰 규정을 마련하여 미신고시설의 사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결국 북한은 실질적인 실천의지 없이 상호사찰을 통하여 미신고시설을 공개할 수 있다고 협상여지를 남겨 놓음으로써 시간과 名分을 벌면서 핵개발의 핵심에 접근하는 IAEA 사찰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이는 가능한 한 형식적 사찰로써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셋째, 북한은 핵문제보다는 자신의 주도 아래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해 북·미회담을 끌고 나가려 하고 있다. 북한은 북·

미회담을 통해 북·미 관계개선은 물론, 평화협정 체결, 고려 연방제 통일방안 등 미국을 자신의 한반도문제 해결 방안을 토의하는 정치회담으로 끌어내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북한은 제1, 2단계 북·미회담 이후 북·미회담 결과를 김정일의 영도력에 의한 북한의 외교적 승리로 선전함으로써 북한주민의 내부동요를 억제하고 權力承繼와 관련한 북한체제의 결속 강화에 이를 적극 활용하였다. 특히, 북한은 제1단계 북·미 고위급회담의 「공동성명」을 ‘역사적 전환을 이룬 계기’라고 주장하여 그들의 외교적 승리로 선전하는 한편, 제2단계 북·미 고위급회담 직후에는 「공동보도문」을 신속히 보도(7. 20)하면서 “회담이 전진적이며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북한이 핵카드를 대미협상용으로 뿐만 아니라 김정일 권력승계 과정에서의 체제공고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 제2단계 북·미회담 以後

(1) 남북 特使交換 논의 再開

1993년 7월 제2단계 북·미회담 이후 IAEA의 대북사찰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제3단계 북·미회담의 先決條件인 남북대화 진전을 과시하기 위해 정상회담을 위한 특사교환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미 7월 19일 제2단계 북·미 회담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강석주 북한측 수석대표는 한반

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빨리 이행할 것과 함께 정상회담 개최 준비를 위한 특사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정부는 1993년 8월 4일 남북고위급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황인성 총리 명의로 남북 핵통제공동위를 8월 10일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 제의는 북한측이 제2단계 북·미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남북회담을 시작할 용의를 표명함에 따라, 핵사찰 규정마련과 남북 상호사찰 실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북측은 8월 9일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국제공조체제 유지와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 개최 입장을 비난하면서 우리측 제의를 거부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8월 14일 다시 한번 핵통제공동위 개최를 촉구하였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핵통제공동위 개최 제의를 계속 거부해 오던 중 북·미접촉을 위한 선결조건인 남북대화의 진전을 충족시키지 않을 수 없는 시한이 임박하자, 1993년 8월 31일 IAEA와의 협상 개최와 동시에 남북 고위급회담 북측 대변인을 통해 우리측에 특사교환을 제의하였다.

북한의 특사교환 제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측 통일담당 부총리를 특사로 지정한 것을 철회하고, 최고위급이 임명하는 「임의의 급」 특사교환도 무방하다. 둘째, 특사교환시 논의될 회담의제는 ① 한반도의 비핵화문제, ② 긴장완화와 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공동대책 마련 문제, ③ 전민족대단결 문제, ④ 최고위급회담 실현을 위한 제반문제

등이다. 셋째, 특사교환의 전제조건으로 ① 팀스피리트훈련 및 모든 적대적 핵전쟁연습 중지와 ② 핵문제와 관련한 우리 측의 국제공조체제 포기 등 2개의 요구조건을 공식적으로 제시하였다.

우리 정부는 9월 2일 황인성 국무총리 명의로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접촉을 제의하면서, 쌍방최고책임자가 임명하는 특사교환에서는 핵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합의·해결하는 한편 그 밖의 남북간 주요 현안을 다룰 것을 명시하였다.

우리 정부가 북한측의 「임의의 급」 특사교환 제의를 수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남북대화 재개없이 제3단계 북·미회담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핵전쟁연습 중지와 국제공조체제 포기 등 2개 요구조건을 들어 남북간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북한이 남북대화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자, 미국은 미·북 북경참사관 접촉(9. 15) 및 갈루치 미 국무차관보의 제3단계 미 북회담 관련 대북 서한 발송(9. 20) 등의 경로를 통해 북·IAEA간 사찰협의 및 남북대화가 있어야 후속 미·북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는 의사를 북한에 전달하였다. 이후 남북대화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10월 1일 IAEA 정기총회에서 북한 핵사찰을 촉구하는 對北決議案이 채택되고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가중되자, 북한은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강성산 총리 명의로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 개최를 제의(10. 2)하

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 제의에서 “실무접촉에서 북측이 제기한 원칙적 문제 (핵전쟁연습 중지, 국제공조체제 포기)들에 대한 명백한 대답을 기대한다”는 표현을 첨가하였다.

북한측의 호응으로 1993년 10월 5일 이후 특사교환을 위한 남북간 실무대표접촉이 10월 25일까지 3차례 진행되었다.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에서 남북 쌍방은 특사의 임무, 교환 방법 등 2가지 사항을 제외한 기타 節次問題에서는 의견이 일치하거나 유사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북측은 2개 요구사항을 계속 주장하면서 절차문제에 대한 본격적 토의를 기피하였는 바, 이는 북·미간 3단계 회담, IAEA사찰 수용문제 및 남북 특사교환을 상호연계하여 협상하면서 팀스피리트훈련 중지를 확보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제3차 남북간 실무대표 접촉 이후 유엔 총회의 대북한 핵사찰 촉구 결의안 채택(11. 1)으로 국제적 압력이 가중되자 북한은 11월 3일 우리측 국방장관의 대북한 강경발언을 빌미로 제4차 실무대표 접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특사교환에 대해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던 북한이 급기야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을 斷絶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의도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첫째, 북한은 남북간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에 대해 제3단계 북·미회담을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는 것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둘째, 북한은 북·미간 3단계 회담, IAEA사찰 수용문제 및

남북 특사교환을 상호연계하여 협상하면서 팀스피리트훈련 중지를 확보하려고 하였다.

셋째, 북한은 남북대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압력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고자 하는 동시에 북·미회담에서 핵카드의 효용성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핵문제 해결을 가능한 한 지연시키려 하였다.

넷째, 북한은 두가지 전제조건에 대한 남한측의 답변을 계속 요구함으로써 한·미공조체제 및 국제공조체제에 균열을 가하고자 하였다.

북한과 미국은 일련의 실무접촉을 통해 1993년 12월 29일 북·미간 3단계 회담실시 및 IAEA사찰 수용에 대해 합의하였는 바, 1994년 2월 15일 북한이 7개 신고시설에 대한 IAEA의 사찰수용 의사를 표명한 상황에서 1994년 2월 25일 '94 팀스피리트훈련 중단, IAEA사찰 실시, 남북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 재개, 3단계 북·미회담개최(3월 21일 예정) 등 4개항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한은 1994년 3월 3일부터 3차('93. 10. 25) 이후 중단되었던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을 재개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핵전쟁연습 중지와 국제공조체제 포기라는 기존의 2개 전제조건 외에 패트리엇미사일 배치 계획 중단,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 취소를 추가하여 4개 전제조건을 주장함으로써 특사교환 실현에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또한 6차 실무접촉('93. 3. 12)에서 북한은 4개 전제조건을

철회하는 대신 특사교환 실현에 합의하는 「공동보도문」을 발표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형식상으로는 특사교환에 합의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실질적인 남북대화를 회피하고자 하는 입장을 노정했다. 아울러 후속 실무접촉에서 북한은 특사의 임무로서 「민족대단결 도모」와 「민족자주성 원칙」을 열거함으로써 한·미공조체제를弛緩시키고 남한내 국론을 분열시키고자 하였던 바, 8차 실무접촉(3. 19)에서 북한은 미국 및 남한의 자세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4개 전제조건을 다시 제시하는 등 강경입장으로 선회하고 회담을 결렬시켰다.

(2) 북·미간 「一括妥結」 논의

제3단계 북·미 고위급회담으로 예정된 1993년 9월 하순까지 IAEA 대북사찰 및 남북대화가 진전되지 않음에 따라 북·미회담 개최가 불투명해 진 가운데, 북한은 1993년 10월 12일 애커만(Ackerman) 미하원 의원 방북시 수행한 퀴노네스(Quinones) 미국무부 북한담당관에게 「일괄타결」(package deal)방안에 관한 非公式 文件을 전달하였다. 이후 북한은 핵문제의 「일괄타결」 방식에 의해 대미협상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북·미회담 북한측 대표인 강석주 외교부 제1부부장을 통해 1993년 11월 12일 북한 핵문제와 북·미관계개선 문제를 「일괄타결」 방식으로 해결할 것을 공식 제안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1993년 11월 12일 핵문제의 「포괄

〈북한측 일괄타결안의 주요 내용〉

- 북한측 이행사항: 핵투명성 보장 (IAEA 임시·일반 사찰 수용)
 - * 영변의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은 언급하지 않음.
- 북한측 요구사항:
 - ① 핵위협 중단 (T/S 훈련 중지, 핵선제 불사용 문서보장),
 - ② 대북 적대정책 해소 (북·미수교, 국가인정, 휴전협정의 평화 협정으로의 대체, 경수로 전환 지원 등)

적 해결」(a comprehensive solution) 방안이 미·북간에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1993년 11월 13일 북·미간의 「포괄적 해결책」이 남북 대화 및 북·IAEA 협의를 배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였다.

한·미간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 양국 頂上은 1993년 11월 23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대화우선원칙과 함께 북한의 NPT 잔류, IAEA 핵안전조치 협정의 준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실천 등이 필요하는 점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일괄타결」 방안에 대응하여 핵문제의 최종적 해결을 위한 「철저하고 광범위한」 접근방식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한·미 양국은 북한이 IAEA 사찰을 수용하

고 남북대화가 진전될 경우에 한하여 제3단계 북·미 고위급 회담을 개최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였다.

＊ 철저하고 광범위한 접근(thorough and broad approach)

- thorough: 핵문제 해결의 目標설정 - 철저하고 완전한 해결 도모
- broad: 목표달성 手段 - 모든 가능한 방안 활용

1993년 11월 말 북한에 설치된 IAEA 사찰장비의 교체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북한 핵사찰의 계속성이 의문시되는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93. 11. 23) 결과를 북측에 통보하는 형식으로 11월 24일 북·미간에 비공개 실무접촉이 시작되었다. 이후 미국과 북한 양국은 핵문제 해결을 위해 일련의 실무접촉을 1993년 12월 29일까지 계속하였다.

1993년 12월 29일 북·미 실무접촉에서 북한은 7개 신고시설에 대한 IAEA의 임시·일반사찰을 수용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합의 내용에 대해 북·미간 해석상의 차이를 보였다. 북한은 합의된 임시 일반사찰을 NPT 탈퇴 유보의 특수상황에서 핵안전조치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制限的 사찰로 해석하였으나, 한·미 IAEA 등은 NPT회원국이 수용하는 全面的 범위의 임시·일반사찰 수락으로 해석하였다.

1994년 2월 25일 북·미간 비공식 실무접촉에서 양국은 ① IAEA의 북한 핵사찰 실시, ② 남북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

〈북·미 실무접촉 관련 남북한의 입장 비교〉

남 한	북 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EA가 요구하는 수 준의 임시·일반사찰 수 용 재촉구 - 북한의 IAEA사찰 수용 및 남북대화의 실질적 진전있어야 3 단계 북·미회담 가능 단, '94 T/S 훈련 중지 발표 및 북·미 회담 개최 일시 발표 등은 IAEA사찰 수 용 및 남북 특사교환 실현을 전제로 융통 성 발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EA사찰 관련, NPT 탈퇴를 유보한 특수상 황에서 완전한 임시·일 반사찰 수용 불가 단, IAEA와의 협의를 통해 사찰수준 협의 - 남북대화 개최와 관련, '94 T/S 훈련 중단 조 기 발표 요구

촉 재개, ③ 제3단계 북·미 고위급회담 일정 확정(3월 21일 예정), ④ '94 팀스피리트훈련 중지 등 「동시행동조치」 4개항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 핵문제는 일단 破局을 면하게

되었다⁵⁾

그러나 IAEA의 연속성사찰 결과, 핵안전조치의 연속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남북 특사교환이 성사되지 않음에 따라 3월 21일로 예정되었던 북·미간 3단계 회담은 개최되지 않았다.

이로써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북·미간 합의사항이 또다시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3) 북·IAEA간 사찰재개 협상

NPT 탈퇴 선언 이후 북한은 IAEA의 불공정성에 대한 비난을 중단하지 않았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IAEA 안전조치 협정 이행 및 IAEA와의 협상용의를 밝혔다('93. 3. 31 김광섭 빈 주재 북한대사의 IAEA 특별이사회 발언, '93. 4. 22 손성필 주러 북한대사 기자회견). 특히 1993년 3월 18일 IAEA 특별이사회는 대북 결의안에서 북한의 NPT 탈퇴 선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IAEA 안전조치 협정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5) 북한은 NPT 탈퇴를 유보하고 있는 특수상황에서 북·미회담을 위해 IAEA 사찰의 연속성을 보장하려 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은 IAEA가 요구하고 있는 사찰을 모두 수용할 수 없으며 특히 7개 신고 시설 중 5MW 원자로와 방사화학실험실에 대해서는 이미 설치된 카메라의 필름과 배터리 교환 및 봉인장치 점검 등으로 IAEA 사찰 범위를 제한하였다. 따라서 IAEA와 북한은 1994년 3월 실시된 사찰에 대해 임시·일반사찰이라는 용어대신 「연속성 보장사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블릭스 IAEA 사무총장은 1993년 4월 16일 영변 핵시설에 대한 감시장치의 작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4~5명의 사찰단을 파견할 것임을 제의하였으며 IAEA 사찰단의 방북기간을 5월 4~17일로 계획하고 있다고 통보(4. 28)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같은 날 ① 영변지역내 2개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 거부, ② 영변 핵발전소내의 안전조치 장비의 점검 및 교환만을 위한 IAEA 사찰단의 방북 허용, ③ IAEA와의 협상을 위해 빈에 북한 대표단 파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을 IAEA 사무총장에게 발송하였다. 이에 따라 IAEA 사찰단이 1993년 5월 8~16일 북한 핵시설에 대한 사찰장비의 점검 및 교체를 실시하였다.

1993년 7월 제2단계 북·미회담의 합의사항에 따라 8월 3~10일 IAEA 사찰단이 북한을 방문하고 핵시설 감시장비의 배터리와 필름을 교환하였으나, 5MW 원자로 및 재처리시설에 대한 북측의 접근거부로 정상적 사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찰문제에 대한 IAEA와 북한간 협상이 1993년 8월 31일~9월 4일 평양에서 개최되었으나 북한은 IAEA의 不公正性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2개 미신고시설에 대한 사찰문제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에 따라 IAEA는 정기이사회('93. 9. 23) 및 총회(10. 1) 결의안 채택을 통하여 북한의 IAEA 사찰활동 제한으로 핵안전조치 협정이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북한에게 全面的 임시 및 일반사찰 수용을 촉구하였으며, 이에 대응하여 북

한은 10월 5~8일로 예정된 북 IAEA간 사찰협상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였다.

제48차 유엔 총회에서 블릭스 IAEA 사무총장이 핵안전협정에 대한 북한의 의무불이행 범위가 확대되고 핵안전협정의 계속성이 一部 損傷된 것으로 보고함에 따라, 유엔 총회는 1993년 11월 1일 핵안전협정의 전면적 이행을 위해 IAEA에 즉각 협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대북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블릭스 IAEA사무총장, 북한 핵관련 유엔 보고 내용〉

- IAEA 대북사찰 결과 신고되지 않은 핵물질이 북한에 존재함.
- 북한이 IAEA의 핵안전조치 점검활동을 제한함에 따라 전면적 안전조치 협정에 대한 「불이행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 IAEA의 대북사찰활동은 「綜合的 全體」(an integral whole)로 이루어져야 하며, 피사찰 국가의 선택사항이 아님.

블릭스 총장은 IAEA 정기이사회 보고(12.2)에서 IAEA 총회(10.1) 이후 북한의 안전조치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 핵이 평화적으로만 이용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북한 핵시설에 대한 IAEA의 사찰이 중지되고 북한 핵문제로 인한 긴장이 고조되자 미국은 북·미 실무접촉을 통하여 북한 핵문제의 해결방안을 강구하였다. 1993년 11~12월 말 북·미 실무접촉을 통하여 북한 핵문제에 대한 包括的 해결방안이 집중 논의됨에 따라 IAEA와 북한은 1994년 1월 7일 이후 빈에서 협상을 진행하였다.

북한과 IAEA간 협상에서 7개 신고시설에 대한 사찰의 절차 및 성격이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북한은 1992년 5월 이후 IAEA의 사찰을 수용하여 7개 시설에 대해서 임시사찰 및 일반사찰을 받아왔다. 이 가운데 1992년 7월 2차 사찰기간중 북한과 IAEA간 보조약정서(Subsidiary Arrangements)⁶⁾ 체결에 의해서 연구용원자로, 임계시설, 준임계시설 등 3개 시설은 일반사찰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핵발전실험원자로, 방사화학실험실, 핵연료봉제조시설, 핵연료봉저장시설 등 4개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조약정서가 체결되지 않음으로써 이 곳에 대해서는 임시사찰이 실시되었다.

북한과 IAEA간의 협상에서 IAEA는 북한이 NPT를 탈퇴하지 않고 있는 한 IAEA 안전조치 협정 이행은 조약 당사국으로서의 법적 의무라고 주장하면서 7개 신고시설에 대한 전

6) 보조약정: IAEA 안전조치협정(제39~40)은 동협정의 실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보조약정을 체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보조약정은 당사국과 IAEA간 연락 및 사찰관련 서류작성 등에 관한 '일반사항'(General Part)과 사찰대상 시설에 관한 별항의 '시설부록'(Facility Attachment)으로 구성되어 있다.

면사찰을 요구하고 북한측의 恣意的인 사찰활동 제한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한은 NPT 탈퇴 유보의 특수상황에서 IAEA의 완전한 사찰권한을 인정할 수 없으며 특히 7개 신고시설중 5MW 원자로와 방사화학실험실에 대해서는 이미 설치된 카메라의 필름과 배터리교환 및 봉인장치 점검 등을 통해 핵안전장치 협정의 「연속성 보장」 사찰만을 허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특히 북한은 IAEA와의 사찰협의를 북·미협상 결과의 기술적 이행차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이와 함께 5MW 원자로 연료봉의 시료채취도 북한과 IAEA협상의 현안이 되었다. 5MW 원자로 연료봉의 시료에 대한 조사는 북한이 신고한 플루토늄양의 정확성을 검증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북한은 동 원자로에서 1990년 3월 손상된 핵연료봉을 꺼내 1회의 재처리를 통해 약 90g의 플루토늄을 추출했을 뿐이라고 IAEA에 보고하였으며, 1986년 동 원자로 가동 이후 한번도 연료봉 전체를 교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미 CIA는 북한이 1989년에 5MW원자로의 연료봉을 완전 교체한 것으로 추정하고 연료봉의 시료분석을 통하여 북한이 추출한 플루토늄의 정확한 양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과 IAEA간의 협상이 부진한 가운데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 및 국제사회의 응징여론이 비등하자, 북한은 1994년 2월 15일 미국과의 실무접촉에서 IAEA 핵사찰을 수용하겠다

는 의사를 밝히고 IAEA측에도 이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IAEA 사찰단은 3월 3일부터 14일까지 「연속정보장」을 위한 사찰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영변 방사화학실험실의 시료채취를 거부함에 따라 IAEA는 제6차 임시 일반사찰('93. 2) 이후 북한의 핵물질 전용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발표하고 IAEA 특별 이사회를 개최('94. 3. 21)하여 북한의 핵전면 사찰 수용을 촉구함과 동시에 同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회부하였다.

3. 핵관련 북한의 行態 및 協商戰略

가. 主要 行態 分析

핵문제 관련 북한의 대남협상 目標은 남한에서의 미군 핵무기 철수, 북한에 대한 핵위협 제거, 팀스피리트훈련의 중지, 남한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거, 북·미 직접협상 등인바, 북한은 이러한 협상목표 달성을 위해 집요한 협상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1990년 9월 제1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미군 핵무기 철수를 언급하고, 1991년 10월 제4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에 관한 선언」을 제의하는 등 남한으로부터의 미군 핵무기 철수라는 협상목표를 반복 제의함으로써 자신의 기본입장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협상행태를 보여왔다. 북한은 비핵지대화 주장 이전부터 주한 미핵무기 철수와

자국에 대한 핵위협 제거없이 핵관련 협상에 임할 수 없음을 정부의 공식성명, 언론, 국제회의 등에서 반복 제안함으로써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핵관련 협상 및 핵사찰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 더욱이 미국 및 남한과의 핵협상에서 북한은 미군철수, 평화협정 체결, 북·미 수교, 전민족 대단결문제 등 강도 높은 요구조건을 지속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자신이 관철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협상목표를 달성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북한의 협상행태는 매우 공격적인 면을 지니고 있는 바, 이는 북한이 협상을 힘과 영향력 증대를 위한 투쟁으로 보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이러한 挑戰的 협상행태는 협상상대로 하여금 방어적 태도를 취하게 한다.

또한 북한은 공개적 협상보다는 비공개적인 막후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공개협상에서는 '교섭을 위한 교섭'만을 진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와같은 협상태도는 북한의 협상대표들이 공개협상에서 투쟁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과시하고 동시에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노력에서 나오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1994년 1월 중순 이후 북한 핵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가 본격적으로 거론되자 IAEA와 핵사찰에 극적으로 합의('94. 2. 15)하였는 바, 이는 북한의 협상행태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대외협상에 있어서 협상 초기

에는 경직되고 極端的인 입장을 견지하다가 협상이 자국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경우 막바지에 상대방에게 양보함으로써 협상이 타결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협상행태는 북한측이 협상과정에서 상대방의 융통성의 한계를 파악하려는 태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협상과정에서 조금씩 양보하면서 이에 대한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일반적 협상태도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핵문제가 국제문제로 대두된 후 한반도 핵문제는 본질상 북한과 미국사이의 문제이므로 북·미간 직접협상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다. 더욱이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고 주장하고 핵무기 개발을 공식 부인하는 한편, 한반도 핵문제는 곧 미군의 핵문제라고 주장하면서 국제여론을 자국에 유리하게 조성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북한은 핵관련 협상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줄 수 있는 외국인사를 초청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은 외국인사 초청을 핵개발 의혹 해소, 상대방 정보 입수, 상대방의 한계점 파악, 자기 주장의 강화 수단 등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나. 協商戰略 및 戰術

(1) 協商窓口 差別化: 「主 북·미회담, 從 남북대화」

북한은 핵협상과 관련, 북·IAEA간 협상, 북·미교섭, 남북 대화라는 세차원의 대화통로를 개설한 후 적절한 시기에 이를 斷絶 또는 再開하는 한편, 주요 협상상대와의 대화 비중을 조정함으로써 협상력 제고를 도모하고 국제공조체제의 이완을 기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북한체제의 총체적 난국 해소를 위해 북·미대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북한은 한·미공조체제에 의한 남북대화 요구를 최소한의 수준에서 충족시키면서 북·미회담의 상대적 비중을 제고함으로써 대미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한·미 양국간 의견 불일치 및 미국 및 남한 내에서 야기되는 정책상의 갈등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협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협상전략은 아래의 사례에서 잘 나타나 있다. 예컨대 한·미 양국이 제2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1992. 10. 7~8)에서 남북상호사찰에 진전이 없을 경우 '93 팀스피리트훈련을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1993년 1월 26일 이를 공식 발표하였는 바, 북한은 이에 즉각 반발, 1월 29일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단 성명을 통하여 모든 남북대화 통로를 폐쇄하였다. 반면 1993년 6월 12일 NPT 탈퇴 선언 발효시점에 임박하여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및 안보리 결의 등 국

제사회의 압력이 가중되자 북한은 핵문제를 민족내부 문제화 함으로써 국제적 압력을 모면하기 위해 1993년 5월 25일 남북간 통일문제를 전담하는 부총리급 「특사교환」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북·미간 고위급접촉의 협상통로가 개설된 이후 핵문제를 대미협상에서 직접 해결하기 위해 '93 을지훈련을 구실로 특사교환 제의를 自進撤回(6. 26)하였다. 그 후 우리 정부의 핵통제공동위 재개 제안('93. 8. 4)을 거부했던 북한은 제3단계 북·미회담의 선결조건인 남북대화 진전의지를 과시할 필요성을 감안, 「임의의 급」 특사교환을 제안('93. 8. 31)하였다.

대미협상에서 북한은 핵무기 개발현황의 모호성을 협상카드로 대미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체제인정 및 서방세계와의 경제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북한은 향후 생화학무기,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의 개발 및 수출, 인권문제 등이 대미관계 개선의 장애요인으로 대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一括妥結(a package deal) 방식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 측이 제시한 단계적 해결방식을 수용할 경우 핵카드의 효용성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 영변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대미협상에서의 일괄타결을 위한 최후수단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 極端外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통해 ① 대남 군사력 우위 유지, ②

체제 유지용 안전장치 확보, ③ 핵카드 활용에 의한 북·미관계 개선 및 남한의 상대적 고립 유도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적 압력에 초강경책으로 대응하는 소위 「極端戰略」(brinkmanship strategy)을 구사하여 왔다. 북한은 準戰時 상태 선포에 의한 한반도 긴장 조성 및 NPT 탈퇴 선언 등의 극단외교를 통해 위기감을 극대화하는 한편,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를 보임으로써 상대방이 수세적인 국면에 처하도록 유도하고 협상력의 우위를 확보하고자 기도하고 있다.

예컨대 북한은 팀스피리트 한·미 합동군사훈련 재개 및 영변 미신고시설 2개에 대한 특별사찰 요구 등 국제적 압력에 대응하여 1993년 3월 12일 NPT 탈퇴 선언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통해, ① IAEA 특별사찰의 압력 회피, ② 협상의제를 IAEA 사찰문제 대신 NPT復歸 문제로 전환, ③ 대미 직접협상 통로 개설 등 3가지 목적을 달성하였다. 이외에도 북한 인민무력부 부부장 김광진은 담화('93. 11. 3)를 통해 권영해 국방장관의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군사대응도 불사할 계획”이라는 기자회견(11. 2) 내용을 구실로 남한과의 대화불가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북한은 외교부대변인 성명('94. 1. 31)을 통해 미국이 북·미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NPT 탈퇴 유보 결정을 철회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그런가 하면 남북특사교환을 위한 8차 실무접촉('94. 3. 19)시, 북한의 실무접촉대표 박영수는 남한과 미국이 부당한 요구를 계속할 경우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위협하였다.

(3) 最大遲延·最少公開

핵전략과 관련, 북한은 핵무기 개발의지를 포기하지 않은 채 핵정책의 기본방향을 「핵무기 개발을 위한 시간확보 전략」으로부터 「핵을 대남 대외용 협상수단으로 활용하는 전략」으로 변화시켜 왔다.

북한은 1985년 12월 NPT 가입 이후 6년 이상 핵안전조치 협정 체결을 지연시켰으며, 1991년 7월 핵안전조치 협정 체결 의사를 표명한 후에도 주한미군의 핵무기 철수 등의 전제조건을 제시하면서 정식서명 및 비준을 지연시키는 전술을 구사해 왔다. 북한은 핵사찰을 협상수단화한 이후 核카드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찰의 最大遲延戰術과 더불어 핵시설의 最少公開戰術을 구사하고 있다.

(4) 協商議題 변경 및 前提條件 제시

북한은 NPT 탈퇴 선언을 통해 핵관련 협상의제를 종래 IAEA의 特別査察 수용여부와 남북한 상호핵사찰을 위한 査察規程 토의로부터 ① 북한의 NPT 잔류, ② IAEA 핵안전조치 협정 준수문제, ③ 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대화 재개 등으로 변경시켰다. 또한 북한은 NPT 탈퇴 유보를 선언한 特殊狀況하에서 핵안전조치 협정의 완전한 준수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였으며, 제2단계 북·미회담에서는 IAEA사찰 수용이 아닌 핵사찰 협상개시 및 남북대화 재개를 약속하는 한편, 경

수로지원 문제를 협상의제에 포함시키는 등 협상의제를 변경시켜 왔다.

한편 북한은 필요시 전제조건을 부가함으로써 상대방의 양보를 중용하는 협상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예컨대 북한은 제1단계 북·미회담에 따른 북·미간 합의사항에 IAEA의 불공정성 시정을 명시하게 함으로써 同 문제의 해결여부를 IAEA 사찰 수용의 前提條件化하였다. 북한은 제2단계 북·미회담 「공동보도문」에 북한 핵문제의 중국적 해결의 일환으로 경수로 도입 지지 및 이를 위한 북·미간 협의 용의 표명을 명기하게 함으로써 북한의 경수로문제가 제3단계 회담의 우선적인 토의의제로 제기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다.

이외에도 북한은 남북간 특사교환의 전제조건으로 핵전쟁연습 중지, 국제공조체제 포기,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 취소, 패트리어트 미사일 반입중지 등 4개 요구조건을 공식 제기하였다.

(5) 合意事項 이행지연

1991년 12월 18일 우리측의 核不在宣言에 호응, 북한이 제1차 핵관련 대표접촉('91. 12. 26)에서 非核地帶化 주장을 철회하고 12월 31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함으로써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가 개최된 이후 이미 철회한 비핵지대화 주장을 되풀이하고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합의서 채

택을 주장하는 「先 대원칙, 後 세부사항 합의」 전략을 구사하여 남북 상호사찰의 구체적 이행을 회피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협상을 ‘종결없는 지속적 과정’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합의서 이행단계에서도 합의사항에 대한 충실한 실천보다는 자신들의 후속목표를 계속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대북협상에서 합의사항 이행문제가 항상 협상종결의 難題로 대두되었다.

第Ⅲ章 우리 政府의 북한 核問題 解決 努力

1. 우리 政府의 基本立場

북한의 핵문제는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民族內部問題인 동시에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확산방지를 위한 핵비확산조약 체제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國際問題라는 二重의 性格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의 해결방안은 남북관계발전을 도모하고 동북아 및 세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한다는 이중적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북한 핵문제는 남북관계, 북·미관계 및 북·IAEA관계라는 多元的 次元에서 전개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북한 핵문제의 직접 당사자는 남북한과 미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 미국, 그리고 우리 정부의 三角關係의 틀에서 북한 핵문제의 성격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의 非核化와 평화유지라는 점에 대해서 견해의 일치를 보이고 있으나, 북한 핵문제에 대한 접근시각에 있어서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 핵을 직접적 위협요인으로 인식하면서 정책예측이 어려운 북한체제의 비합리성 및 돌출성을 우려하고 남북간 지리적 근접성에 따른 군사적 돌발사태의 파급효과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전세계적 차원의 핵 비확산과 동북아 지역의 안

정유지에 상대적인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의 일차적 당사자인 우리 정부는 군사적 충돌사태를 사전 방지하고 평화적 방법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고 통일여건을 성숙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우리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① 북한 핵무기 개발의 진전 저지, ② 북한 핵무기 개발 의지 포기, ③ 북한 핵무기 보유시 사용 방지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현재 북한 핵무기 개발의 진전 저지라는 제1단계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① 1단계 : 핵문제 해결의 突破口 마련, ② 2단계 : 핵사찰 실시, ③ 3단계 : 핵사찰 결과 처리, ④ 4단계 : 핵투명성 보장장치 마련 등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여 이를 실천해 왔으며, 현재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에 치중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이와 같은 목표 및 전략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政策基調를 바탕으로 북한 핵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실천해 왔다. 첫째, 북한 핵문제는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당면과제이다. 둘째, 핵문제 해결방안은 남북긴장을 조성하지 않는 방향에서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북한 핵문제의 국제적 성격을 감안하여 한·미간 및 국제적 共助體制에 입각하여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한반도문제의 「當事者 해결원칙」에 근거하여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 차원에서 남북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넷째, 북한에게 핵무기 개발의 시간을 주지 않는 방향에서 문제 해결을 모색한다.

2. 具體的 해결 노력

가. 「비핵화 공동선언」과 IAEA 핵안전조치 협정 체결 유도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 계획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혹이 대두되는 가운데 북한을 IAEA의 사찰체제에 편입시켜 핵사찰을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IAEA 사찰의 限界性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에서 남북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노태우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91.9.24)에서 북한의 IAEA 핵사찰 수용을 촉구하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남북간 신뢰가 구축될 경우 재래식 戰力의 감축과 한반도 핵문제에 대해서 북한과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이것은 우리 정부가 남북간 직접대화를 통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었다.

미국과 소련은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을 조인('91.7.30)하여 소련 전략무기의 약 50%와 미국 전략무기의 30%를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부시 미대통령은 지상 및 해상 배치 전술핵 폐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언을 발표('91.9.27)함으로써 미·소간 전술핵폐기를 선도하는 조치를 취하였

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한국에 배치된 미국 전술핵무기의 폐기를 요구할 명분을 상실하였다.

제4차 고위급회담에서 북한 핵문제가 남북간 주요 현안으로 부각된 이후 노태우 대통령은 1991년 11월 8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을 발표하여 우리 정부의 비핵화정책을 천명하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당사자간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가시화하였다. 노태우 대통령은 同 선언을 통하여 우리정부는 ①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핵무기의 제조·보유·저장·배비·사용 금지, ② IAEA 핵안전조치 협정 준수, 한국내 핵시설 및 핵물질에 대한 국제사찰 수용, 핵연료 재처리 및 핵농축시설의 비보유, ③ 핵무기와 무차별 살상무기가 없는 평화적 세계 지향, 화학·생물무기의 전면적 제거를 위한 국제적 합의 준수 등을 표명하였다. 아울러 북한에게 핵사찰 수용과 함께 핵재처리 및 농축시설의 보유 포기를 촉구하고, 이를 위하여 남북한 당사자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한국이 공식적으로 제안한 최초의 핵정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 정부는 이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한반도내 핵무기의 존재여부에 대해 확인도 부정도 하지 않는 미국의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정책에 수동적으로 동조하였던 소극적 입장에서 탈피하여 핵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갖게 되었다. 우리 정부는 同 선

언을 통하여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촉구함과 동시에 남북간 직접대화에 의해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였다.

1991년 12월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은 제4차 고위급회담시 제안했던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에 관한 선언」을 수정없이 제시한 반면, 우리측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에 相互核査察 조항을 추가하여 「한반도 비핵화 등에 관한 공동선언」을 제시하였다. 우리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과는 별도로 남한과 북한의 모든 군사 및 민간시설, 핵 관련 물질과 장소에 대한 남북 상호사찰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위하여 1992년 1월 31일까지 상대방이 선정하는 남북한의 군사 및 민간시설(북한의 영변 핵시설과 순천비행장, 남한의 군산비행장이나 기타 북한이 정하는 민간시설)에 대해 示範査察(pilot inspection)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우리 정부가 IAEA의 대북사찰과 별도로 남북한 상호사찰의 실시를 주장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였다. 첫째, IAEA사찰은 신고된 핵물질 및 핵시설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있는 바, 북한이 특정 핵시설 및 핵물질을 보고서에서 누락·은닉할 경우, 효과적인 사찰 실시가 곤란하다. 더욱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우라늄광산 및 핵정련시설은 IAEA의 사찰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 핵개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IAEA의 사찰과 함께 「비핵화 공동선언」에 의거한 남북 상호핵사찰이 실시되어야 한다. 둘째, 남북간 상호

핵사찰은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축소의 계기를 마련하고 핵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제5차 고위급회담에서 핵문제에 대한 남북간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결국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과 핵문제가 분리 취급되어 남북한은 핵문제를 12월 중 별도의 대표접촉을 통해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북한의 핵사찰문제가 「기본합의서」 채택과 분리 취급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었다. 우선 민족적 차원에서 남북간 包括的 관계개선을 일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합의서」를 우선 채택하고 복잡한 사안이 내포된 핵문제에 대한 논의는 일단 뒤로 미루어졌다. 또한 우리측이 동시 示範査察을 제안함에 따라 북한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정리를 위해 시간을 필요로 했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다.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기본합의서」가 채택된 점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노태우 대통령은 1991년 12월 18일 “우리나라의 어디에도 단 하나의 핵무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한반도의 비핵화와 관련한 발표문」을 통해 남한내 核不在를 천명하였다. 「한반도내 핵부재선언」은 11월 8일 발표된 비핵화정책이 실현되었음을 확인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사찰을 거부할 명분이나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북한은 조속한 시일내에 국제핵사찰을 수용하고 재처리 및 농축시설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로써 12

월 하순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한반도 핵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한 대표접촉에서 핵문제 협상이 진전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제5차 고위급회담시 남북한이 공동발표문을 통해 “한반도에 핵이 없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반도 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12월 안에 판문점에서 대표접촉을 갖기”로 합의함에 따라 12월 말까지 한반도 핵문제 협의를 위한 3차례의 대표접촉이 있었다.

제1차 핵관련 대표접촉('91. 12. 26)에서 북한이 非核地帶化 주장을 철회하고 우리측의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한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초안)을 제시함으로써 핵문제 논의는 빠르게 진전되었다. 북한은 비핵화 공동선언의 핵심사항인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겠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 적재 비행기·함선의 통과·착륙·기항금지, 핵우산협정 체결 금지, 미국 핵무기와 주한미군의 철수 및 핵기지 철폐 공동노력, 비핵지대 존중을 위한 대외적 조치 강구 등 기존의 비핵지대화 주장을 철회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한은 1991년 12월 31일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합의할 수 있게 되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분위기 조성 및 체결〉—

- '91. 9. 27 부시 미대통령, 전술핵무기 철수 발표
- '91. 11. 8 노태우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선언 발표
- '91. 12. 18 노태우 대통령, 核不在宣言 발표
- '91. 12. 31 남북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합의
('92 2. 19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동시 발효)

남북한이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합의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남북한은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함으로써 남북 當事者原則에 입각하여 상호합의에 의해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다. 둘째, 「기본합의서」의 이행과 병행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셋째, 남북한이 핵통제공동위의 구성에 합의함으로써 핵문제 논의를 위한 남북한 公式窓口가 개설·가동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공동선언」은 몇가지 한계를 안고 있었다. 첫째, ‘상대방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사찰한다고 규정된 제4항을 구실로 북한의 핵의혹 시설에 대한 상호사찰 요구를 거부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북한이 「공동선언」 3항의 재처리시설 보유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영변에 재처리시설인 방사화학실험실을 보유·

가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의 폐기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

북한은 우리 정부와 「비핵화 공동선언」에 가서명한 후 국제사회 및 우리정부의 IAEA 사찰수용 촉구를 받아들여 1992년 1월 7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하여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성숙된 상황에서 가까운 시일내에 IAEA의 핵안전조치 협정에 서명하고 IAEA의 사찰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북한의 IAEA 핵안전조치 협정 체결 의사 표명과 함께 우리 정부는 '92 팀스피리트훈련 중단을 발표 ('92. 1. 7)함으로써 북한과 IAEA간 핵개발의 투명성 보장 논의를 위한 공식 창구가 개설되고 북한 핵시설에 대한 IAEA 사찰이 가능토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마침내 1992년 1월 30일 IAEA 핵안전조치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북한 핵시설에 대해 IAEA의 사찰이 실시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나. IAEA 사찰과 남북 상호핵사찰 並行 推進

북한은 1992년 1월 30일 IAEA 핵안전조치 협정에 서명한 후 4월 9일 이를 비준하였다. 북한은 同 협정에 의거하여 1992년 5월부터 IAEA 사찰을 받기 시작하여 제2차 임시사찰 기간중인 1992년 7월 IAEA와 세부사찰 규정에 관한 「補助約定」을 체결하였으며 1993년 2월까지 6차례의 사찰을 받았다.

우리 정부는 북한 핵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IAEA의 핵사찰과 병행하여 효과적이고 신뢰성있는 남북 相互査察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는 입장 하에 남북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남북 상호핵사찰을 並行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제6차 고위급회담('92. 2. 18~2. 21)에서 남북한은 「기본합의서」,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함께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효시켰다. 이에 따라 남북한은 남북관계 진전과 북한 핵문제 해결을 병행할 수 있는 기본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남북한은 「비핵화 공동선언」 발효후 1개월안에 구성·운영하기로 규정(「비핵화 공동선언」 5항)된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를 발족시키기 위하여 7차례의 대표접촉을 가졌다. 제6차 고위급회담 기간중인 2월 19일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제1차 대표접촉이 개최되었으나 남북한은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우리측은 시범사찰과 상호사찰의 조기실시를 요구한 반면, 북한은 남한내 모든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사찰과 일본의 플루토늄 수입에 대한 공동대처를 제의하였다.

1992년 2월 17일 개최된 2차 대표접촉에서 우리측은 4월 중순까지 사찰규정을 마련하여 4월말이나 5월초까지 상호사찰을 실시하고 그 이전에 시범사찰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반면 북한은 별도의 부속합의서 채택후 사찰을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외세의 핵위협에 대한 공동대응과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보장을 제안하는 등 한반도 비핵지대화 문제에

를 다시 제기하였다.

이후 추가로 다섯차례의 대표접촉을 거쳐서 남북한은 1992년 3월 14일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채택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한은 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소한 2개월에 한번씩 회의를 갖기로 하였으며,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①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에 관련된 부속문건의 채택·처리, ② 비핵화 검증을 위한 정보교환, ③ 비핵화 검증을 위한 사찰단의 구성·운영, ④ 사찰대상의 선정, 사찰절차·방법, ⑤ 핵사찰 장비에 관한 사항, ⑥ 핵사찰 결과의 시정조치, ⑦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 및 사찰활동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 등을 협의·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남북한은 별도의 「공동발표문」을 발표하여 핵통제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이후 2개월 정도의 기간(5월 14일 이전)안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는데 필요한 문건을 채택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문건 채택후 20일안으로 사찰을 실시하기로 양해하였다.

이후 남북한은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 1993년 1월까지 13차례의 핵통제공동위 전체회의, 8차례의 위원접촉, 1차례의 위원장 접촉 등 총 22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핵사찰 규정에 대한 승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1992년 3월 19일 개최된 제1차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북한은 핵위협 가담 공모행위 금지, 한반도 비핵화의 국제적 보장 등을 포함한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이행

을 위한 합의서」(초안)와 그 부록으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규정」(초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은 이처럼 「비핵화 공동선언」 채택과정에서 이미 철회하였던 한반도 비핵지대화에 관한 사항을 다시 제기함으로써 상호사찰을 지연시키고자 하였다.

우리측은 「비핵화 공동선언」의 합의사항에 따라 별도의 핵 관련 부속합의서가 필요하지 않으며 상호사찰의 세부규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남북 상호 핵사찰 실시를 위한 규정」(안)과 부록으로 정보교환양식과 사찰계획서 작성요령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핵사찰 규정마련 이전이라도 핵관련 정보의 상호교환과 상대방의 핵시설 및 장소를 방문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후 제2차 회의('92. 4. 1)와 제3차 회의('92. 4. 21)에서도 남북한간의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제7차 고위급회담('92. 5. 5~8)에서 남북한은 연락사무소 및 군사공동위원회·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합의서를 발효시킴으로써 「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制度的 장치를 마련하였다.

제7차 고위급회담에서 핵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의 연형묵 총리는 한국이 핵통제 공동위원회에서 논의중에 있는 핵문제를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IAEA의 대북사찰에 대해서는 한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반면 한국의 정원식 총리는 기초발언을 통

하여 한반도 비핵화의 관건은 남북 상호사찰 실현에 있으므로 남북한은 6월 초순경 상호사찰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제7차 고위급회담중 남북한은 협의를 통하여 5월말까지 핵사찰 규정을 마련하고 사찰규정의 발효후 20일 이내에 상호사찰을 실시할 것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제4차 핵통제공동위원회(5. 12)와 제5차 핵통제공동위원회(5. 27)가 개최되었으나 남북한의 견해차는 조정되지 않았으며, 5월 말까지 남북 상호사찰규정을 채택하기로 한 3월 14일의 남북한 양해사항이 무효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후 남북한은 1993년 1월 25일에 이르기까지 핵통제공동위원회의 전체회의, 위원접촉, 위원장접촉 등을 가졌으나 상호사찰규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남북 상호사찰과 관련한 남북한의 견해차는 별도의 부속합의서 채택여부, 사찰원칙, 사찰방법, 사찰대상 등에 대한 것이었다. 첫째, 북한은 사찰규정과 별도로 한반도 비핵지대화 주장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별도의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합의서를 채택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우리측은 별도의 이행합의서는 불필요하며 상호사찰을 위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둘째, 사찰원칙과 관련하여 북한은 영변 핵시설과 남한의 모든 핵기지를 동시에 사찰하자는 「의심동시해소 원칙」을 주장한 반면, 우리측은 남북한이 동수의 핵시설에 대해서 사찰을 실시하자는 「상호주의 원칙」을 제안하였다.

셋째, 사찰방법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分期別 정기사찰과 不時 특별사찰을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북한은 특별사찰에 대하여 반대하였다.

넷째, 사찰대상과 관련하여 북한은 북한의 민간핵시설과 남한의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사찰을 실시해야 한다는 非對稱查察을 주장한 반면, 우리측은 민간핵시설 對 민간핵시설, 군사시설 對 군사시설의 對稱查察을 주장하였다.

다. 國際共助體制 활용

1992년 5월부터 1993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서 실시된 IAEA의 대북 핵사찰 결과 재처리시설의 가동여부, 플루토늄의 추출량, 사용후 핵연료의 행방 등에서 疑惑이 대두되었다. 첫째, 북한이 건설중인 방사화학실험실은 외부 공정 80%, 내부 공정 40%의 공사진척도를 보였으며, 완성될 경우 상당규모의 핵재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재처리를 금지한 「비핵화 공동선언」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둘째, 북한은 IAEA에 제출한 최초보고서에서 1990년 1회 90g의 플루토늄을 추출했다고 보고했으나, IAEA는 최소한 몇차례에 걸쳐서 「Kg」 단위의 플루토늄을 추출했을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북한이 IAEA에 신고한 플루토늄의 양과 IAEA의 추정치간에 「중대한 불일치」가 발견되었다. 셋째, 북한의 원자로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였던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로와 같은 유형이라는 점 때문에 북한 원자로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

었다.

이에 따라 IAEA는 북한의 최초보고서의 내용과 사찰결과 간의 「중대한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1993년 2월 제6차 핵사찰시 영변 핵단지내 핵재처리 폐기물장소로 추정되는 두 곳의 미신고시설에 대한 사찰을 요구하였다. 북한이 이 두곳에 대한 사찰을 거부함에 따라 블릭스 IAEA 사무총장은 1993년 2월 9일 同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 수용을 촉구하는 공식서한을 발송하였다. 그리고 IAEA는 3월 25일까지 북한에게 특별사찰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IAEA 결의안 2636호」를 채택하였다.

IAEA 이사회는 1993년 4월 1일 북한의 핵안전협정 불이행을 유엔에 보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블릭스총장은 4월 6일 同 사안을 유엔 안보리에 보고하였다. 유엔 안보리는 NPT체제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비핵화 공동선언」을 지지하며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IAEA의 노력을 지지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발표(4.8)하였다. 유엔 안보리는 1993년 5월 11일 북한에 대해 NPT 탈퇴 선언 재고와 IAEA 안전조치 협정 이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필요할 경우 추가적 제재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제1차 決議案(825호)을 채택하였다.

북한의 NPT 탈퇴 선언 이후 우리 정부는 북한 핵문제가 민족내부 문제임과 동시에 국제적 안전 및 평화와 관련된 국제적 사안이라는 兩面性을 감안하여 남북간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과 함께 IAEA,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비롯한 핵심

우방국가들과의 국제공조체제를 강화해 왔다.

우리 정부는 특히 국제공조체제 구축을 통하여 ① 북한의 NPT 복귀, ② 특별사찰을 포함, IAEA 사찰 의무의 완전한 이행, ③ 남북간 「비핵화 공동선언」의 실천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 정부는 ①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시도하고, ② 兩者 및 多者 차원에서 압력과 설득의 強·穩 양면전략을 구사한다는 기본전략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왔다.

우리 정부는 북한 핵문제의 平和的 해결 원칙에 입각하여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노력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을 경우 유엔의 대북한 제재 결의에는 동참하되, 군사적 수단에 의한 문제 해결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한승주 외무장관은 북한의 NPT탈퇴 후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내외 우려가 증가된 가운데 미국을 방문('93. 3. 23~30)하여 북한의 NPT체제 복귀 및 특별사찰 수용을 조건으로 ① 남북한 군사기지의 핵사찰 확대, ② 팀스피리트훈련의 축소·조정, ③ 대북한 핵위협 제거, ④ 남북 경제협력 확대, ⑤ 북한의 대미·일 관계개선 지원 등의 對北宥和策에 대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는 이와 같이 북한에게 다양한 유인책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하고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즉 북한측에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북한이 치루게 될 불이익과 핵문제 해결시 북한이 얻게 될 이익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핵무기 개발 포기를 촉구하였다.

한승주 외무장관은 1993년 3월 25일 갈리 유엔 사무총장과 오브리언 유엔 안보리 의장을 예방하고 유엔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NPT탈퇴 철회 등 북한 핵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였다.

또한 한 외무장관은 4월 21일 방콕에서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북한의 NPT탈퇴로 야기된 상황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6월 12일 중국 외교부장의 한국방문시 한·중 외무부장관은 북한의 NPT 탈퇴 효력발생 시한인 6월 12일 이전에 북한의 NPT 탈퇴를 번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同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6월 7일 한·러 외무부장관회담에서 코지레프 러시아 외무부장관은 북한의 NPT탈퇴는 용납할 수 없으며 러시아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체제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러시아의 옐친 대통령도 6월 8일 한승주 외무장관과의 면담에서 러시아는 이미 오래전부터 북한에 대한 핵기술 지원을 중단했으며 IAEA의 핵사찰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라. 북·미회담 창구 활용

우리 정부는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없다는 인식하에 대화의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북·미협상을 포함한 모든 對話窓口를 활용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단, 우리 정부는 북·미회담이 핵문제 논의에 국한되어야 하며 북·미회담의 진전은 남북대화와 연계되어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미측에 전달하였다. 이것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여건조성이라는 차원에서 북·미회담을 활용하되, 북한이 남북대화를 도외시하고 북·미대화만을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남북관계에 진전이 없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미 양국은 제1단계 북·미회담을 통해서 북한을 NPT 체제에 일단 잔류시키고 IAEA 핵사찰 지속의 근거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북한의 구체적 태도변화에 따라 대북 誘引措置를 취한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핵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기본목표를 유지하되, 북한의 NPT 체제내 잔류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한·미 양국의 기본목표에 저해가 되지 않는다면 협상시 북한의 요구사항에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伸縮的인 대응방침은 가능한 한 모든 협상수단을 활용함으로써 최악의 사태를 피하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 또한 이것은 평화적 해결 노력

이 실패했을 경우, 가능한 모든 협상수단을 강구하였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대북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조를 획득하기 위한 名分蓄積이라는 측면도 고려한 것이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825호, '93. 5. 11)의 4항(모든 회원국에 대해 문제해결 촉진 권유)에 따라 1993년 6월 2일부터 11일까지 뉴욕에서 미·북간 제1단계 고위급회담을 개최하였다. 미국과 북한은 1993년 6월 11일 공동발표문을 통해 북한이 NPT로부터의 탈퇴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고 ①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의 불사용 및 불위협 보장, ② 전면적인 안전조치의 공정한 적용을 포함한 비핵화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의 보장, 상대방 주권의 상호존중, 내정불간섭, ③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지지 등에 대해서 합의하였다.

한·미 정부는 북·미간 1단계회담을 통하여 북한의 NPT 탈퇴 효력 발생일(6월 12일)을 하루 앞두고 북한의 NPT 탈퇴 유보를 유도함으로써 한반도 긴장 고조를 방지하고, 남북대화 및 북·IAEA간 협상을 촉진시킬 수 있는 契機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NPT 체제 및 IAEA 全面的 안전조치가 북한에 계속 적용됨으로써 IAEA 사찰 재개의 근거가 확보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제1단계 북·미회담은 북한의 NPT 완전 복귀가 아니라 탈퇴유보라는 형태를 띠므로써 향후 북한이 이를 근거로 북·미간 회담을 지속하고 IAEA의 사찰내용에 대해서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미비한 측면도

있었다.

우리 정부는 북·미간 뉴욕회담 결과 북한을 일단 NPT 체제에 잔류시키고 IAEA 사찰의 계속성과 유효성을 원칙적으로 보장받은 것을 의미있는 성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에 대해 주권존중, 내정불간섭을 문서로 확인해 준 것은 북·미관계의 전환점을 이룬 것으로 판단하고 특히 핵불사용 보장을 개별국가에 대해 제공한 것은 미측이 양보한 사항이라고 이해하였다. 아울러 북한이 대내적 선전을 위해서 미국의 이러한 양보사항을 최대한 부각시킬 것이라는 점을 미국에 주지시켰다.

북한과 미국은 7월 14일부터 19일까지 제네바에서 2단계회담을 갖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언론 보도문에 합의하였다. 첫째,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을 사용하거나 이를 위협하지 않으며, 북한 핵시설의 경수로 전환을 지원하며, 핵문제 관련 현안 및 북·미간 전반적 관계개선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2개월내 다음 회담을 개최한다. 둘째, 북한은 빠른 시일내 IAEA와 핵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셋째, 남북한은 핵문제를 포함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남북회담을 빠른 시일내 개최해야 한다.

북·미간 제2단계 회담에서 북한이 핵사찰 관련 IAEA 사찰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IAEA와의 협상 용의를 표명함으로써 북한의 NPT 잔류가 既定事實化되었으며, 북·IAEA간 협상과 남북대화가 북·미회담 지속의 전제조건으로 설정됨으로써

IAEA의 대북사찰단 파견 및 남북간 특사교환 논의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런데 제3단계 북·미회담이 예정되었던 1993년 9월 하순 까지 IAEA의 대북사찰 및 남북대화에 진전이 없음에 따라 북·미 3단계회담의 개최가 불투명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미 에커만의원의 방북시 수행한 퀴노네스 미국무부 북한담당관에게 일괄타결방안에 관한 비공식문건을 전달(10. 12)함으로써 핵문제의 포괄적 해결논의가 제기되었다. 그리고 북한의 대미회담대표인 강석주 외교부 제1부부장은 공식담화를 발표('93. 11. 12)하여 북·미간 현안에 대한 「一括妥結」(a package deal)을 통하여 북한 핵문제와 북·미관계개선 문제를 해결할 것을 공식 제안하였다.

미국무부가 북한의 일괄타결 제안을 검토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包括的 해결책」에 입각할 경우 남북대화가 배제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11월 23일 개최된 한·미정상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IAEA의 대북사찰과 남북대화가 재개 되는 것을 조건으로 제3단계 북·미회담이 개최되어야 한다는 점에 합의하고, 북한 핵문제를 「철저하고 광범위한 접근」에 의해 해결하기로 하였다. 철저하고 광범위한 접근이란 핵문제 해결의 목표를 철저하고 완전한 해결 도모로 설정하고 목표달성 수단으로 모든 가능한 방안을 활용한다는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다.

이후 한·미 양국정상은 12월 7일 전화협약에서 북한 핵문

제 해결의 目標 및 原則은 확고히 견지하되, 전술적으로는 유연하게 대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북한이 5MW 원자로와 방사화학실험실을 포함한 7개 신고시설에 대한 전면사찰을 허용하고 남북대화에 응할 경우, 1994년도 팀스피리트훈련 중지 및 북·미 3단계회담을 개최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였다.

1993년 11월 말 북한에 설치된 IAEA 사찰장비의 交替期限 경과로 사찰의 계속성이 의문시되자, 북한과 미국은 6차 (11. 24, 12. 3, 12. 10, 12. 20, 12. 22, 12. 29)에 걸쳐 비공개 실무접촉을 개최하였다. 북·미간 실무접촉에서 미국은 7개 신고시설에 대한 전면사찰 및 남북대화 진전을 요구한 반면, 북한은 팀스피리트훈련 중단 및 북·미 3단계회담 개최를 요구하였다.

북·미 실무접촉에서 7개 신고시설에 대한 IAEA의 임시·일반사찰과 남북 특사교환의 성사, 팀스피리트훈련 중단 등의 문제가 중요한 안건이었던 바, 합의사항에 대한 북·미간 해석의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미 실무접촉은 대북사찰을 위한 북·IAEA간 협상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마. 남북 特使交換 협의 창구 활용

한·미 양국은 1992년 10월 제2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남북상호사찰에 진전이 없을 경우 '93 팀스피리트훈련을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1993년 1월 26일 이를 공식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여 한·미 양국의 팀스피리트훈련 재개 결정을 강력히 비난하고 핵통제공동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남북대화를 중단하였다. 북한은 11월 6일 이전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남북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를 거부하였으며 1992년 11월 개최 예정이던 각 분야별 공동위원회와 12월 21일 개최 예정이던 제9차 남북고위급회담을 무산시켰다.

이처럼 남북대화가 중단되고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한 이후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되는 등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민족의 안위와 생존에 직결되는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과 진정한 의미의 화해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없는 만큼 남북대화 추진도 불가피하게 북한의 핵문제와 결부될 수 밖에 없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 같은 입장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국제사회와의 확고한 공조체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미·일·중·러 등 관련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를 통한 대북 설득노력에 주력해 왔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조치 이전에 對話와 協商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견지에서 남북간의 회담이나 접촉을 통해 북한 핵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 왔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NPT탈퇴 시한인 6월 12일이 임박함에 따라 북·미간 고위급회담 개최 등 국제사회의 대북설득 노력과 병행하여, 민족적 차원에서 남북간에 해결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1993년 5월 20일 핵문제 협의를 위한 고위급회담 대표접촉 개최를 제의하였다.

우리 정부의 제의에 대응하여 북한은 1993년 5월 25일 남북한간 통일문제 전담 부총리급 「특사교환」을 제안하였다. 우리 정부는 남북고위급회담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핵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룬다는 기본입장을 갖고 북한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특사교환 문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특사교환」 제의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문제에 대한 협의와 「특사교환」을 위한 절차문제 협의를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을 채택한 바 있었다.

그러나 제2단계 북·미회담 개최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남북대화가 단절된 채 북한 핵문제가 북·미간에 논의됨으로써 한국이 배제될 가능성도 있음을 감안하여 우리 정부는 기본입장에 柔軟性을 보이게 되었다. 더욱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은 우리측의 남북대화 수용이 제2단계 북·미회담시 미측의 대북협상입지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에 대해 우리측의 적극적 대화 의사를 과시한다는 측면에서도 유리할 뿐만 아니라, 추후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제재방안이 논의될 경우 남북대화 등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했다는 명분축적도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우리 정부는 북한의 「특사교환」제의를 前向的으로 수용하

였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특사교환 제의를 수용함으로써 남북한은 1993년 6월 26일까지 총 11차례에 걸쳐서 남북 특사교환 문제에 대해서 전통문을 교환하였으나 실질적 성과는 없었다. 우리 정부는 핵문제의 우선 협의 해결 입장을 취한 반면, 북한은 핵문제와 함께 다른 모든 현안문제들을 包括적으로 협의 해결하자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북·미대화에 우선순위를 줌으로써 특사교환 성사에 소극적 입장을 보였으며, '93 을지훈련을 구실로 특사교환 제의를 自進撤回하였다(6. 26).

우리 정부는 1993년 7월 제2단계 북·미회담 후 IAEA의 대북사찰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1993년 8월 4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핵통제공동위 再開를 제안하였으나, 북한은 팀스피리트훈련, 국제공조체제, 제4차 「범민족대회」 不許 등을 이유로 우리측의 제안을 거부하였다(8. 9).

제2단계 북·미회담 이후 북한은 제3단계 북·미회담의 先決條件으로 제시된 남북 대화에 진전이 있음을 보이기 위해 1993년 8월 31일 남북 최고위당국자가 임명하는 「임의의 급」 특사교환을 제안하였다.

우리 정부는 1993년 9월 2일 특사교환에서 핵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협의 해결하고 그밖의 남북간 주요 현안을 다룰 것을 제안하면서 북한의 「임의의 급」 특사교환 제의를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10월 2일까지 남북간 일련의 의견교환이 있

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핵문제의 우선적 해결을 위해 북한측 주장을 대폭 수용한 특사교환을 제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전쟁연습 중지 및 국제공조체제 포기라는 前提條件을 구실로 실무접촉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북·미 북경참사관 접촉(9. 15)과 갈루치 미 국무차관보의 제3단계 북·미회담 관련 대북서한 발송(9. 20) 등을 통하여 북·IAEA간 사찰협약의 및 남북대화가 있어야 후속 북·미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는 미국측 의사가 북한에 전달된 이후 북한의 태도는 변하기 시작하였다. 1993년 10월 2일 북한이 우리측의 특사교환 제의에 호응하여 조건없는 특사교환을 제안하고 우리 정부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1993년 10월 5일 이후 10월 25일까지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접촉이 3차례 진행되었다. 실무접촉에서 남북한은 특사의 임무 및 교환시기 등에 관한 의견차이에도 불구하고 특사의 급, 수행원, 교환방식, 왕래절차, 신변안전보장 등에 대해서는 견해가 접근하였다.

그러나 유엔 총회에서 핵사찰을 촉구하는 대북결의안이 채택(11. 1)됨으로써 국제적 압력이 거세지자, 북한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할 필요를 느끼고 11월 3일로 예정된 4차 실무접촉을 무산시켰다.

—〈우리 정부의 남북대화 재개 노력, 1993년〉—

- 5. 20 고위급회담 대표접촉 제의→북한, 특사교환제 의(5. 25)
→ 북한, 일방적 무산선언(6. 26)
- 8. 4 핵통제공동위 개최제 의→북한, 특사교환 주장(8. 6)
- 9. 2 특사교환 제 의 → 북한, 「2개 요구사항」 제기
→ 우리측, 조건없는 호응 촉구 → 북한호응(10. 2)
- 3차례의 실무대표접촉(10. 5, 10. 15, 10. 25), 2차례의
수석대표 단독접촉
- 11. 3 북한, 제4차 실무대표접촉 무기연기
→우리측, 실무대표 접촉 조속한 호응 강력촉구(11. 4)

바. 對話를 통한 문제해결의 막바지 노력

1993년 12월 29일 뉴욕에서 개최된 북·미간 실무접촉에서 북한은 7개 신고시설에 대한 IAEA의 임시·일반사찰을 수용하고 이에 대하여 미국이 '94 팀스피리트훈련 중단, 제3단계 북·미고위급회담 개최 일정 등을 통보하기로 합의되었다. 이를 근거로 IAEA와 북한은 1994년 1월 7일 이후 6차례에 걸쳐서 빈에서 협상을 진행하였다. IAEA는 북한이 NPT를 탈퇴하지 않고 있는 한 IAEA 안전조치 협정 이행은 조약 당사국으로서의 법적 의무라는 점을 지적하고, 북한측의恣意的인 사찰활동 제한수용 입장은 불가하며 7개 신고시설에 대한 전면사찰을 촉구하였다. 반면 북한은 NPT 탈퇴유보의 특수상

황에서 IAEA의 완전한 사찰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북·미 회담의 여건조성 및 핵안전조치 협정의 연속성 보장을 위한 차원에서 7개 신고시설에 대한 1회 제한사찰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북·IAEA간 사찰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키고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제재 가능성이 논의됨으로써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국제여론이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한반도긴장을 부추기고 있음을 우려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한·미간에 2월 21일 IAEA 정기이사회 개최 시점이 대화를 통한 북한 핵문제해결 노력의 시한으로 합의 설정된 상황에서 한승주 외무장관은 2월 9일부터 13일까지 미국을 방문하여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을 비롯한 미정부 고위관리들과 언론관계자들을 만나 북한을 위협하기 보다는 유인하는 대응 전략을 추구하도록 촉구하였다. 우리 정부의 이러한 평화적 해결노력과 국제사회의 압력에 따라 북한은 1994년 2월 15일 7개 신고시설에 대한 IAEA의 사찰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한 외무장관은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다시 미국을 방문하여 타노프 미국무부 정무차관 등 미고위관리들과 정책협의를 갖고 남북대화와 북·미 3단계회담의 일정 및 주요 안건에

대한 협의를 하고 한·미공조체제를 공고히 하였다.

특히 2월 18일 한승주 외무장관의 클린턴 미대통령 면담시 김영삼 대통령은 “북·미간 3단계 고위급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IAEA의 핵사찰이 충실하게 실시되고 남북한 특사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의 구두친서를 클린턴 미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아울러 이 친서에는 “그동안 한·미 共助體制를 바탕으로한 대화노력에 의해서 북한이 IAEA의 사찰을 수용하는 성과를 얻었으며 앞으로 양국간 공조체제를 더욱 긴밀히 함으로써 남북대화의 진전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북한 핵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에 대해서 클린턴 대통령은 남북대화의 진전이 IAEA의 대북사찰과 함께 미·북 3단계회담의 前提條件임을 확인하였으며, 앞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간 공조체제가 더욱 공고히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김영삼 대통령은 2월 25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김일성 북한주석과의 남북 頂上會談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천명하였다. 김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핵문제 뿐아니라 남북 共存共榮, 경제협력, 통일 등 모든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포기하고 대화의 길을 선택한다면 남한의 資本·技術을 토대로 제조업, 농업, 건설, 에너지 분야에서 남북 경제공동개발을 서두를 용의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 핵문제로 인하여 모든 남북관계가 膠着狀態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핵문제 우선해결 입장을 견지한 채 핵문제를 포함한 남북관계 개선을 우리의 주체적 노력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 표명인 동시에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대화창구를 동원, 핵문제 해결의 突破口를 모색하겠다는 정부의 積極的이고 伸縮的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1994년 2월 25일 북·미간 실무접촉의 합의 사항에 따라 3월 21일로 예정된 북·미회담 이전에 특사교환을 성사시키기 위해 2월 28일 특사교환 실무접촉 재개를 북한에게 제안하였다. 그리고 남북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3월 3일 국방부 발표를 통해 “한·미 양국은 IAEA 사찰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남북간에 특사교환을 통해 핵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 진다는 전제하에 94년 팀스피리트훈련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94 팀스피리트훈련의 조건부 중단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1994년 3월 3일 4차 실무접촉이 재개되어 5차(3. 9), 6차(3. 12), 7차(3. 16), 8차(3. 19) 실무접촉이 있었으나 남북대화를 재개하려는 우리측의 노력은 북한의 남북대화 회피 입장으로 인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8차 실무접촉에 우리측은 북한측의 4개항 전제조건 요구가 부당함을 지적하고, 최고당국자에 대한 비방·중상 즉각 중지, 반정부 투쟁 선동 중지, 핵문제 우선 해결을 위한 특사교환 성사 등을

주장하였다.

〈우리 정부의 對話를 통한 해결노력, 1994년〉

- 2. 9~13, 2. 7~19 한승주 외무부장관 訪美 대북 誘引
政策 협의
- 2. 18 김영삼 대통령 親書 클린턴 미대통령전달
(韓외무 클린턴 미대통령 면담시)
- 2. 25 김영삼 대통령 남북 頂上會談 추진의사 표명
- 2. 28 특사교환 실무접촉 재개 제안
- 3. 3 '94 팀스피리트훈련의 條件附 중단 발표
- 3. 9 제5차 남북 실무접촉
- 3. 12 제6차 남북 실무접촉
- 3. 16 제7차 남북 실무접촉
- 3. 19 제8차 남북 실무접촉

第Ⅳ章 북한 核問題와 남북관계 發展展望

1. 북한 核問題의 展開方向

1993년 3월 12일 북한의 NPT 탈퇴선언 이후 북한 핵문제는 북한의 NPT 복귀와 사찰수용문제를 둘러싸고 1년 여 동안 해결이 지연되어 왔다. 특히 1, 2단계 북·미 고위급회담 이후에도 북한이 IAEA의 사찰에 성의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1993년 하반기 이후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의혹이 고조되었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압력도 가중되었다. 북한은 경제침체와 국제적 고립의 위기상황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핵문제를 고리로 하여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집착하였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미국 또한 자국이 의도했던 구도대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이 2개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에 대해서 완고한 거부 입장을 굽히지 않음에 따라 북한 핵시설에 대한 사찰문제는 중단된 임시·일반사찰 재개에 초점이 모아졌으며, 그중에서도 7개 신고시설에 대한 사찰문제로 범위가 축소되었다. 특히 7개의 신고된 시설중 방사화학실험실과 5MW 원자로 등 2개 시설에 대한 북한의 사찰수용 여부는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중요한 쟁점이었다.

미국은 國際共助體制를 가동하여 1994년 2월 21일 IAEA의 정기이사회 개최시점을 북한 핵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

결정시한으로 결정하고, 북한이 사찰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를 취할 것임을 경고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켰다. 북한 핵문제로 인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마침내 북한은 1994년 2월 15일 7개 신고시설에 대한 사찰을 수용할 것임을 IAEA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1994년 3월 3일부터 3월 14일까지 IAEA 사찰이 실시되었으나 북한이 방사화학실험실의 샘플채취를 거부함으로써 IAEA는 특별이사회를 소집(3. 21)하여 북한의 핵물질 전용여부를 검증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 同 문제를 유엔에 송부하기로 결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와 함께 남북 특사 교환을 위한 실무접촉도 8차 접촉(3. 19)으로 중단된 상태이며, 3월21일로 예정된 3단계 북·미회담도 연기되었다.

향후 북한 핵문제는 여전히 남북관계, 북·미관계 및 북·IAEA관계라는 多元的 차원에서 전개될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핵문제의 직접 당사자가 남북한과 미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국제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북한 핵문제의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 해결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진행될 북·미 고위급회담의 성패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양측은 그동안의 실무접촉에서 쌍방이 제기하는 현안들을 一括 妥結하는 문제까지도 심도있게 논의하여 왔다. 미국은 마지막 순간에 협상이 결렬됨으로써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지금까지의 노력이 수포가 되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1995년에 효력이 만료되는 NPT 체제의 연장을 위하여 북한을 NPT 체제안에 묶어 두려는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까지 NPT 탈퇴 유보라는 특수상황을 주장하면서 一括妥結을 내세워 핵사찰을 완강히 거부하는 지연전술을 구사하여 왔으나 북한의 대내외 상황에 비추어 유엔 안보리의 제재조치가 발동되는 상황으로까지 사태를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북·미협상이 실패하여 대북한 제재조치가 발동될 경우 야기될 한반도의 불안과 긴장을 우려하여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남한을 疏外시키려는 전략을 계속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미 양국간 북한 핵문제를 보는 시각에 있어서의 미묘한 차이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보다 긴밀한 정책적 調律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북한 핵문제는 북·미간의 정치적 折衷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북한의 방사화학실험실에 대한 IAEA의 추가사찰이 실시되어 1993년 2월의 제6차 임시·일반사찰 이후 의문시되어 온 북한의 핵안전조치 연속성 준수 및 핵개발의 군사적 목적으로의 전용 여부가 검증될 것이다. 사찰실시 결과 핵안

전조치의 연속성이 유지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일단 진정될 것이다. 그러나 IAEA의 추가사찰은 사실상 새로운 출발점에 불과하다. 이 사찰은 1992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던 임시사찰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同 사찰의 수준은 지난 1년의 핵사찰 중단기간 동안 북한이 플루토늄의 추출을 중지해 왔는지, 만약 추출했다면 다른 목적으로 전용했는지 등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만을 확인하는 정도가 될 것이다.

둘째, IAEA 추가사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제3단계 북·미회담이 진행되면서 임시·일반사찰의 전면적 재개문제에 관한 협의가 북·IAEA간에도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임시·일반사찰의 正常的 실시를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전면적인 사찰재개에 대한 합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시·일반사찰의 실시를 통해서도 북한의 핵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핵재처리 폐기물 저장소로 추정되는 2개 미신고시설에 대한 IAEA 특별사찰과 남북 상호핵사찰이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미회담과정에서 미국은 2개 미신고시설에 대한 사찰 수용을 촉구할 것이며, 북·IAEA간에도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미신고시설에 대한 사찰을 同 시설이 군사시설이며 IAEA의 특별사찰 요구가 不公正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완강하게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회담 및 북·IAEA간 협상과정에서 북한이 IAEA 임시·일반사찰을 수용함으로써 북한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고 하더라도, 핵문제의 실질적 해결에 이르기까지에는 많은 어려움이 수반될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핵카드는 체제존속을 위하여 최후까지 유지해야 할 협상수단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사찰의 수준, 대상, 그리고 절차문제를 놓고 미국 및 IAEA와 줄다리기를 하는 지연전술을 고수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 핵투명성 보장을 위한 북·IAEA간 사찰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한 논의는 최소한 북한이 NPT 체제에 완전히 복귀하는 순간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NPT에 완전히 복귀할 경우 북한의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과 남북 상호핵사찰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대미협상에서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고 2개 미신고시설에 대한 IAEA 특별사찰을 수용할 경우, 사찰 실현과 함께 북·미관계는 본격적인 개선을 논의하는 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體制存續을 위한 최후의 안전판으로서 핵무기 개발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핵카드의 효용성 극대화를 시도할 것이며, 미국으로서도 북한의 미사일 수출문제, 테러리즘, 인권개선문제 등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이 취해야 할 조치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은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을 요구

하면서 완만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IAEA 추가사찰 결과 핵안전조치의 연속성에 의문이 발생할 경우, 북한 핵문제는 이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북한과 IAEA, 미국 및 한국간에 攻防戰이 전개될 것이며 새로운 국면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외교적 협상을 통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끝내 거부하고 유엔 안보리가 제재조치를 발동하는 사태가 전개될 경우, 북한의 예측키 어려운 정책결정과정과 무모한 행동패턴을 감안할 때, NPT 탈퇴 유보를 철회하고 국제사회에 정면 도전하거나 이른바 「自衛的措置」의 일환으로 유엔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한반도 정세를 파국으로 몰고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요컨대 북한 핵문제는 북한의 「最大遲延·最少公開」전술 구사에 따라 임시·일반사찰의 재개, NPT 완전복귀, 2개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 등 고비마다 난항을 겪으면서 다음 단계로 이행되는 과정이 장기화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의 핵개발 계획이 북한판 NCND 정책 (핵무기의 보유여부를 是認도 否認도 하지 않는 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안보전략카드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남북관계의 發展展望

남북한은 1991년 12월 말 이후 「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 및 분야별 부속합의서 등을 채택하고 공동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합의서 실천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가 국제적 우려사안으로 대두되고 북한 핵문제 해결이 지연됨에 따라 남북관계는 더 이상의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膠着狀態에 빠지게 되었다.

특히 1993년 2월 남한에 정통성있는 문민정부가 출범함으로써 대북협상의 객관적 여건이 제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실질 내용면에서 그동안의 和解·協力基調가 사실상 와해됨으로써 1980년대 후반 이후 최악의 냉각국면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文民政府의 출범초기에는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통일전선전술의 효용성이 저하된 상황에서 남한 정부를 북한의 정치논리에 따른 대화의 상대가 될 수 없다고 인식함으로써 실질적인 남북관계 진전을 회피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이와 같이 교착상태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의 체제불안 증대와 더불어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자국의 요구를 실질적으로 충족시켜줄 수 있는 미국과의 협상에 주력한다는 대미 접근전략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남북대화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은 핵문제를 자국의 정치·군사적 안전보장, 서방세계로부터의 경제지원 획득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관건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외교적 고립의 장애물인 동시에 핵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통하여 체제안전보장 및 국제고립 탈피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북·미회담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통해 실익을 확보하는 한편 한·미관계 離間을 시도하고 있는 바, 1993년 5월 25일 남북간 특사교환제의 이후 실질적인 남북관계 진전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 북·미회담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충족 차원에서 남북대화에 임하여 왔다. 따라서 북·미접촉이 지속되는 한 북한은 특사교환 논의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미국이 북한과의 후속회담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남북관계 진전을 촉구할 경우에만 우리 정부와의 대화에 부분적인 호응을 보였다.

이러한 북한의 「主 북·미회담, 從 남북대화」戰略基調는 적어도 북한의 목표인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달성할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북한은 북·미협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형식적으로 남북대화를 진행,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은 회피하면서 전반적인 한·미관계의 弛緩 내지는 약화를 시도할 것이다. 앞으로 남북관계 진전은 북·미 고위급 회담 및 핵문제 해결과정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의 체제불안과 같은 핵문제 이외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남북화해를 위한 接點 도출에는 많은 어려움이 수반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미 직접협상을 통해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려는 북한이 IAEA와의 全面的 사찰논의에 협조적 자세를 보이지 않거나 북·미 후속회담의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남북대화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는다면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 해결에 진전을 보게 될 경우, 전반적인 남북관계는 다음과 같은 方向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첫째, IAEA 재사찰이 실시되고 북·미간 향후 일정에 관해 원칙적 합의를 하게되면 남북대화는 최소한 형식적인 차원에서나마 재개될 것이다.

둘째, 제3단계 북·미회담이 시작되고, 회담의 진전에 따라 남북대화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남북대화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비핵화 공동선언」의 실현을 위한 남북 상호핵사찰문제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 이와 관련 논의를 가급적 미루는 지연전술을 구사할 것이다. 오히려 북한은 「전민족대단결」 문제, 정상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전제조건 등을 전면에 부각시키는 통일전선전술 차원의 정치선전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남북대화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내용이 결여된 채, 외형적으로만 실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북한이 「전민족대단결」 문제 논의를 핵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북한은 북·미회담의 진전상황과 連繫하여 남북대화의 진전을 형식적으로 충족시키고, 우리 정부가 상호핵사찰을 중시하고 있음을 감안, 핵통제공동위원회 재개를 대남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가시적인 대가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 정부의 핵통제공동위원회 재개 촉구에 호응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핵통제공동위원회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사찰의 원칙, 대상, 방법 등에 있어서 남북간의 현격한 입장차이로 인하여 사찰규정이 쉽게 합의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남북간 상호핵사찰에 관심이 없는 까닭에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IAEA의 대북사찰 결과에 따라 남북상호핵사찰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 바, 이 경우 남북간 핵문제 논의의 의미있는 진전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을 경우 북·미 양국관계가 개선단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남북간 經協을 포함한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남북관계 진전의 速度와 幅을 체제유지에 위협이 되지 않는 제한적 범위내에서 극히 選擇적으로 조절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남북한이 본격적인 교류·협력단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요컨대 현 단계에서 북한은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① 북한체제

의 開放에 대한 근원적인 불안감, ② 문민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통일전선전술의 효용성에 대한 기대감 상실, ③ 북·미 협상을 통한 包括的 문제해결에 대한 幻想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적어도 당분간은 남북대화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다. 더욱이 핵개발에 대한 북한의 집착으로 인하여 북한 핵에 대한 투명성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장기화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관계 진전은 우리 정부의 결단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 핵의 투명성 제고와 남북관계의 진전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伸縮的이며 融通性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최소한 북한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될 경우, 남북경협을 비롯한 남북현안의 논의와 해결을 위해 대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향후 북한이 핵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한 의지를 보일 경우, 남북관계는 비로소 「기본합의서」 이행을 통한 화해 협력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될 것이다.

I. 북한 核관련 주요 文件

빈 면

I. 북한 핵관련 주요 文件

1. IAEA 정기이사회 결의
(’93.2.25)..... 125
2. 북한의 NPT탈퇴서 전문
 - 가. UN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 앞 서한
(’93.3.12) 129
 - 나. NPT가맹국 외무장관 앞 전문
(’93.3.12) 131
3. 북한의 NPT탈퇴 선언에 대한 한국 정부성명
(’93.3.12)..... 133
4. IAEA 특별이사회 결의
(’93.3.18)..... 135
5. IAEA 특별이사회 결의
(’93.4.1) 137
6. 북한 외교부, 핵문제 UN안보리 상정 비난성명 발표
(’93.4.5) 141
7. UN안보리 의장 성명
(’93.4.8) 146
8. 북한 원자력공업부장, 북한핵문제의 UN안보리 상정결의
규탄 담화 발표
(’93.4.8) 149
9. 북한 외교부 대변인, 북한 핵문제에 대한 UN안보리 의장
성명(4. 8)관련 담화 발표
(’93.4.10)..... 157

10. UN안보리 결의(제825호)
(’93.5.11) 160
11. 박길연 주UN 북한대사, 결의안 채택을 위한 UN안보리
전체회의에서 연설
(’93.5.12) 167
12. UN안보리결의 채택에 대한 한국 외무부 대변인 성명
(’93.5.12) 171
13. 북한 외교부 대변인, UN안보리 결의채택 규탄성명 발표
(’93.5.12) 172
14. 한국의 남북고위급회담 대표접촉 제의
(’93.5.20) 174
15. 북한의 남북특사 교환 제의
(’93.5.25) 175
16. 북·미 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장 강석주, New York
도착성명
(’93.5.31) 178
17. 제1단계 북·미 고위급접촉 공동발표문
(’93.6.11) 179
18. 북·미 접촉 결과 발표에 대한 한국 외무부 대변인 성명
(’93.6.12) 183
19. 강석주 외교부 제1부부장, 조·미 회담 관련 담화 발표
(’93.6.18) 184
20. 한국의 특사교환 수용 대북 전통문
(’93.6.22) 186
21. 북한의 특사교환 제안 철회 담화문
(’93.6.26) 187

22. 북·미 제2단계회담(제네바) 미국측 언론발표문
(’93.7.19) 191
23. 강석주, 제2단계 북·미 고위급회담 관련 기자 회견
(’93.7.19) 195
2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의 보도문
(’93.7.19) 198
25. 한국 외무부 대변인 성명
(’93.7.20) 200
26. IAEA, 대북한 핵사찰 관련 공식발표
(’93.8.13) 201
27. 북한의 「임의의 급」특사교환 제의담화문
(’93.8.31) 203
28. 한국의 북측 특사교환 제의 수용담화문
(’93.9.2)..... 207
29. 북한 외교부, 제3단계 북·미회담 관련 담화문
(’93.9.22) 208
30. 북한 외교부 대변인, NPT탈퇴 경고 담화발표
(’93.9.22) 210
31. IAEA 제37차 정기총회 결의
(’93.10.1) 211
32. 북한,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 개최 제의
(’93.10.2) 215
33. 한국 국회, 북한의 IAEA 핵사찰 수락 촉구 결의문
(’93.10.25)..... 217
34. IAEA보고에 대한 제48차 UN총회 결의
(’93.11.1) 219

35. UN총회의 대북 결의에 대한 한국 외무부 대변인 논평
(’93.11.2) 222
36. 북·미 뉴욕접촉 합의문
(’94.2.25) 223
37. 조·미회담 북측단장 외교부 강석주 제1부부장의 담화
(’94.3.4)..... 225
38. 최고위급 특사교환 실무접촉 관련 담화 발표
(’94.3.15) 232
39. 조선 외교부대변인 성명
(’94.3.21) 238
40. 조선 외교부대변인 성명
(’94.3.28) 243
41. UN안보리 의장 성명
(’94.3.31) 246

1. IAEA 정기이사회 결의

(’93.2.25)

이사회는

- (a) IAEA·북한간 안전조치협정 이행에 관한 사무총장의 보고와 북한대표의 발언을 고려하였으며,
 - (b) 동 안전조치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감안하고(INFCIRC/403),
 - (c) 북한측 신고내용과 임시사찰 및 샘플분석을 통한 사무국 조사결과간의 중대한 상이점이 광범위한 협의에도 불구하고 규명되지 않고 있음을 심각히 유의하며,
 - (d) 사무총장이 ’93. 2. 9 동 안전조치협정의 특별사찰에 관한 제73(B) 및 제77조에 의거 특정 추가정보 및 2개의 장소에 대한 접근허용을 북한측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실에 유의하며,
 - (e) ’92. 12. 이사회가 북한이 자발적으로 체결한 동 안전조치협정의 전면적이고 효과적인 이행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또한 북한측에 대해 완전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음을 상기하며,
1. 동 안전조치협정의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이행을 요청하고.

2. 북한이 제출한 최초보고서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완전성을 평가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3. 이와관련 사무총장이 이미 취한 조치를 강력히 지지하고,
4. 북한에게 IAEA가 동 안전조치협정하의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IAEA에 전면적 협조를 제공할 것과, 사무총장의 '93. 2. 9자 추가정보 및 2개 추가장소에 대한 접근요청에 대해 긍정적이고 지체없이 응할것을 요청하고,
5. 상이점 해소와 INFCIRC /403 준수여부 검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4항에 언급된 추가정보 및 2개 추가장소에 대한 접근이 필수적이고 긴급하다고 결정하고,
6. 사무총장에게 본 결의안을 북한에 전달할 것과 본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북한과 계속 협의하고 본안을 본결의안이 채택된 날로부터 한달이내에 본안관련 재소집될 추가이사회를 통해 재보고할 것을 요청하고,
7. 본안을 계속 심의할 것과, 동 안전조치협정 및 IAEA 헌장에 규정된 적절한 추가조치를 고려할 것을 결정한다.

The Board of Governors

1. Calls for full and prompt implementation of the Safeguards Agreement betwee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
2. Stresses that it is essential to verify the correctness and assess the completenes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s initial report :
3. Supports the actions already taken by the Director General in this regard :
4. Calls upon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rgently to extend full cooperation to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to enable the Agency fully to discharge its responsibilities under the Safeguards Agreement and to respond positively and without delay to the Director General's request of February 9, 1993 for access to additional information and two additional sites :
5. Decides that access to additional information and two additional sites referred to in paragraph 4, is essential and urgent in order to resolve differences and to ensure verification of compliance INFCIRC /403 :

6. Requests the Director General to transmit this resolut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continue dialogue wit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ith a view toward urgent resolution of the issues above, and to report again to the Board of Governors on the matter not later than one month from the date of adoption of this resolution at a further meeting of the Board of Governors to be convened for this purpose :
7. Decides to remain seized of the matter, and to consider further measures as provided for in the Safeguards Agreement between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2. 북한의 NPT탈퇴서 전문

가. UN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앞 서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의장,

나는 위임에 의하여 나라의 최고이익을 위협하는 특수한 사태가 우리나라에 조성된 것과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핵무기전파방지조약 제10조 1항에 따라 1993년 3월 12일 이 조약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게 알리는 바입니다.

미국은 남조선과 함께 우리 공화국을 위협하는 핵전쟁연습인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였으며 국제원자력기구 서기국의 일부계층과 일부 성원국들을 부추켜 1993년 2월 25일 국제원자력기구 관리이사회 회의에서 기구규약과 담보협정, 그리고 우리와의 합의를 어기고 핵활동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우리의 군사대상들에 대한 개방을 강요하는 부당한 결의를 채택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를 무장해제시키고 우리 사회주의제도를 압살하려는 노골적인 강권행위로서 우리나라의 최고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을 허용한다면 그것은 우리나라가 한 초대국의 희생물이 되는 것은 물론 다른 비핵국가들에 대한 핵위협과 내정간섭을 합법화 해주는 전례로 될 것입니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과 국제원자력기구의 부당한 행위가 제거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하는 조치를 취한 데 대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를 표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장 김 영 남

1993년 3월 12일 평양

나. NPT가맹국 외무장관 앞 전문

핵무기전파방지조약 가맹국 외무장관들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나라의 최고이익을 위협하는 비상 상황이 조성됨에 따라 핵무기전파방지조약 제10조 제1항에 따라 1993년 3월 12일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했음을 공식 통보하고자 합니다.

미국은 남조선과 함께 우리를 위협하는 핵전쟁연습인 팀스 피리트 합동군사훈련을 재개했으며 국제원자력기구 서기국과 일부 성원국을 부추켜 지난 2월 25일 기구규약, 담보협정,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맺은 합의에 반하여, 핵활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우리의 군사기지를 개방토록 요구하는 부당한 결의를 국제원자력기구 관리이사회가 채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무장해제하고 사회주의체제를 압살함으로써 우리의 최고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공공연한 강권행위입니다.

만약 그런 행동이 용인된다면 우리 나라가 한 초대국의 희생양이 되는것은 말할 것도 없고 비핵국가들에 대한 핵 위협과 내부분쟁에 대한 개입을 정당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선례가 될 뿐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과 국제원자력기구의 부당한 행동이 철회되었음이 인정될 때까지 귀국은

우리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 탈퇴결정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가져줄 것으로 나는 확신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장 김 영 남

1993년 3월 12일 평양

3. 북한의 NPT탈퇴 선언에 대한 한국 정부성명

(’93.3.12)

북한이 핵무기비확산조약에서 탈퇴하겠다고 한 3. 12성명은 범세계적인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이미 남북간에 채택된 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그리고 부속합의서 등 모든 남북 합의사항의 신뢰성을 상실시키는 중대한 행위로 간주한다.

북한이 누구도 설득할 수 없는 부당한 구실로 핵무기비확산조약을 탈퇴하겠다고 하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개발에 대한 의혹을 더욱 짙게 하는 것이다.

북한의 비핵보유국으로서의 의무 포기는 한반도의 안정뿐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며, 이에 따른 남북간의 긴장고조와 국제적 제재에 대하여는 북한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이제라도 핵무기비확산조약을 탈퇴하겠다는 성명을 즉각 철회하고 국제원자력기구가 지난 2. 25 이사회 결의를 통해 요청한 핵사찰을 허용하고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에 따른 남북상호사찰에도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비확산조약의 탈퇴선언 이후 야기할지도 모를 어떤 도발적 위협에 대해서도 즉각적이고도 단

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음을 경고한다.

4. IAEA 특별이사회 결의

(’93.3.18)

이사회는

- (a) 1992년 5월 체결된 안전조치협정 이행을 위해 IAEA에 추가정보 및 2개의 추가장소에 대해 IAEA의 접근을 허용하도록 북한에 촉구한 2. 25자 이사회 결의를 상기하고,
- (b) 지금까지 북한의 긍정적 반응이 없음을 유감으로 여기며,
- (c) 최근의 북한의 핵무기비확산조약 탈퇴선언 및 동 탈퇴가 발효될 경우 북한의 안전조치협정에 미치는 의미 (implications)에 유의하고,
- (d) 북한의 NPT탈퇴선언이 IAEA가 북한이 제출한 핵물질에 대한 최초보고서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명백히 하려는 시점에 나왔다는 데 대해 우려하며,
 1. 사무총장의 보고서(GOV /INF683)에 보고된 대로 이사회의 결의이행을 위한 사무국의 노력을 승인한다.
 2. 사무총장과 사무국에 대한 이사회의 전폭적인 신뢰와 북한의 안전조치협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이행하기 위해 사무총장과 사무국이 취한 조치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3. IAEA·북한간 안전조치협정(INFCIRC/403)은 여전히 유효하고, 북한이 IAEA가 상이점을 해소하기 위한 필요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조치협정의 이행 검증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긴급한 것임을 확신한다.
4. 사무총장에게 모든 적절한 접촉을 취해 대화와 노력을 계속해 줄 것과, 1993년 3월 31일 개최될 이사회에 2.25이사회 결의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대해 계속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

5. IAEA 특별이사회 결의

(’93.4.1)

이사회는

- (a) ’93. 2. 25자(GOV/2636) 및 ’93. 3. 18자 이사회 결의 (GON/2638)를 상기하고,
- (b) 3월말까지 북한으로부터 긍정적 반응이 없음에 주목하며,
- (c) 사무총장의 보고(GOV/2643) 및 특히, 북한이 IAEA와의 안전조치협정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동 보고 12항의 사무총장의 결론을 고려하고,
- (d) 동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1. 사무총장의 보고에 의거, 북한이 IAEA와의 안전조치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다.
 2. 또한 동 협정 19조에 의거, IAEA가 안전조치협정 조건에 따라 안전조치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의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 장치로의 비전용 여부를 검증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
 3. 북한 ’93. 2. 9 사무총장이 북한에 대해 요구한대로 특정 추가정보 및 2개 장소에 대한 지체없는 접근 허용을 포함한 협정불이행을 즉시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4. 헌장 12조 C항 및 동 협정 19조의 규정에 의거, 북한의 협정 불이행과 IAEA가 안전조치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의 비전용 여부를 검증할 수 없음을 동 기구의 모든 회원국과 유엔안보리 및 총회에 보고하도록 결정한다.
5. 사무총장에게 이사회를 대표하여 상기 4항에 언급된 보고를 요청한다.
6. 사무총장에게 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노력을 계속하고, 어떤 중요한 진전상황에 대해서 이사회에 계속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
7. 이 문제를(IAEA에서) 계속 다루기로 결정한다.

RESOLUTION

- (a) Recalling its Resolution (GOV/2636) of 25 February 1993 and Resolution(GOV/2639) of 18 March 1993,
- (b) Noting that there has been no positive response from the DPRK by the end of March,
- (c) Having considered the Report of the Director General (GOV/2643) and, in particular, the conclusions in paragraph 12, that the DPRK is in non-compliance with the terms of its Safeguards Agreement with the Agency and,
- (d) Taking account of the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at Agreement,
 - 1. Finds, based on the Report of the Director General, that the DPRK is in non-compliance with its obligations under its Safeguards Agreement with the Agency;
 - 2. Further finds, pursuant to Article 19 of the Agreement, that the Agency is not able to verify that there has been no diversion of nuclear material required to be safeguarded under the terms

of the Safeguards Agreement to nuclear weapons or other nuclear explosive devices;

3. Calls upon the DPRK to remedy forthwith its non-compliance, including by granting without further delay access to specific additional information and to the DPRK of 9 February 1993;
4. Decides, as required Article XII, C. of the Statute an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 of the Agreement, to report the DPRK's non-compliance and the Agency's inability to verify non-diversion of nuclear material required to be safeguarded, to all Members of the Agency and to the Security Council and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5. Requests the Director General to make the report referred to in paragraph 4 above on behalf of the Board;
6. Requests the Director General to continue his efforts dialogue to implement fully the Agreement and to keep the Board informed of any significant developments;
7. Decides to remain seized of the matter.

6. 북한 외교부, 핵문제 UN안보리 상정 비난 성명 발표

(’93.4.5)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교부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나라 대표들이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1일 국제원자력기구 관리이사회 회의에서 끝내 우리의 이른바 핵문제를 유엔에 넘길데 대한 결의를 강압적으로 채택한 한 것과 관련해서 이를 규탄하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교부 성명.

최근 미국과 우리의 적대세력들은 핵사찰 문제를 걸고 우리를 위협하여 압력을 가해오다가 이제와서는 유엔의 힘을 빌어 공공연히 우리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고 그 무슨 제재까지 하려 하고 있다. 지난 4월 1일 국제원자력기구 관리이사회 회의에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나라 대표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우리의 이른바 핵문제를 유엔에 넘길데 대한 결의를 강압적으로 채택하였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을 어떻게 하나 고립 압살해 보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노골적인 적대행위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 관리이사회 회의의 이 결의가 우리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 된다고 인정하면서 이를 단호히 배격하고 단죄한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우리의 핵문제를 유엔에 끌고갈 그 어떤 명분도 없다.

국제원자력기구 관리이사회의는 우리가 군사대상에 대한 사찰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우리에게 담보협정 불이행이라는 딱지를 붙이였다. 이것은 언어도단이다. 국제원자력기구 서기국이 사찰을 강요하는 2개 대상은 핵활동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우리의 군사대상이며 따라서 담보협정에 의한 사찰 대상도 아니다. 더욱이 기구 서기국은 미국의 위성정보자료를 공개하고 그에 기초하여 우리의 군사대상이 핵관련 시설이라고 하면서 사찰하겠다고 하였다. 정찰위성이나 고공정찰기로 남의 나라를 정탐한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자주권에 대한 유린이며 정보자료를 국제원자력기구를 통하여 재확인하려 하는 것은 더욱 파렴치한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 서기국이 이런 날조된 자료를 가지고 사찰하려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군사대상들을 개방하고 우리를 무장해제시키려는 미국의 음흉한 목적실현에 가담하는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 서기국의 일부 계층과 일부 성원국들은 협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정당한 발기와 인내성있는 노력을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우리 문제를 유엔에 끌고 갔다. 우리 공화국은 담보협정을 체결한 첫날부터 그에 따르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왔을 뿐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 서기국과 사찰 성원들이 자기의 임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와 협조를 다하였다. 우리는 핵무기 전파방지조약 탈퇴를 선포한 다음에도 담보협정에 따라 자기의 의무를 이행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밝혔으며 특히 이번 회의를 앞둔 시기에도 기구와 우리의 의무이행과 관련한 협상을 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협상제의를 유감스럽게도 거부

당하였다. 이것은 매우 비정상적이며 전례없는 일이다.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 서기국의 이러한 행위들은 기구의 규약과 규정, 담보협정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우리가 군사대상에 대한 사찰을 반대하는 것은 결코 담보협정 불이행으로 될 수 없다. 우리는 담보협정에 따르는 비정기 사찰을 언제한번 반대한 적도 없다. 국제원자력기구 총국장을 비롯한 기구 서기국의 일부 계층들과 일부 성원국들이 성급하게 우리의 핵문제를 유엔에 끌고 갈데 대한 결의채택 높음을 벌인 것은 이미 짜놓은 미국의 각본에 따른 것으로서 이것은 우리의 사회주의를 말살하기 위한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자는 것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서기국의 일부 계층들은 미국의 조종밑에 이처럼 처음부터 우리에게 담보협정 불이행이라는 딱지를 붙이기 위하여 기구 규약과 담보협정을 체계적으로 악용하여 왔다. 현실은 우리나라가 핵무기 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한 것이 얼마나 정당하였는가 하는 것을 더욱 뚜렷이 실증하여 주고 있다.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 서기국의 일부 계층들이 지금까지 한 언행들에서는 국제적 정의나 공정성, 객관성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현실적으로 남아프리카 핵무기를 개발 생산하였고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는 그것을 문제시하거나 유엔에 제소한 적도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있지도 않은 핵의혹이요 불일치요 하는 요란한 소동을 벌이면서 우리의 핵문제를 유엔에 넘기었다. 우리는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이러한 양면적인 이중기준 적용을 더욱 엄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원자력기구의 규약

과 담보협정이 만들어 진지 수십년이지났으나 규약과 협정들이 지금처럼 짓밟히고 농락당한 적은 없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담보협정을 불이행한 것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담보협정이행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여 온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 서기국의 일부 계층들이다. 유엔에 제소되고 국제공동체의 제재를 받아야할 대상은 바로 핵무기 전파방지조약의 기탁국으로서 조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비핵국에 대한 핵위협을 끊임없이 증대시키고 있는 미국이다. 우리의 이른바 핵문제는 본질상 우리나라와 국제원자력기구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미국 사이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유엔 무대에서 논의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와 미국 사이에(협정)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 모든 사실은 우리에게 그 무슨 불이행 딱지를 붙여 우리의 핵문제를 유엔 무대에 끌고 가려는 시도는 그 어떤 타당성도 법적 근거도 없는 비법적인 행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유엔의 우리의 핵문제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 서기국의 일부 계층들이 규약과 담보협정을 악용한데 대하여서와 미국이 우리에게 대한 핵위협을 증대시키고 있는데 대하여 응당한 주목을 돌리고 그를 저지시키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여야할 것이다. 원래 유엔은 1950년대 미국에 의하여 자기의 이름이 도용되어 우리의 교전일방으로 되고 조선인민 앞에 엄중한 죄를 지었으며 우리나라와의 비정상적인 과거를 아직 청산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만일 냉전이 종식된 오늘에 와서 또다시 유엔이 지난날의 전철을 밟게된다면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후과를 초래하게 되고 유엔역사에 새로운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다.

우리 공화국의 반핵 평화정책과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담보협정에 따라는 의무를 끝까지 이행하며 그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도 시종일관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그 어느 대국의 의사를 대변하여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고 그 어떤 집단적 제재를 하려 한다면 우리는 대응한 효과적인 자위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평화와 정의를 귀중히 여기는 모든 나라 정부와 인민들이 조선반도에서 핵위협을 제거하고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정당한 위업에 지지와 연대성을 보내주리라고 확신한다. 1993년 4월 5일 평양. 이와같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교부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7. UN안전보장이사회의장 성명

(’93.4.8)

안보리이사국들은 한스 블릭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구두 및 서면보고에 유의한다.

안보리이사국들은 또한 핵무기비확산조약(NPT) 10조를 언급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장의 서한이 첨부된 3.12자 북한대표의 서한을 유의한다.

안보리이사국들은 현사태를 우려한다.

안보리이사국들은 핵무기비확산조약의 중요성과 또한 동 조약가입국들의 조약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안보리이사국들은 또한 남북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

안보리이사국들은 동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환영하며, 특히 IAEA가 북한과 협의를 속하고, 북한 핵검증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기 위해 건설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을 권장한다.

안보리이사국들은 동 사태를 계속 주시해 나가기로 한다.

NOTE BY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After consultations of the Council held on 8 April 1993,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made the following statement to the media on behalf of the members of the Council:

The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take note of the oral statement on 6 April 1993 and the written report of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Director-General Dr. Hans Blix(S/25556). The members of the Council also take note of the letter of 12 March 1993 of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to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S/25405), enclosing one from his Foreign Minister with reference to Article X of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The members of the Council are concerned at the situation which has arisen. In this connection they reaffirm the importance of the NPT and of the parties adhering to it.

The members of the Council also express their support

for the North-South Joint Declaration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members of the Council welcome all efforts aimed at resolving this situation and in particular encourage the IAEA to continue its consultations with the DPRK and its constructive endeavours for a proper settlement of the nuclear verification issue in the DPRK.

The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will continue to follow the situation.

8. 북한 원자력공업부장, UN안보리 상정결의 규탄 담화 발표

(’93.4.8)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원자력공업부장은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이 4월 1일 국제원자력기구 관리이사회 회의에서 우리의 이른바 핵문제를 유엔에 넘길데 대한 부당한 결의를 강압적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하여 8일 이를 규탄하는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원자력공업부장 담화.

지난 4월 1일 국제원자력기구 관리이사회 회의에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에게 담보협정 불이행 딱지를 붙여 우리의 이른바 핵문제를 유엔에 넘길데 대한 부당한 결의를 강압적으로 채택하였다. 이것은 우리의 핵문제를 국제화하고 우리에게 집단적 제재를 가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압살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새로운 단계의 노골적인 적대행위이다. 나는 국제원자력기구 관리이사회 회의의 이 결의가 담보협정과 기구 규약에 대한 난폭한 위반으로 우리의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 된다고 인정하면서 이를 단호히 배격한다. 우리는 지난해 4월 10일 담보협정이 발표된 후 협정 제62조에 따라 핵물질에 대한 초기 보고서의 정확성과 완전성 검증을 위해 지난 2월초까지 6차례에 걸쳐 기구의 비정 기사찰을 받았다. 우리는 이 기간에 기사찰단에 수백번의 회계 및 운영 기록문건들을 제공하고 그들이 필요한 장소에

연 80여개의 봉인을 하고 6개의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편의를 도모하여 주었으며 90여개의 실효를 딸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였다. 한편 우리는 협정 제42조에 따라 핵시설과 관련되는 설계통보질문서를 국제원자력기구에 제출하였으며 협정 제48조에 따라 그것을 확인받는 사업도 비정기 사찰기간에 진행하였다. 그 결과 담보협정 이행을 위한 부속세칙의 총칙 부분이 지난해 7월10일에 발효되었고 3개의 시설부록이 합의 되었으며 나머지 시설부록들은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다. 사찰단은 이 기간 신고의 완전성 검토를 위해 이미 폐기되었거나 건설중에 있는 핵시설들을 비롯하여 필요한 모든 핵관련 시설들과 장소들을 참관하였으며 또 그와 관련된 문건들을 확인하였다. 여기에는 우리의 성의로 보여준 18년전의 문건들, 연구논문 및 실험일지들도 포함되어 있다. 지난기간 우리가 높은 협조정신을 발휘하여 초기 보고서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인받기 위한 충분한 조건을 사찰단에 제공한데 대하여서는 국제원자력기구 총국장 자신도 기구관리이사회 회의를 비롯한 여러기회에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어 담보협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온 우리에게 불이행 딱지를 붙여 우리 문제를 유엔에 끌고 가는 부당한 결의가 국제원자력기구 관리이사회 회의에서 채택되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벌어졌는가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해명되어야 할 모략적인 흑막관계가 있다. 지난해 11월초부터 국제원자력기구 서기국의 일부 계층들은 있지도 않는 불일치 문제를 갑자기 들고 나오기 시작하였다. 기구가 말하는 불일치는 본질에 있어서 기구의 착오 때문에 생긴 계

산 방법과 해석 평가에서의 착오이지 결코 우리의 신고와 기구의 사찰결과 사이의 차이가 아니다. 지난 1월27일부터 2월6일까지 진행된 제6차 사찰기간에 있는 협상에서 사찰단이 이 차이의 원인을 인정함으로써 불일치 문제는 해명되었고 기구의 사찰결과를 재검토하고 다음 사찰기간에 토의를 계속할데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찰단이 2월8일 원에 도착하여 사찰결과를 재검토하기도 전에 기구 총국장은 다음날인 2월9일 우리에게 특별사찰을 공식제기함으로써 순조롭게 진척되어 오던 비정기 사찰진행과 불일치 해결을 위한 협상의 길을 막아버렸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정황에서도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되었다. 우리는 지난 2월 관리이사회 회의 직전에 우리 대표단을 원에 파견하여 기구 총국장의 참가밑에 기구 전문가들과의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원칙적 불일치 문제를 재차 해명되었고 총국장 자신도 기구측에서도 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찰결과를 재검토하겠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에 열린 2월 관리이사회 회의에서 기구 총국장은 철면피하게도 기구가 지난 7개월간 많은 노력과 시간을 소비하였지만 불일치를 해명하지 못했다고 사실과 맞지 않는 보고를 제출하였다. 기구 서기국의 일부 계층들은 관리이사회 회의에서 자기들이 고집하는 불일치를 두개 대상과 역지로 결부시키면서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우리의 교전일방인 미국이 날조하여 제공한 정탐위성 사진까지 환등으로 비추는 전례없는 행동도 서슴치 않았다. 이른바 위성사진들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사실과 전혀 맞지 않으며 그에 대한 설명 역시 언어도단이었다. 기구 서기국의 일부

계층들은 사찰과정에 군사대상과 해당 핵시설 대상 사이에 서로 아무런 연관관계도 없다는 것이 사찰단에 의해 현지에서 직접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대상 주변에 대한 전호들이 핵시설과 연결된 명백한 증거로 된다고 생억지를 부리면서 관리이사들을 납득시키려고 시도하였다. 미 중앙정보국이 제공한 우리의 시험 원자력발전소와 이들이 이른바 핵뇌관 폭발 시험장이라고 하는 위성사진도 완전히 날조된 것이었다. 기구 사찰단은 발전소에는 냉각탑이 두개가 아니고 한개라는 것, 우리의 핵활동의 평화적 성격을 보여주는 송전시설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는 것, 그리고 강기슭에 있는 물웅덩이들은 핵뇌관 폭발시험을 한 흔적이 아니라는 것 등을 직접 현지에서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 서기국의 일부 계층들은 날조된 정탐위성 사진에 기초하여 우리의 두개 일반 군사대상을 핵관련 시설로 묘사하면서 우리가 마치도 핵관련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찰을 허용하지 않는 듯이 여론을 퍼뜨렸다.

우리는 지난 9월 기구 총국장이 핵활동과 관련이 없는 2개 대상들을 3차 사찰차로 현지에 와있던 기구 사찰단의 일부 성원국들에게 방문 형식으로 보여줄 것을 불시에 요구하였을 때 그것이 기구 총국장의 첫 제의라는 것을 고려하여 선의를 가지고 보여주었으며 무리하게 재차 접근을 요구했을 때도 거절하지 않았다. 기구 사찰원들은 이때 방사선을 측정할 수 있는 선양계와 대상방위 판정을 위한 약도까지 이용하였으나 그 대상들이 핵활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기구의 이러한 방문이 지난 해 7월 22일

기구 총국장의 참가하에 진행된 미 국회 합동 청문회에서 우리에게 대한 기습사찰, 특별사찰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데 덧붙여 제기되었다는 것과 특히 최근 국제원자력기구 서기국의 일부 계층들이 만일 2개의 군사대상에 핵물질이 없다면 그것은 어딘가 다른 장소에 있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에 주목을 돌리지 않은 수 없었다. 우리는 이 과정에 비로소 국제원자력기구 서기국의 일부 계층들이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미국의 조종에 따라 불일치를 만들어 내고 날조된 정탐위성 사진에 기초하여 기습방문을 진행하였으며 총국장의 특별사찰 제기와 그와 관련된 관리이사회 회의의 부당한 결의도 사전에 짜놓은 각본에 따른 것이었다는 것을 더욱 명백히 알게되었다. 담보협정 제73조 2항과 제77조에 의하면 특별사찰은 해명할 수 없는 불일치가 사찰과정에 나타났을때와 사찰받는 나라가 제공한 통보에 기초해서만 촉발되게 되어있다. 우리에게 대한 총국장의 특별사찰 제의와 그와 관련하여 관리이사회 회의에서 채택된 지난 2월25일, 3월18일, 4월1일 결의들은 있지도 않는 불일치와 날조된 정보자료에 기초하여 조작된 것으로써 그것은 담보협정에 대한 난폭한 위반으로 된다. 그것은 또한 기구 공무원들이 자기의 직능 수행에서 중립과 공정성 그리고 비밀을 준수할데 대하여 규제한 규약 제7조 9항에 대한 도전으로 된다. 바로 이러한 불법 무법한 강도적 행위를 배격한 것이 기구가 우리에게 담보협정 불이행이라는 딱지를 붙인 첫번째 이유라는 것이다. 우리에게 불이행 딱지를 붙인 다른 또하나의 이유라는 것은 핵무기 전파방지 조약 탈퇴선언이 발표된 이후 효력을 내기까지의 3개월 기간에 우리가 기

구의 비정기 사찰단을 접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흑백을 전도한 강도적인 논리이다. 우리는 지난 기간 협정이행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비정기 사찰과 협상을 통해 해결하자는 입장을 일관하게 주장하여왔다. 그러나 기구 서기국의 일부 계층들은 협정이행에서 제기된 문제를 비정기 사찰과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없다고 하면서 부당한 특별사찰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그들 자신이 비정기 사찰과 협상의 길을 막아버렸다. 우리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속에서도 3개월간의 담보협정 의무를 이행하려는 입장에서부터 지난 3월 30일 이와 관련한 협상을 진행할 것을 국제원자력기구측에 명백히 제기하였다.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 서기국의 일부 계층들이 제의를 외면하고 우리 문제를 유엔에 넘기는 부당한 결의를 채택케 하는 것으로 대답해 나섰다.

이것은 담보협정 이행에서 서로 협조할 데 대한 문제를 규제한 협정 제3조와 협정이행에서 해당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할데 대한 규약 제3조에 대한 위반으로서 우리가 3개월기간 내에 담보협정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하는 기본장본인은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일부 계층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그러므로 국제원자력기구 서기국이 핵물질이 핵무기나 기타 핵폭발 장치들에 전환되지 않았다는 것을 검증할 수 없다고 결론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으며 따라서 우리에게 불이행 딱지를 붙여 유엔에 넘기는 결의를 채택해 한 것은 담보협정에 대한 엄중한 위반행위로 된다. 이 모든 사실은 우리에게 불이행 딱지를 붙여 우리의 핵문제를 유엔

무대에 끌고 갈 그 어떤 과학 기술적 근거도 법률적 근거도 없다는 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 있다. 담보협정을 불이행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미국의 조종을 받는 국제원자력기구 서기국의 일부 계층들이다. 국제원자력기구 서기국의 일부 계층들을 기구의 규약과 담보협정을 난폭하게 위반하고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미국의 정치 군사적 음모에 편승한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유엔은 우리의 핵문제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 아니라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 서기국의 일부 계층들이 기구 규약과 담보협정을 악용하기 위해 공모결탁한데 대하여 응당한 문제시 하여야 한다. 그 누구도 국제원자력기구의 규약과 담보협정의 해당조항들을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위반할 권리가 없다. 만일 사찰에 제3국이 제공한 정보 자료의 이용이 허용된다면 기구의 현사찰 제도의 고유한 성격과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야 할 것이다. 사찰에 제3국의 정보 자료 이용이 허용되면 기구는 위성정탐 수단을 가진 몇개 나라들에 정치적 도구로 전락될 것이다. 이것은 기구의 담보체계의 전망과 관련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서 깊은 우려를 자아낸다. 국제원자력기구 서기국의 일부 계층들은 특별사찰 강요를 통해 우리의 모든 일반 군사기지들을 하나 하나 개방하려는 미국의 반공화국 모략책동에 복무하는 하수인으로 전락될 것이 아니라 담보협정과 기구 규약 준수에서 엄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우리가 국제원자력기구 총국장의 특별사찰 요청과 그와 관련하여 국제원자력기구 관리이사회 회의들에서 채택된 부당한 결의들을 단호히 배격한 것은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는 동시에 특정 나라의 전횡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핵에네르기

를 평화적 목적에 이용하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담보협정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며 그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과 시종일관하다. 나는 이 기회에 평화와 정의를 귀중히 여기는 세계 모든 나라 정부들과 국제기구들, 평화애호 인민들이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압살하려는 미국의 그 추종세력들의 음모를 저지파탄시키고 조선반도에서 핵위협을 제거하며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정당한 위업에 지지와 연대성을 보내주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 이와 같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원자력공업부장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9. 북한 외교부 대변인, 핵문제에 대한 UN안보리 의장 성명 관련 담화 발표

(’93.4.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비공식협상끝에 우리의 이른바 핵문제와 관련한 의장성명이 발표된 것과 관련해서 어제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교부 대변인 담화.

지난 9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비공식 협상에 우리의 이른바 핵문제와 관련한 의장성명이 발표되었다. 성명은 우리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 탈퇴와 관련하여 조성된 사태에 우려를 표시하고 이 사태를 타개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국제원자력기구가 우리와 협상을 계속하는 것을 장려한다고 하였다. 이번 비공식협상과정이 보여주는 것처럼 원래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있지도 않는 우리의 핵문제와 같은 것을 논의하는 마당이 아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세계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에 대하여 토의되는 것이 기본이다. 우리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 탈퇴나 담보협정 이행에서 제기된 문제는 자주권에 속한 문제로써 세계평화를 파괴하거나 다른 나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될 수 없다. 만일 우리의 핵개발의혹이 세계평화와 안전에 위협으로 된다면 다른 나라들이 공공연히 실재하고 있는 핵무기는 몇백 배 더 엄중한 위협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유엔안전보장이사

회가 세계평화와 안전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핵문제를 취급하
 려 한다면 응당 세계에서 핵무기를 제일먼저 개발하고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미국부터 문제시하여야 한다. 더욱이 냉전
 이 종식된 오늘에 와서 이미 중단했던 핵전쟁연습인 팀스피리
 트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여 조선반도의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
 키고 기구규약과 조약, 담보협정까지 악용하여 비핵국가의 자
 주권과 안전을 유린하는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 서기국의 일
 부계층들의 입법행위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도외시될 수
 있겠는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적 정의와 공정성의 원
 칩에서 벗어나서는 안된다. 우리는 이미 핵위협을 당하고 자
 주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이며 그 가해자는 다름아닌 미국과 그
 의 조종을 받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일부 계층들이다. 만일 유
 엔안전보장이사회가 가해자가 서방대국들과 그에 추종세력들
 이라고 하여 가만히 있고 피해자가 작은 나라라고 하여 깔보
 고 업신여긴다면 앞으로 3세계의 작은 나라들이 현존 유엔안
 전보장이사회를 더는 신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미 수차
 천명한 바와 같이 핵담보협정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려
 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여기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입장도 시종일관하다. 우리는 지난
 3월 30일에도 국제원자력기구에 담보협정 이행과 관련한 협상
 을 거듭 제기한바 있다. 우리는 이제라도 국제원자력기구가
 우리가 담보협정을 불이행한다고 날조해낸 부당한 결의를 철
 회하고 우리의 협상제의에 응해 나오기를 바란다. 우리에게 대
 한 핵위협을 증대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서 탈퇴하지 않을 수 없게 한 장본인은 미국이고 국제원자력

기구가 담보협정을 악용하도록 조종한 것도 미국인 것만큼 이 문제의 중국적 해결여부는 조·미 협상에 달려 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우리의 핵문제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일은 미국으로 하여금 우리와의 협상으로 나섬으로써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데 실천적 대책을 취하는 것이다. 우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현사태의 요구와 국제적 정의의 원칙에 맞게 올바르게 처신함으로써 조선문제 처리에서 오점을 남겼던 과거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와 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대변인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10.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제825호)

(’93.5.11)

안전보장이사회는

- (a) 북한정부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의사를 안보리 의장에게 전달한 ’93년 3월 12일자 북한외교부장 서한과 이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보고를 유감으로 생각하며,
- (b) 안보리 이사국들의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환영하고 특히, IAEA에 대하여 북한 핵사찰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협의를 계속하도록 권고한 ’93년 4월 8일자 안보리의장 성명을 상기하며,
- (c) 핵무기비확산조약의 절대적 중요성에 유의하며,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하고 핵무기비확산조약을 실행하는데 있어 IAEA 안전조치의 필수적 역할을 강조하며, 핵확산금지 노력의 진전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중대한 공헌을 재확인하며,
- (d) 신뢰할 수 있고 효과적인 상호사찰체제를 만들고 핵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공약 등을 포함한 남북한의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상기하며,
- (e) 북한이 NPT 당사국이며 이 조약이 요구하는 전면적인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주목하며,

- (f) 북한이 IAEA와 체결한 안전조치협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IAEA·북한간 안전조치협정 내용에 따라 제한되어야 할 핵물질의 핵무기 또는 여타의 폭발장치로의 유용여부를 IAEA가 검증할 수 없다는 '93년 4월 1일자 IAEA 이사회 결의내용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 (g) 북한이 밝힌 NPT탈퇴 동기가 조약상 근본적 문제와 관련된 특수한 상황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러시아 연방과 영국, 미국 등 조약 기탁국들의 4월1일자 성명을 유의하며,
- (h) 무엇보다도 안전조치협정의 이행에 관해 북한과 협의를 갖자고 권고·촉구한 IAEA 사무총장앞 4.22자 북한의 답신을 유의하며, 아울러 북한이 이 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용의를 표명한 사실에도 유의하며,
- (i) 최근 북한과 IAEA간 협력관계 개선조짐과, 북한과 다른 회원국들간의 접촉전망을 환영하며,
1. 북한에 대해 '93년 3월 12일자 서한에 담긴 NPT 탈퇴 선언을 재고하고 NPT에 대한 이행의무를 재확인할 것을 요청한다.
 2. 또한 북한에 대해 조약상 핵무기 확산방지 의무를 준수할 것과 IAEA 이사회의 '93년 2월 25일자 결의안에 명시된대로 IAEA와 안전조치 협정을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

3. IAEA 사무총장에 대해 IAEA 이사회가 지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협의를 계속할 것과, 적절한 시기에 그 결과를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4. 모든 회원국들에 대해 북한이 이 결의에 긍정적으로 호응하도록 권고할 것을 촉구하며 또한 문제해결을 촉진시켜 나갈 것을 권유한다.
5. 안보리는 이 문제에 계속 관여하면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하기로 결정한다.

SECURITY COUNCIL RESOLUTION(825)

The Security Council.

Having considered with concern the letter from the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 dated 12 March 1993 addressed to the President of the Council (S/25405) concerning the inten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DPRK to withdraw from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the Treaty) and the report of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2-25556).

Recalling the Security Council Presidential Statement of 8 April 1993 (S/25562) in which the members of the Council welcome all efforts aimed at resolving this situation and, in particular, encourage the IAEA to continue its consultations with the DPRK for proper settlement of the nuclear verification issue in the DPRK,

Noting in that context the critical importance of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the Treaty), and emphasizing the integral role of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safeguard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Treaty and in ensuring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and reaffirming the crucial contribution which progress in non-proliferation can make to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Recalling the Joint Declaration by the DPRK and the Republic of Korea (ROK) on the Denuclearis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ich includes establishment of a credible and effective bilateral inspection regime and a pledge not to possess nuclear reprocessing and uranium enrichment facilities,

Noting that the DPRK is party to the Treaty and has concluded a fullscope Safeguards Agreement as required by that Treaty,

Having also considered with regret the IAEA Board of Governors' findings contained in its resolution of 1 April 1993 that the DPRK is in non-compliance with its obligations under the IAEA-DPRK Safeguards Agreement (INFCIRC/403), and that the IAEA is not able to verify that there has been no diversion of nuclear materials required to be safeguarded under the terms of the IAEA-DPRK Safeguards Agreement to nuclear weapons or other nuclear explosive devices.

Noting the 1 April 1993 statement by the Russian Federatio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the depositaries of the Treaty(S/25515) which questions whether the DPRK's stated reasons for withdrawing from the Treaty constitute extraordinary events relating to the subject-matter of the Treaty,

Noting the letter of reply by the DPRK to the Director-General of IAEA dated 22 April 1993 which, *inter alia*, encourages and urges the Director General to hold consultations with the DPRK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Safeguard Agreement, noting also that the DPRK has expressed its willingness to seek negotiated solution to this issue,

Welcoming recent signs of improved cooperation between the DPRK and the IAEA and the prospect of contacts between the DPRK and other Member states,

1. Calls upon the DPRK to reconsider the announcement contained in the letter of 12 March 1993 and thus to reaffirm its commitment to the Treaty;
2. Further calls upon the DPRK to honor its non-proliferation obligations under the Treaty and comply with its Safeguards Agreement with the IAEA as specified by the IAEA Board of Governors resolu-

tion of 25 February 1993;

3. Requests the Director-General of the IAEA to continue to consult with the DPRK with a view to resolving the issues which are the subject of the Board of Governors findings and to report to the Security Council on the efforts in due time;
4. Urges all Member States to encourage the DPRK to respond positively to this resolution and encourages them to facilitate a solution;
5. Decides to remain seized of the matter and to consider further Security Council action if necessary.

11. UN 주재 북한 상임대표부 박길연대표, 연설

(’93.5.12)

11일 뉴욕에서 진행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상임대표부 박길연 대표가 연설했습니다. 그는 연설에서 우리의 핵무기 전파방지조약 탈퇴와 핵담보 협정 이행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세계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거나 다른 나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회의에 배포된 미국의 결의안은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압살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된 결의안이 성원국들의 자주권을 존중할 데 대한 유엔헌장과 국제원자력 기구 규약에 위반되는 부당한 것이므로 이를 단호히 배격한다. 우리가 핵무기 전파방지 조약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기본요인은 미국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원자력 기구의 일부 계층들을 조종하여 우리 나라의 군사대상들을 개방하여 무장 해제시키려고 책동하는데 있다. 미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핵무기 전파방지 조약에 가입하고 담보 협정을 이행하는 긍정적인 조치와는 어긋나게 남조선에 전개한 핵무기를 그대로 두고 보존하면서 우리에게 대한 핵위협을 강화하였다. 우리 나라는 여섯차례의 비정기 사찰을 통하여 우리의 핵활동이 평화적 목적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국제원자력 기구의 일부 계층들은 불일치 문

제를 조작하고 그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책동하였다. 미국은 우리의 군사 대상들을 개방할 대책밑에 기구의 모략적인 정보 자료와 위성 사진 자료를 넘겨주면서 기구의 일부 계층들을 사촉하여 우리에게 담보협정 불이행이라는 감투를 씌우는 결의를 채택하고 이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넘기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담보협정 불이행 장본인이 우리가 아니라 미국과 그의 조종에 따라 움직이는 국제원자력기구 서기국의 일부 계층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일부 계층들은 중립성과 공정성 비밀을 준수할 데 대한 기구 규약을 무시하고 우리에게 대한 사찰결과를 미국을 비롯한 적대국가들에 체계적으로 넘겨주었다. 미국은 우리 나라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처음부터 조종하였다. 미국은 1992년 7월 22일 미국회 하원 합동청문회에 참가한 기구 총국장에게 우리에게 대한 특별사찰, 기습사찰을 강요하였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요구하는 특별사찰을 거부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응당한 권리이며 이것이 담보협정 불이행으로 될 수 없다. 기구 규약에는 기구가 의심하는 대상들을 사찰원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기구가 요구하는 의심대상 사찰문제는 미국이 제공한 정보자료, 위성자료를 가지고 우리의 군사대상들을 개방하려는 책동이다. 유엔은 우리의 담보협정 불이행 문제를 토의할 법적 기술적 근거가 없다. 국제원자력기구 관리이사회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는 미국의 조종에 따라 사태를 왜곡한 부당한 결의이다. 우리 나라가 핵무기 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한 것은 우리의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이고 조약에 따라 지닌 권리이다. 따라서 우리의 핵문제는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에서 토의할 문제가 아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서기국의 일부 계층들은 미국에 추종하여 이중기준을 적용하여 비핵국가인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심히 유린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 대한 이중기준 적용은 그 부당성에 있어서 극치를 이루고 있다. 우리가 조약에 가입한 것은 조약의 이념과 목적에 따라 남조선으로부터 미국의 핵무기를 철수시키고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는 미국의 조약 위반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않고 묵인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핵대국화를 다그치고 있는 일본과 미국의 핵우산 밑에서 핵무기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남조선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 서기국의 일부 계층들이 이중기준 적용행위를 허용한다면 핵대국이 비핵국가들의 운명을 마음대로 우롱하고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도 서슴없이 감행하게 될 것이다. 오늘은 우리 나라에 이중기준을 적용하여 자주권을 위협하고 있지만 내일은 다른 비핵국가가 그 대상으로 될 수 있다. 핵문제를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우리와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협상을 하는데 원칙적 합의가 이룩되고 조·미 고위급 협상이 일정에 오른 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결의를 채택하는 것은 분쟁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할데 대한 유엔헌장과 국제원자력기구 규약 그리고 국제법의 요구를 무시하고 핵대국의 강권을 묵인하는 행위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우리의 군사대상들에 대한 사찰을 강요하는 미국의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되고 그것은 조선반도의 정

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아시아와 나아가서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핵대국의 강권을 묵인하게 되면 비핵국가들, 제3세계 나라들이 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더는 신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자기의 사명에 맞게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려 한다면 비핵국가인 우리 나라에 대하여 압력을 가하기 전에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하고 그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공정성의 원칙을 무시하고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는 부당한 결의를 채택한다면 우리는 그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우리와 미국 사이의 협상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그것은 미국이 남조선에 핵무기를 전개하므로써 조선반도의 핵문제가 선행되었고 미국이 우리에게 대한 핵개발 의혹을 조성하였으므로 우리의 핵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교전 일방인 미국의 요구로 상대방에 대한 압력이나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반대로 긴장을 격화시키면 종당에는 무력충돌까지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강권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결의의 채택은 조선반도의 정세를 격화시키고 예측할 수 없는 사태까지 빚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우리 나라 상임대표가 연설했습니다.

12. UN안보리결의 채택에 대한 한국 외무부 대변인 성명

(’93.5.12)

우리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5.11 결의를 통해 북한에 대해 NPT 탈퇴결정을 철회하고 IAEA의 특별사찰을 수락토록 촉구한 것을 매우 적절한 조치로 평가한다.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유엔안보리의 금번 결의는 북한 핵문제의 심각성과 긴급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와 단호한 문제해결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우리는 북한이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의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금번 결의에 호응해 올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정부는 앞으로 핵무기의 비확산을 추구하는 모든 국가들과 함께 북한 핵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한다.

13. 북한 외교부 대변인, UN안보리 결의채택 규탄 성명 발표

(’93.5.12)

국제조약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는 것은 대개 나라의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이며 우리의 조약 탈퇴는 나라의 최고이익이 엄중히 위협당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사태하에 조약에 따르는 권리를 행사하여 취한 자위적 조치임. 따라서 우리의 조약탈퇴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논의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며 더욱이 유엔은 그 어떤 결의를 채택할 아무런 법률적 명분도 타당성도 없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우리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으로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 된다고 인정하면서 이를 단호히 배격함.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지금 행동은 1950년대에 우리 문제가 비법적으로 논의되고 있던 때를 방불케하고 있으며 만일 이번 결의가 1950년대 결의의 전철을 밟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사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임. 우리와 국제원자력기구 사이의 협상이 성숙되어 기구 사찰단이 들어오고 조·미협상도 진척될 수 있는 시점에서 그것을 가로막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이며 모순되는 행동임.

조선반도 핵문제는 강권과 압력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협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과 노력을 나약성의 표시로 오산하지 말아야 함.

만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번 결의에 기초하여 우리에게 대한 그 무슨 제재와 같은 부당한 압력책동을 끝끝내 강행한다면 우리에게 대한 선전포고와 같은 것으로 밖에 보지 않을 수 없으며, 미국은 이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것임.

14. 황인성 국무총리, 핵문제 해결을 위한 고위급회담
대표접촉(5.27, 평화의 집)제의 대북서한 발송

(’93.5.20)

우리 정부는 민족복리와 공존공영을 기조로하여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금세기내 통일민족 국가를 건설할 것을 천명한 바 있음.

그럼에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정신과는 달리 핵문제가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로 되고 있음.

핵문제는 그 중요성과 긴박성으로 인하여 한시도 해결을 늦출 수 없으며 국제기구들의 조치이전에 남북간에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임.

대표접촉에서는 핵문제 해결 및 이에 수반되는 기타 현안 문제들이 토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긍정적 호응을 기대함.

※ 우리측 대표 : 송영대 통일원 차관

이승곤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

15. 북한 강성산 총리, 남한 총리에게 편지

(’93.5.25)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무원 강성산 총리는 북과 남 사이에 쌍방 최고당국자들이 임명하는 특사들을 교환할 것을 제의해서 오늘 (5.25) 남조선 국무총리 황인성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 반세기동안 분열의 고통을 겪고있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화합과 통일보다 더 중대하고 절박한 과제는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기간 북남 사이에는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발기들이 없은 것도 아니며 그 실현을 위한 노력이 적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1970년대 이후에만 하여도 북남 당국 사이에는 각이한 급과 분야에서 여러번 대화와 접촉이 진행 되었으며 그 과정에 우리 겨레에게 희망을 주는 훌륭한 결실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와 귀측의 이 전당국자들 사이에는 화합과 통일을 위한 길에서 실천적으로 의의있는 전진을 이룩하지 못하였으며 대화와 접촉은 결국 군부독재의 유지에 이용되고 공전과 결렬이라는 실망스러운 결과밖에 가져오지 못하였습니다. 북과 남은 이제 더이상 지난날의 곡절많은 대화의 길을 걸어서는 안되며 새출발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우리나라에 조성된 긴박한 정세는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나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첫자리에 놓고 새로운 혁신적인 안목에서 서로 화합하고 단합하여 함께 민족의 출로를 열어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는 이와같은 입장에서부터 출발하여 최근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환적인 조치로써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귀측에서도 새정권의 출범과 함께 과거와는 달리 민족의 이익을 중시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 조건에서 북과 남의 당국이 다같이 민족적 입장에 선다면 능히 나라의 통일과 통일도상에 가로놓인 일련의 중대한 문제들을 순조롭게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말로 북과 남이 민족의 밝은 앞날을 함께 열어나갈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때에 즈음하여 나는 민족앞에 누적되어 있는 중대사들을 포괄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획기적인 제안으로써 쌍방최고당국자들이 임명하는 특사들을 교환할 것을 정중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특사들은 나라의 통일문제 해결을 위하여 쌍방 정상들이 만나는 문제와 북남 사이의 현안문제들을 타결하기 위한 최고위급의 중대한 뜻을 전달하는 임무를 맡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사들은 부여된 임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각기 통일사업을 전담하여 보는 부총리급으로 하며 그들의 교환시기는 빠를수록 좋을 것입니다. 특사의 교환은 북남 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고 북과 남의 민족적 화합과 통일을 위한 길에서 실질적인 전진을 가져올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권위있고 책임적인 특사 교환이 이루어지면 귀측이 제안한 바 있는 북남 고위급회담 대표접촉에서 협의하려는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특사들의 교환을 위해서는 쌍방 실무자들의 접촉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무접촉은 부부

장(차관)급을 책임자로 하여 2명으로 하되 5월 31일 오전 10시 판문점 우리측지역 통일각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나는 귀측이 우리의 최고위급 특사교환 제의에 긍정적인 회답을 보내주리라는 기대를 표명합니다. 이와같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무원 강성산 총리가 북과 남 사이에 쌍방 최고당국자들이 임명하는 특사들을 교환할 것을 제의해서 오늘 (5.25) 남조선 국무총리 황인성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16. 북·미 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장 강석주, New York 도착성명

(’93.5.31)

우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은 미합중국 대표단과의 회담에 참가하기 위하여 방금 뉴욕에 도착하였다.

알려진 바와같이 핵문제를 비롯한 조·미 사이의 현안문제들을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자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시종일관한 입장이다.

이번 조·미 회담은 그 성격으로 보아 금후 두나라 관계는 물론 국제정세 발전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이 회담에 대한 세계의 관심과 기대에 맞게 책임적으로 행동해야 할 시점에 있다.

쌍방은 평등한 입장에서 진지하고 성의있게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우리 대표단은 회담이 내용있고 결실있는 회담으로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미국은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탄생시킨 당사자로서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려는 성실한 입장을 가지고 회담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17. 북·미 제1단계 회담(뉴욕) 공동발표문

(’93.6.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1993년 6월 2일부터 11일까지 뉴욕에서 정부급 회담을 개최하였다.

회담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강석주 외교부 제1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과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Robert L. Gallucci 국무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양측은 회담에서 한반도의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책적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양측은 핵확산방지 목적에 부합되게 한반도비핵화에 관한 남북한 공동선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다음과 같은 원칙들에 합의하였다.

- ①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의 불사용 및 불위협 보장
- ② 전면적인 핵안전조치의 공정한 적용을 포함한, 비핵화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의 보장과 상대방 주권의 상호존중 및 내정 불간섭
- ③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지지

이러한 원칙들에 따라서 양국 정부는 평등하고 공정한 기

초위에서 대화를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동안 핵무기비확산조약으로부터의 탈퇴효력을 일방적으로 정지시키기로 결정하였다.

JOINT STATE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New York, June 11, 1993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eld government-level talks in New York from the 2nd through the 11th of June, 1993. Present at the talks were the delega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eaded by First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Kang Sok Ju and the delega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led by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Robert L. Gallucci, both representing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At the talks, both sides discussed policy matters with a view to a fundamental solution of the nuclear issue on the Korean Peninsula. Both sides expressed support for the North-South Joint Declaration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interest of nuclear non-proliferation goals.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agreed to Principles of :

--assurances against the threat and use of force, in-

cluding nuclear weapons :

--peace and security in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including impartial application of fullscope safeguards, mutual respect for each other's sovereignty, and non-interference in each other's internal affairs : and

--support for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Korea.

In this context, the two Governments have agreed to continue dialogue on an equal and unprejudiced basis. In this respect,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s decided unilaterally to suspend as long as it considers necessary the effectuation of its withdrawal from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18. 북·미 접촉 결과 발표에 대한 한국 외무부 대변인 성명

(’93.6.12)

우리는 북한 핵무기 비확산조약(NPT) 탈퇴를 보유하고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에 응해 온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함.

우리는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이 NPT 체약국으로서 IAEA와의 안전조치협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남북 상호사찰실현에 적극 호응해와야 할 것임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함.

정부로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핵의혹을 조속히 해소함으로써 한반도의 평가와 안전은 물론 세계평가에 이바지 하고 나아가 남북한간의 화해·협력관계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게 되기를 기대하는 바임.

19. 강석주, 조·미 회담 관련 담화 발표

(’93.6.18)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미 합중국 사이의 정부급 회담 우리측 단장인 외교부 강석주 제1 부부장은 어제 (6.18)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교부 강석주 제1 부부장의 담화.

얼마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사이에 공동성명이 발표된 것과 관련하여 지금 국제적으로 커다란 반향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조선문제의 공정한 해결이 세계의 응당한 관심사로 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조·미 쌍방은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문제를 위주로하여 토의하였다.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어디까지나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서 발단된 것이기 때문에 두 나라 사이의 적대관계라는 근원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우리는 회담에서 핵문제가 해결되자면 무엇보다도 조·미 사이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서로 상대방의 제도와 자주권을 인정하며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등 근본적인 정책조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주장하였다. 그 결과 조·미 사이에 호상 존중과 불가침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이 채택되게 되었다. 이것은 40여년간의 조·미 적대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서 조선반도의 비핵화 실현에는 물론 아시아와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인정한다. 우리는 회담에서 핵무기 전파방지조약에 복귀하지 않고도 우리나라와 주변환경의 실정에 맞게 핵전파방지를 담보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도 가장 합리적인 핵문제 해결방도를 제시하였다. 국제원자력기구의 불공정성이 명백해진 조건에서 우리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는 이와같은 방도를 내놓았으며 미국측도 그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우리의 비핵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회담에서 미국측이 우리의 핵무기 전파방지조약 복귀 문제를 제기한데 대하여 우리는 그것이 논의할 대상으로 조차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우리가 이번에 핵무기 전파방지조약 탈퇴 효력발생을 임시 연기한 것은 조·미 공동성명에 담겨진 정책공약들을 이행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계속 토의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조선반도에서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시종일관한 의지의 현실적 표현이다. 우리가 핵무기 전파방지조약 탈퇴 효력연장기간 담보협정에 따르는 사찰을 받는 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의 불공정성이 명백해진 조건에서 매우 신중한 문제로 제기된다. 이로부터 조·미 쌍방은 앞으로의 회담에서 우리에게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불공정성문제를 토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차후 진행될 조·미 회담에서는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도를 토의하게 될 것이다. 나는 조·미 쌍방이 이미 공동성명을 통하여 내외에 선언한 원칙들에 준하여 평등하고 공정한 기초위에서 성의있는 협상을 계속함으로써 긍정적인 결과를 이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같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외교부 강석주 제1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20. 황인성 남북고위급회담 우리측 수석대표, 실무대표접촉 관련 대북전통문

(’93.6.22)

우리측도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복리를 위해 귀측이 제한한 특사교환을 실현시키자는 입장인 만큼 실무대표접촉에서 핵 문제에 관한 기초적 협의와 함께 특사교환을 위한 절차문제 협의도 병행할 수 있으리라 봄.

나는 귀측이 제시한 6월 24일 오전 10시 판문점 귀측지역 『통일각』에 송영대, 이승곤 2명의 대표와 4명의 수행원을 내 보낼 것임.

21. 강성산총리, 특사교환제안 무산 관련 담화발표

(’93.6.26)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강성산동지는 우리의 인내성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측의 부당한 태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북남최고위급의 특사교환제안이 실현될 수 없게 된 데 대하여 26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강성산동지의 담화’

우리측이 지난 5월 25일에 북남최고위급의 특사교환제안을 내놓은 때로부터 한달이 지나갔다.

우리의 북남특사교환제안은 조성된 정세하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한 돌파구를 열어놓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협상방식이다. 내외여론은 우리의 특사교환제안이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에 제시된 새로운 환경과 남조선에서 새정권이 나온 현실을 고려하고 있는 획기적이며 전환적인 대책으로 된다고 높이 평가하면서 이에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을 표시하였다.

우리는 그 사이 민족의 중대사를 북과 남의 단합된 힘과 쌍방 최고위급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빨리 해결하려는 숭고한 염원에서 특사교환방문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한시도 멈추지 않고 6차례에 걸친 편지와 전화통지문을 통하여 남측에 우리측 제안의 깊은 의의와 정당성을 진지하게 해

설하고 그에 대한 긍정적인 호응을 보일 것을 거듭 촉구하였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은 처음부터 지난날의 그릇된 대결 관념에 집착하여 완화와 평화, 통일로 확실하게 이어질 우리의 특사교환제안에 북남고위급회담 실무대표접촉을 대치시키고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절차토의안에 핵문제토의를 대치시키면서 북남 사이에 새로운 대화의 길을 마련하는데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였다.

우리는 남측이 비록 우리의 특사교환제안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대하여도 인내력을 발휘하여 그들의 이해와 부족한 점은 이해를 돕고 민족자주적 원칙에서 탈선한 주장은 민족적 입장에 서도록 일깨워주었으며 우리의 특사교환제안이 실현되면 핵문제부터 해결할 용의가 있다는 아량도 표시하면서 어떻게 하나 온민족이 기대하는 특사교환방문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였다.

참으로 우리의 제의와 그 실현을 위한 노력은 북남관계에서 일찍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진지하고도 성의있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측은 이러저러한 조건을 부쳐 우리의 특사교환제의를 외면하여오다가 마침내 지난 6월 22일 전화통지문에서 실무급이 마주앉아 핵문제에 관한 기초적 협의를 할 것을 다시 고집함으로써 사실상 우리의 특사교환제의를 전면거부하는 입장을 명백히 하였다. 남측은 우리의 특사교환제의에 대하여 총리의 전화통지문을 통하여 부정하였을 뿐

아니라 최고당국자 자신이 직접 여러기회에 그러한 태도를 공개적으로 표시해 나갔다.

얼마전에 남조선집권자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있지도 않은 우리의 핵문제를 걸고 핵무기를 가진 상대와는 악수할 수 없다고 한데 이어 군사분계선일대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 나타나 또다시 우리를 걸고 평화는 힘이 있어야 유지된다는니,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는니 하면서 대결과 전쟁열을 고취해 나선 것은 사실상 우리와 만나고 싶다고 한 말도 스스로 뒤집어 엮고 우리의 특사교환 제의도 거부하는 언동이었다.

더욱이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요즈음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의 거듭되는 평화협상제의에 도발적인 '93 을지 민관합동군사훈련으로 대답해 나서고 있는 사실이다.

'93 을지훈련은 손을 잡으려는 동족에게 칼을 내미는 행동이며 대화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남조선당국자는 동족끼리 화해하고 단합할 의사가 없기때문에 우리를 적대시하는 국가보안법도 없애지 않겠다고 하고 동족끼리 해결할 나라의 비핵화문제도 외세의 힘을 빌어 풀어보려고 밖으로 들고 다니고 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이러한 불순한 행동을 조·미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에 더욱 우심하게 벌이면서 특사교환제안을 유산시키는데까지 나아가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한달동안에 걸친 인내성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측의 부당한 태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특사교환제안이 실현될 수 없게 된 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특사교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후회하는 때가 있게 될 것이다.

남측은 이번에 우리의 특사교환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북남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언동을 거듭함으로써 문민과 개혁이니, 상봉과 대화니 하는 말도 진실성이 없는 공담에 지나지 않으며 그들도 선임자들과 같이 외세의존정책과 대결, 분열주의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이 협상을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 대결자세로 대응하면서 나라의 정세를 격화시키고 있는데 대하여 지켜볼 것이다.

앞으로 조선반도에서 우리민족의 이익에 배치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이 지게 될 것이다.

22. 북·미 제2단계 회담(제네바)미국측 언론발표문

(’93.7.19)

〈미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이 합의한 원문〉

미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은 1993년 7월 14일부터 19일까지 제네바에서 핵문제 해결을 위한 2단계 회담을 진행하였다.

양측은 1993년 6월 11일자 미·북한 공동발표문의 원칙들을 재확인하였다. 미합중국측은 특히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의 불사용 및 불위협보장 원칙에 대한 자기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현존 흑연감속원자로와 그와 관련된 핵시설들을 경수로로 교체하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미합중국은 핵문제의 최종적 해결의 일환으로써, 또한 경수로 설비와 관련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경수로 도입을 지지하며, 이를 위한 방도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함께 모색할 용의를 표명한다.

양측은 IAEA 핵안전조치의 완전하고도 공정한 적용이 강력한 국제핵비확산체제를 이룩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에 대하여 견해를 같이 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안전조치와 관련한 현안문제와 기타 문제들에 관한

IAEA와의 협상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시작할 용의를 표명한다.

또한 미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문제를 포함하여 쌍방의 문제들에 대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남북회담을 시작할 용의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미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경수로 도입과 관련한 기술적 문제들을 포함하여 핵문제 해결과 관련된 현안문제들을 토의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전반적 관계개선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2개월 안으로 다음 회담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1993년 7월 19일 제 네 바

제2단계 미-북한 고위급접촉(제네바) 쌍방 보도문

U.S., PRESS STATEMENT

(TEXT AGREED BY THE USA AND THE DPRK DELEGATIONS)

The delegation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 met from July 14-19, 1993, in Geneva for a second round of talks on resolving the nuclear issue.

Both sides reaffirmed the principles of the June 11, 1993 joint USA /DPRK statement.

For its part, the USA specifically reaffirmed its commitment to the principles on assurances against the threat and use of force, including nuclear weapons.

Both sides recognize the desirability of the DPRK's intention to replace its graphite moderated reactors and associated nuclear facilities with light water moderated reactors. As part of a final resolution of the nuclear issues, and on the premise that a solution related to the provision of light water moderated reactors(LWRs) is achievable, the USA is prepared to support the in-

roduction of LWRs and to explore with the DPRK ways in which LWRs could be obtained.

Both sides agreed that full and impartial application of IAEA safeguards is essential to accomplish a strong international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On this basis, the DPRK is prepared to begin consultations with the IAEA on outstanding safeguards and other issues as soon as possible.

The USA and the DPRK also reaffirmed the importanc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North-South Joint Declaration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DPRK reaffirms that it remains prepared to begin the North-South talks, as soon as possible, on bilateral issues, including the nuclear issue.

The USA and the DPRK have agreed to meet again in the next two months to discuss outstanding matters related to resolving the nuclear issue, including technical questions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LWRs, and lay the basis for improving overall relations between the DPRK and the USA.

23. 강석주, 조·미 회담관련 기자회견

(’93.7.1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회담이 끝난 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대표단 단장인 외교부 강석주 제 1 부부장이 어제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중요 서방나라 기자들과 남조선 기자들이 참가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먼저 우리나라 대표단 단장이 발언했습니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과 국제원자력기구의 불공정성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 조·미 회담이 이미 지난 6월 뉴욕에서 진행된 데 대해서 상기시키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조·미 회담이 제네바에서 진지하게 진행되어왔다. 조·미 회담 결과는 전진적이며 생산적이었다고 본다. 쌍방은 이번 회담에서 우선 1993년 6월 11일부 조·미 공동성명의 원칙들을 재확인 하였다. 미합중국 측은 특히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무력으로 위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하는 원칙에 대한 자기 공약을 재확인 하였다. 또한 쌍방은 핵문제의 종국적 해결의 일환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존 흑연감속원자로와 그와 연관된 핵시설들을 경수로로 교체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제기한 문제이며 우리의 제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비핵평화정책의 투명성을 더욱 확증하는 것이며 우리에게 핵무기 개발 의향이 전혀 없

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 것이다. 미국측은 경수로의 해결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우리의 이 방안을 적극 지지 환영하였으며 그 제공방도를 우리와 함께 찾을 용의를 확인하였다. 쌍방은 또한 국제원자력기구의 담보를 완전히 그리고 공정하게 적용하는 것이 국제적인 핵전과방지 체계를 강화하는데서 필수적이라는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담보와 관련한 현안문제와 기타문제들에 대한 협상을 국제원자력기구와 진행할데 대한 용의를 표시하였다. 기구와의 협상을 진행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시종일관하다. 우리는 기구와의 협상을 한번도 반대한 적이 없다. 문제는 기구가 외부세력의 영향에 의하여 공정성을 지키지 않은데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기구와의 협상에서 불공정성 문제를 기본으로 토의하자는 것이다.

회담에서 쌍방은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공동선언을 이행하려는 시종일관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세력의 영향으로 아직 진전이 없다. 우리는 비핵화 공동선언을 빨리 이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당면하여 우리가 제기한 정상회담 개최 준비를 위한 특사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이번 회담에서도 이 입장을 주장하였다. 특사접촉에서는 핵문제를 포함하여 쌍방사이의 문제가 포괄적으로 토의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회담에서 그 실현에 미국이 합류할 것을 주장하였다. 미국측은 북남대화에 대한 우리의 주장에 이해를 표시하고 특사교환을 위한 북남대화를 장려할데 대하여 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경수로 도입과 관련한 기술적 문제들과 핵문제 해결과 관련한 현안문제들, 조·미 사이의 전반적 관계개선의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하여 2개월 안으로 다음 회담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3단계 회담을 위해 쌍방이 다같이 자기가 할바를 할데 대한 문제가 강조되었다. 미국은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고 우리에게 대한 핵불사용 확정담보를 제공하는 등 우리에게 대한 핵위협을 중지할데 대한 실천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음단계 회담실현에 중요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복귀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대한 핵위협이 완전히 제거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불공정성 문제가 해결되는 정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께서는 북남 최고위급 회담을 진행할데 대하여 오래전부터 제기하시었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 실현을 위하여 부총리급 특사를 교환할데 대하여 제기했으며 특사교환을 통하여 북남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이행문제를 비롯하여 현안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합의한데 기초하여 북남 최고위급 회담을 실현할 것을 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앞으로의 전망은 남측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4.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표단의 보도문

(’93.7.19)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표단과 미합중국 대표단 사이에 합의된 원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표단과 미합중국 대표단은 1993년 7월 14일부터 19일까지 제네바에서 핵문제 해결을 위한 2단계 회담을 진행하였다.

쌍방은 1993년 6월 11일부 조·미공동성명의 원칙들을 재확인하였다. 미합중국측은 특히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무력으로 위협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하는 원칙에 대한 자기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쌍방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현존 흑연감속원자로와 그와 연관된 핵시설을 경수로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대하여 인정한다. 미국은 핵문제의 중국적 해결의 일환으로써 경수로의 해결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경수로 도입을 지지하며, 그를 위한 방도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함께 탐구할 용의를 표명한다.

쌍방은 국제원자력기구의 담보를 완전히, 그리고 공정하게 적용하는 것이 국제적인 핵전파방지체계를 강화하는데서 필수적이라는 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 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조

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담보와 관련한 현안문제와 기타 문제들에 관한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협상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시작할 용의를 표명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또한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북남공동선언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핵문제를 포함하여 쌍방사이의 문제들에 대한 북남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시작할 용의를 의연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경수로 도입과 관련한 기술적 문제들을 포함하여 핵문제 해결과 관련된 현안 문제들을 토의하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전반적 관계개선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2개월 안으로 다음 회담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25. 한국 외무부 대변인 성명

(’93.7.20)

정부는 제네바에서 개최된 미·북한 접촉결과 양측이 합의, 발표한 내용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한다.

특히, 북한이 강력한 핵비확산체제의 유지 필요성을 수락하고, 핵의혹해소를 위해 IAEA에 의한 전면적 안전조치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이 긴요함을 인정하면서, IAEA와의 협의뿐 아니라 남북접촉에도 응하겠다고 한 것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선택한 것으로 본다.

정부는 향후 북한이 이러한 국제적 의무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완전하고 충실한 이행을 위해 구체적 조치를 취하는지 여부를 예의주시할 것이며, 특히 IAEA와의 협의 및 남북접촉에 즉각 임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북한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한·미 협조체제를 포함, 국제적 공조체제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며, 남북접촉을 통하여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26. IAEA, 대북한 핵사찰 관련 공식발표

(’93.8.13)

IAEA 핵사찰단은 ’93.8.3~10간 방북, 영변지역의 몇몇 핵시설에 대한 제한된 사찰활동을 실시하였다.

북한측은 핵안전협정 이행관련, IAEA측과 협상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날짜는 제시하지 않았는 바, IAEA측은 하시라도 북한측과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

상기 협상시 영변 2개 미신고 시설에 대한 접근(사찰)문제가 거론될 것이다.

상기 사찰결과는 ’93.9월 이사회에 보고될 계획이다.

IAEA SAFEGUARDS INSPECTION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

A team of inspectors from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IAEA) visite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 3-10 August 1993. The DPRK restricted the inspection to containment and surveillance activities in some facilities of the Nyongbyon site.

The DPRK seems willing to enter into consultations with the IAEA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safeguards agreement, but no specific date has yet been proposed. The IAEA is ready for such talks at any time. The pending question of the access requested by IAEA to two specific sites will be among the issues to be raised during such consultations. The overall degree of access granted is still insufficient for the Agency to discharge its responsibilities.

A report on safeguard inspections in the DPRK will be submitted to 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IAEA in September.

27. 북남 고위급회담 북측 대표단 대변인, 특사교환 문제 관련 담화

(’93.8.31)

북남 고위급회담 북측 대표단 대변인 담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측이 쌍방 최고위급의 특사를 교환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은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나갔다. 그동안 우리는 북남대화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염원에서 남측이 과거의 낡은 대결자세를 버리고 우리의 획기적인 특사교환 제의를 받아들일 것을 거듭 촉구하여 왔다. 우리는 지난 8월 9일에도 남측이 북남대화에 대한 자세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일 것을 기대하면서 핵문제를 비롯한 현안문제들을 북남 핵통제공동위원회와 같은 실무급의 협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다 책임적이고 권위있는 최고위급의 특사교환을 통해서 해결할데 대한 입장을 다시금 표명하였다. 그러나 남측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여전히 우리의 보다 적극적인 회담제안인 특사교환 제의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다. 대화가 아니라 대결을 추구하는 그들의 자세에서도 아무런 변화의 징조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핵문제를 비롯하여 시급한 해결을 기다리는 현안 문제들을 앞에두고 대화도 없이 반목과 대결로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은 어느모로 보나 이로우것이 없으며 민족적인 견지에서도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위임에 의해서 북남관계의 현 교착상태를 시급히 타개하며 북남대화를 좋게 추진되고 있는 조·미 회담과 조화롭게 진전시키려

는 우리측의 염원을 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조선반도의 비핵화 문제를 북남대화를 통하여 시급히 해결하려는 것은 우리의 일관한 입장이다. 우리의 이러한 입장은 이미 조·미 회담에서도 확인되었으며 내외에서 한결같은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대화의 타방인 남측은 말로는 핵문제의 우선적 해결을 떠들면서도 실지행동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우리가 이미 지적한바와 같이 핵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남측이 우리의 면전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화 공동선언에 배치되는 '93 을지훈련과 을지 포커스렌즈 합동군사연습을 벌이고, 이어 팀 스피리트 핵전쟁연습까지 강행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공언하면서 인위적으로 정세를 긴장시키는 것은 사실상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그에 장애를 조성하는 행위이다. 더욱이 남측이 우리와 마주앉아 문제를 협의할 듯이 말하면서 국제공조체제를 운운하는 것은 우리와의 대화도, 핵문제 해결도 바라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조·미 회담에 대해서 달가와 하지 않고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북남대화의 곡절많은 과정은 우리를 반대해서 의세와 함께 벌이는 도발적인 대규모 핵전쟁연습과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에 집착하여 동족을 적대시해 온 냉전식 대결관념이 대화 앞에 얼마나 파괴적인 후과를 미쳤는가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오늘 조선반도를 둘러싼 내외정세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조·미 회담의 진전은 냉전시대의 마지막 대결점인 조선반도의 북남 사이에도 대화와 완화를 절박한 문제로 일정에 제기하고 있다. 남측이

이러한 변화를 바로보지 않고 구태의연하게 반공, 반북 대결의 입장에 서서 반대화·반평화의 길로 나간다면 그들이야말로 냉전시대의 유일한 고아의 처지에 빠지게 될 것이다. 과거 북남대화가 남긴 심각한 교훈과 완화를 지향하는 현정세 발전의 추세에 비춰볼때 남측은 과거의 타성에서 결정적으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입장에서부터 남측이 동족을 반대하는 모든 적대적인 핵전쟁 연습을 중지하고 이른바 국제공조체제를 추구하지 않으며 더 이상 대화와 평화에 역행하는 행위를 되풀이 하지 않을데 대한 명백한 태도 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측의 이러한 태도표시는 대화에 대한 그들의 전진적인 자세와 나아가서 온민족이 기대해 마지않는 쌍방 특사교환에 대한 그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것으로 될 것이다. 우리는 남측이 어떤 형태로든 성의 있는 대화자세를 표시한다면 구태여 특사의 급에 구애되지 않을 것이다. 남측의 사정으로 통일문제를 담당할 부총리급으로 할 수 없다면 쌍방의 최고위급이 임명하는 임의의 급의 특사교환도 무방할 것이다. 특사교환에서는 나라의 비핵화 문제와 함께 긴장완화와 북남 합의서 이행을 위한 공동대책을 시급히 취할데 대한 문제, 전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할데 대한 문제, 최고위급 회담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제반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협의 해결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성과적인 북남 대화를 위하여 그리고 비핵화 문제를 포함한 초미의 현안 문제들을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하여 남측이 우리의 신뢰할 수 있는 대화 상대가 되기를 희망한다. 북남 사이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특사교환이 이루어지면 핵문제와 북남 관계의 제반

문제들은 쌍방 최고위급의 뜻에 따라 빨리 해결될 수 있을 것이며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반드시 훌륭한 결실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남측이 우리의 거듭되는 특사교환 제의를 심사숙고하고 그 실현을 위해서 하루빨리 자기의 전환적인 입장을 실천 행동으로 보여주리라는 기대를 표시한다.

1993년 8월 31일 북남 고위급회담 북측 대표단 대변인 담화를 보내드렸습니다.

28. 황인성 남북고위급회담 우리측 수석대표,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접촉 관련 대북전통문

(’93.9.2)

나는 최근 귀측이 국제원자력기구와 핵안전조치협정의 이행에 관한 회담을 재개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것이 남북관계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램.

우리측은 회담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귀측과 마주앉아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용의가 있음.

우리측은 핵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협의·해결하고 그밖의 남북간 주요 현안문제들을 함께 다루기 위하여 쌍방 최고 책임자가 임명하는 특사를 교환할 것을 제의함.

나는 특사교환에 필요한 실무절차를 협의하기 위하여 오는 9월 7일(화) 오전 10시 판문점 귀측지역 『통일각』에서 실무대표접촉을 갖기를 희망함.

29. 북한 외교부, 제3단계 북·회담 관련 담화문

(’93.9.22)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제3단계 조·미회담 개최문제를 둘러싸고 미국측이 회담의 진전에 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9. 22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외교부 대변인이 발표한 담화는 다음과 같다.

조·미회담 미국측 단장인 칼루치의 남조선 및 일본 행각을 계기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 수용과 북남대화 재개가 제3단계 조·미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된다는니, 이러한 전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북조선의 핵문제를 유엔안보이사회에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니 하는 등의 그릇된 여론들이 나돌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조·미회담에 대한 미국측의 입장과 자세에 대해 문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조·미 사이의 제3단계 회담을 개최하는 데는 전제조건을 내세울 아무런 명분도 근거도 없다.

미국측이 IAEA와의 협상과 북남대화를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촉구하는 것이 우리를 압살하기 위한 사면포위망을 치자는 목적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면 미국측 협상자 자신이 공공

연히 우리의 핵문제를 유엔안보리이사회에 제기할 것이라고 위협해 나설 이유가 없을 것이며 그의 서울행각을 계기로 남조선 고위당국자들이 때를 만난것처럼 그 누구에 대한 제재에 대해 함부로 떠들지 못했을 것이다.

30. 북한 외교부 대변인, NPT탈퇴 경고 담화발표

(’93.9.22)

IAEA 사찰수용과 북남대화 재개가 제3단계 조·미회담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이 전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북조선 핵 문제를 유엔안보리에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등의 여론이 나돌고 있음.

미국이 계속 IAEA와의 협상과 북남대화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회담에 인위적 장애를 조성하려 한다면, 미국과의 협상을 전제로 취해온 지금까지의 모든 조치를 재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임.

31. IAEA 제37차 정기총회 결의

(’93.10.1)

〈핵무기비확산조약과 관련한 안전조치협정의 적용을 위해 북한과 IAEA간 체결된 협정의 이행에 관하여〉

총회는

- (a) 이사회의 지난 2. 25(GOV/2636), 3. 18(GOV/2639), 4. 1(GOV/2644) 및 9. 23(GOV/2691)차 결의를 상기 하고
 - (b) 사무총장의 이번 37차 정기총회 보고서 내용에 주목하며
 - (c) 동시에 북한 핵문제를 IAEA사무총장이 안보리에 보고토 록 요청한 지난 5월의 안보리 결의 제825호를 환기하면서
 - (d) 이상의 결의들의 핵심적 내용이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 는데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현재까지 유효한 북한과 IAEA간 안전조치협정(INFCIRC /403)의 이행을 위해 이사회와 사무총장, 사무국이 벌여 온 공정한 노력과 지금까지의 조치를 강력히 지지한다.
 2. 북한측이 안전조치협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서 나아 가 최근 협정의무사항인 예정된 임시사찰과 통상사찰도 수 락하지 않음으로써 협정불이행의 범위를 심화시키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3. 북한에 대해 안전조치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IAEA와 즉각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4. 차기 제38차 정기총회에 “NPT와 관련한 안전조치협정의 적용을 위해 북한과 IAEA간 체결된 협정의 이행에 관하여”라는 표제의 안건을 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결정한다.

The General Conference

- (a) Recalling Board of Governor's resolution GOV/2636 of 25 February 1993, resolution GOV/2636 of 18 March 1993, resolution GOV/2645 of 1 April 1993 and resolution GOV/2691 of 22 September 1993,
 - (b) Noting the Director General's report contained in GC(XXXVII)/1084 and the contents of GC(XXXVII)/1084/Add. 1,
 - (c) Recalling also resolution 825(1993) adopted by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on 11 May 1993 which inter alie requested the Director General to report on this matter to the Security Council, and
 - (d) Deeply concerned that essential elements of these resolutions remain be implemented.
- 1) Strongly endorses the actions taken so far in this regard by the Board of Governors and commends the Director General and the Secretariat for their impartial efforts to implement the safeguards agreement (INFCIRC/403) still in force between the Agency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

- 2) Expresses its grave concern that the DPRK has failed to discharge its safeguards obligations and has recently widened the area of non-compliance by not accepting scheduled Agency ad hoc and routine inspections as required by its safeguards agreement with the IAEA:
- 3) Urges the DPRK to cooperate immediately with Agency in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safeguards agreement:
- 4) Decides to include in the agenda for its Thirty-eighth Regular Session an item entitled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Agency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or the Application of Safeguards in Connection with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32. 강성산, 황인성 국무총리에 전화통지문

(’93.10.2)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무원 강성산 총리는 남측이 실무대표 접촉에 나와 특사교환과 관련해서 우리측이 제기한 원칙적 문제들에 명백한 대답을 할 것을 요구해서 남조선 국무총리 황인성에게 2일 전화통지문을 보냈습니다. 전화통지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도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측이 북남 최고위급의 특사교환 문제를 제의한 때로부터 넉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쌍방은 서로의 의견교환을 통하여 현시기 비핵화 문제를 포함한 북과 남의 현안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최고위급의 특사교환 형식이 가장 합리적인 방도로 된다는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문제해결에서 하나의 전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에 올라 있는 특사교환이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귀측이 대화 상대방인 우리를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을 중지하며 핵문제와 관련한 이른바 국제 공조체제를 추구하지 말데 대한 우리측의 정당한 요구에 대답을 늦잡고 있는 것과 관련됩니다.

우리가 여러차례에 걸쳐 이 문제에 대한 귀측의 명백한 태도표명을 요구한 것은 어디까지나 특사교환을 좋은 분위기 속에서 성공적으로 실현해 나가려는 염원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우리는 특사교환을 하루빨리 실현하려는 진지한 입장에서 그리고 귀측이 실무대표 접촉에 나와 우리측이 제기

한 원칙적 문제들에 대한 명백한 대답을 하리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오는 10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 판문점 우리측 지역 통일각에 3명의 실무대표를 예정대로 내보낼 것이라는 것을 귀측에 통지하는 바입니다. 우리측에서는 실무대표 접촉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 박영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들인 최승철, 최성익과 함께 4명의 성원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귀측의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전화통지문의 내용은 이상과 같습니다.

33. 한국국회, 북한의 IAEA핵사찰 수락 촉구 결의문

(’93.10.25)

대한민국국회는

- (a)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동북아의 안위를 위태롭게 함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데 유념하고,
- (b) 북한이 1985년 12월에 가입한 핵무기비확산조약상의 의무인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계속 거부하면서 1993년 3월 핵무기비확산조약 탈퇴를 선언한 것은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의혹을 크게 증폭시켰음에 유의하고,
- (c) 1992년 2월 19일 발효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따른 남북상호핵사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 (d) 1993년 5월 18일 대한민국국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북한의 핵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상기하고,
- (e) 북한에게 핵안전조치협정상의 의무이행을 촉구해 온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와 총회, 그리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반 결의와 국제원자력기구가 취해온 모든 조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북한은 한반도 통일 여건조성을 위하여 1992년 2월 19일

발효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상호사찰을 위한 규정제정에 필요한 남북한 협의에 즉각 응하라.
3. 북한은 핵무기비확산조약의 당사국으로서 제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국제사회에 엄숙히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
4.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와 체결한 핵안전조치협정에 따른 임시사찰 및 일반사찰과 특별사찰을 수용하여 협정의 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1993년 10월 25일 대한민국국회

34. IAEA보고에 대한 제48차 UN총회 결의

(’93.11.1)

유엔총회는,

- (a) 총회에 제출된 IAEA의 1992년도 보고서를 접수하고,
- (b) 1993년도 IAEA의 주요활동에 관한 추가정보를 제공한 IAEA 사무총장의 93년 11월 1일 연설에 유의하며,
- (c) IAEA 현장에 명시된 것과 같이 원자력을 평화적 목적에 이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IAEA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 (d) 개도국이 원자력을 자신들의 경제개발에 이용할 뿐 아니라 핵기술을 평화적 목적에 사용하는 등, 이익을 효과적으로 수혜하기 위하여는 IAEA의 기술원조가 특별히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 (e) IAEA에 의하여, 혹은 그 요청이나 감독, 통제등에 따라 제공되는 원조가 군사적 목적을 확대하기 위한 방식으로 가능한 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어서, 또한 NPT나 이와 유사한 목적의 여타 국제조약, 협약, 협정상 안전조치 조항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IAEA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 (f) 더 나아가 원자력 발전, 원자력 기술의 적용, 원자력의

안전성, 방사능 보호와 방사성 폐기물 관리, 그리고 이러한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개도국을 원조하기 위한 조치 등과 관련된 모든 IAEA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며,

- (g)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와 운영에 인명과 건강, 그리고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성 기준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 (h) 이라크의 핵비확산 의무불이행에 대한 IAEA의 성명과 조치를 유의하며,
- (i) 안보리결의 825호(93. 5. 11)와 더불어 NPT와 관련하여 안전조치 적용을 위해 IAEA·북한간에 체결된 협정의 이행에 관한 IAEA이사회의결의 2636호(93. 2. 25), 2639호(93. 3. 18), 2644호(93. 4. 1), 2691호(93. 9. 23)에 유의하는 동시에, 북한이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이행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 (j) 방사성 폐기물의 국제적 관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IAEA총회 614호 결의, 원자력안전협약의 조기체결을 통한 안전성 강화에 관한 615호 결의, 음식물 투사(food irradiation) 방식을 개도국에서 실제적으로 활용하는데 대한 616호 결의, 식수를 경제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계획에 관한 617호 결의, IAEA의 주요활동을 강화하는데 관한 618호 결의, 안전조치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강화하는데 관한 619호 결의, NPT와 관련하여 안전조치 적

용을 위해 IAEA와 북한간에 체결된 협정의 이행에 관한 624호 결의, 아프리카 비핵화지대화에 관한 625호 결의, 이라크 관련 687, 707, 715호 유엔안보리 결의의 이행에 관한 626호 결의, 중동에서의 IAEA 안전조치 적용에 관한 627호 결의 등 제37차 IAEA총회에서 1993. 10. 1에 채택된 IAEA 결의들을 명심하며,

1. IAEA보고서에 유의한다.
2.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 이용과 관련된 IAEA의 역할에 대한 신뢰를 확인한다.
3. Hans Blix 박사가 IAEA 사무총장으로 재임명된 것을 환영한다.
4. 원자력 사용의 진흥, 인명과 건강 그리고 환경에 대한 위해의 최소화를 위한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 강화, 개도국에 대한 기술원조와 협조강화, IAEA안전조치체제의 효과성과 효율성 확보 등 IAEA의 현장상 과업수행 활동에 있어서 효과적이고 조화로운 국제협력을 위해 모든 국가들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35. UN총회의 대북 결의에 대한 한국 외무부 대변인 논평

(’93.11.2)

유엔총회는 11. 1 국제원자력기구의 연례보고 심의후 채택한 결의를 통해,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와 체결한 안전조치협정이 유효함을 확인하면서 북한의 협정 불이행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이 안전조치 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와 즉각 협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우리는 유엔총회가 금번결의를 통해 전 유엔회원국의 이름으로 북한의 국제적 의무를 다시한번 확인하고, 북한에 대해 즉각적인 안전조치협정 이행을 촉구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우리는 북한이 유엔회원국의 이러한 충의를 존중하여 핵개발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는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36. 북·미 뉴욕접촉 합의문

AGREED CONCLUSION OF THE USA-DPRK NEW YORK TALKS

(’94.2.25)

The United States of America(US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 have held a series of talks in New York, with the purpose of making continued joint efforts to resolve the nuclear issue through dialogue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the U. S. / DPRK joint statement of June 11, 1993.

Pursuant to consultation, both sides have agreed to take 4 simultaneous steps on March 1, 1994 as follows:

1. The USA announces its decision to agree with the ROK’s suspension of T/S ’94 joint military exercise.
2. The inspections necessary for the continuity of safeguards as agreed between the IAEA and the DPRK on Feb. 15, 1994 begin and will be completed within the agreed period.
3. The working level contacts resume in Panmunjom for the exchange of North

—South special envoys.

4. The USA and DPRK announce that the third round of US/DPRK talks will begin on March 21, 1994 in Geneva.

Each of these simultaneous steps is requir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se agreed conclusions.

37. 조·미회담 북측단장인 외교부 강석주 제1부부장의 담화

(’94.3.4)

이미 발표된 바와 같이 지난 2월 25일 뉴욕에서 진행된 조·미 접촉에서는 핵문제를 일괄 타결하기 위한 당면한 네가지 동시행동조치들이 합의되었다.

이 동시행동조치들에는 팀스피리트 '94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고 북남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을 재개하며 담보의 연속성 보장을 위한 기구사찰을 시작할데 대한 문제와 오는 3월 21일부터 제3단계 조·미회담을 제네바에서 진행할데 대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합의된 대부분의 행동조치들은 벌써 실제적인 이행단계에 들어섰다.

이리하여 일시적으로 탈선되었던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정이 다시금 제 궤도에 들어설수 있는 새로운 전망이 열리게 되었다.

비록 때늦은 감은 있지만 쌍방이 이번 합의에서 조·미 공동성명의 원칙에 따라 핵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려는 입장들을 재확인하고 그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조치들과 시간표를 확정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동시행동조치들과 관련한 이번 합의가 결코 순탄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우리는 지난시기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제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성의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며 신축성도 보였다.

제2단계 조·미회담이후에만도 우리는 기구와의 협상문제, 북남대화 문제 등에서 우리 스스로가 맡아나선 의무를 가능한한 다 이행하였다.

특히 회담앞에 가로놓인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쌍방이 동시에 움직이는 원칙에 기초한 일괄 타결방식으로 핵문제를 완전히 해결할데 대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핵문제가 처음부터 우리의 제안대로 해결되어 왔더라면 도중에 그처럼 심각한 우여곡절을 겪지 않았을 것이며 동시행동조치와 같은 기초적인 합의를 이룩하는데서 이번과 같이 오랜시일이 걸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사실 우리와 미국사이에 반세기에 걸치는 대결과 불신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때 누가 누구에게 먼저 신뢰를 보이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등하고 공정한 기초위에서 쌍방이 문제해결의 타당한 방도를 찾으려 한다면 서로 상대방에게 먼저 움직이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동시에 움직여 나가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으며 이 방향에서 함께 행동할 것을 미국측에 거듭 촉구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시기 미국측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성근하게 수용하는 대신 부당한 전제조건들을 내세우고 지연전술에 매달리면서 우리에게 일방적인 요구를 강박하여 나섰으며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끊임없이 추구하였다.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은 지난해 12월말 제18차 조·미 접촉에서 동시행동조치와 관련한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칙적 합의를 본 이후에도 우리에게 담보협정에 따르는 정기 및 비정기 사찰에 맞먹는 사찰을 요구해온 국제원자력기구 서기국을 노골적으로 비호해 나섰으며 심지어 최근에는 기구 2월 관리이사회 회의를 겨냥하여 시한부까지 정해놓고 압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하였다.

상대방의 이와 같은 독선적이며 신의없는 대화자세는 우리 인민들의 한결같은 격분을 자아냈으며 우리로 하여금 응당한 자위적 결심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우리는 미국이 우리와의 합의정신을 뒤집어 엮고 반공화국 압살정책에 매달린다면 구태여 미국과의 약속에 구애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선택한 길로 나갈 수 밖에 없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우리의 이 의지가 현실화되기 전에 미국이 뉴욕 접촉의 재개를 요청해 온 것은 지금에 와서 볼 때 핵문제 해결은 물론 조선반도를 둘러싼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도 다행한 일이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와 국제원자력기구 사이에 담보의 연속성 보장을 위한 사찰범위가 합의된 다음에도 우리 민족내부 문제인 북남특사교환문제를 가지고 조건을 붙이면서 합의문 작성에 새로운 난관을 조성하여 나섰다.

우리는 대화상대방의 이와 같은 끈질긴 주장을 배격하고 대화를 위기에서 구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경고하였으며 그들이 전제조건을 철회하고 합의문에 동

의해 나섰을 때에는 응당하게 평가하였다.

이번에 조·미 사이에 동시행동조치들이 합의된 것으로 하여 제3단계 회담을 열고 핵문제를 일괄타결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게 되었다.

이제 조·미 쌍방은 이미 합의한 일괄타결방식에 따라 우리에게 대한 미국이 핵위협과 적대시정책의 종식, 경수로 도입, 조·미 관계의 개선, 우리의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정기 및 비정기 사찰의 재개 등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실천에 옮겨 나가야 할 것이다.

동시행동에 기초한 일괄타결방식은 대결이 아니라 쌍방이 완전한 평등의 지위에서 대화를 통하여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게 실천적이고 합리적인 방도로 된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조·미 회담 전과정과 특히 동시행동조치들을 합의하기 위한 조·미 접촉 과정에서도 명백히 실증되었다.

일괄타결방식으로 조선반도에서 핵문제가 해결되면 전반적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도 결정적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번에 합의된 동시행동조치들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일괄타결방식으로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이제 문제의 해결여부는 미국이 대화일방으로서 자기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얼마나 성실하게 나오는가 하는데 달려 있다.

아무리 타당한 문제해결방식이 주어졌다고 해도 그 이행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는 당사자에게 문제해결의 의지가 없다면 어떠한 실제적 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이치이다.

동시행동조치와 관련한 조·미 뉴욕접촉 합의문이 발표된 지 불과 며칠도 되지 않는 사이에 미국이 합의를 이행하려는 의지를 실지로 가지고 있는가 하는데 대하여 의혹을 가지게 하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

미국측은 팀스피리트 '94 합동군사연습 중지와 제3단계 조·미 회담 개최가 북남특사교환과 기구사찰을 전제로 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하였다.

또한 지난 3일에는 북남특사교환을 조건부로 팀스피리트 '94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겠다고 한 남조선당국의 결정을 그대로 지지하고 나섰다.

이 모든 것은 조·미 합의사항 이행을 위태롭게 하는 위협천만한 행동들로서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번에 조·미 쌍방은 그 무엇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동시행동조치들을 합의한 것이 아니다.

뉴욕접촉 합의문에는 동시행동조치의 하나로 북남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 재개에 대하여 언급되었을 뿐 특사교환의 실현에 대해서는 지적된 것이 없다.

특사교환 제안으로 말하면 그것은 우리가 민족분단의 비극을 끝장내고 겨레의 통일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숭고한 의지로부터 먼저 내놓은 것이며 이를 실현시키자는 것은 우리의 일괄한 입장이다.

그러나 특사교환이 지금까지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남조선당국이 특사교환의 의미를 순수 핵문제 토의 일면에 있는 것처럼 왜곡하면서 그를 통하여 조·미회담에 제동을 거는 한편 군사적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하면서 북남대결을 격화시켜 왔기 때문이다.

남조선당국이 정치적 주권이 없고 문제 토의의 권한도 없으면서 무턱대고 핵문제 토의에 끼여들려는 부당한 행위를 그만두고 민족의 통일을 이룩하려는 데로 명백히 입장 전환을 할 때에만 비로소 북남특사교환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담보의 연속성 보장을 위한 기구의 사찰과 관련한 협의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히 이행하자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 3월 1일부터 기구의 사찰단이 자기 활동에 착수 하였으며 우리의 해당기관에서는 그의 활동을 잘 협조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합의문이 이행단계에 들어선 오늘 미국측이 지난 접촉과정에 합의문에 포함시키려 하다가 배격당한 바 있는 부당한 전제조건들을 다시 꺼내드는 것이나 남조선당국이 내든 조건부를 그대로 지지해 나서는 것은 다 합의문의 완전 이행을 파괴할 수 있는 요소로 밖에 달리는 볼 수 없다.

우리가 미국이 북남특사교환과 기구사찰문제를 팀스피리트 '94 합동군사연습 중지와 제3단계 조·미회담 개최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것을 엄중시 하는 것은 이것이 동시에 움직일 데 대한 합의를 또다시 뒤집어 엮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전제조건을 허용하게 되면 조·미회담의 결정권이 그를 달가워 하지 않는 일부 불순세력들에게 넘어가는 엄청난 후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번 합의문에 명기되어 있는 것처럼 4개 동시행동조치들이 다같이 원만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합의사항 전체가 자동적으로 뒤틀리게 된다.

우리는 이번에 기구측이 담보의 연속성 보장을 위한 사찰 과정에 부당하게 나오지 않으며 또한 남조선측이 특사교환문제를 조·미회담에 제동을 거는 등 다른 불순한 목적에 악용하지 않으리라는 전제하에서 기구사찰과 북남실무접촉 재개에 동의하였다.

만일 기구측과 남조선당국이 이에 어긋나게 복잡한 문제들을 들고 나오고 미국이 그를 구실로 팀스피리트 '94 합동군사연습 중지이행을 중도반단하고 제3단계 조·미회담 개최를 지연시키려 든다면 우리 역시 이미 시작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원만히 보장해 줄 수 없고 나아가서 조·미회담 그 자체에 대해서도 더이상 기대를 걸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지금이야말로 조·미 쌍방이 핵문제 해결에서 지닌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자각하고 바로 며칠전에 발표된 동시행동조치와 관련한 합의문을 그대로 이행해야 할 때이다.

우리는 대화상대방의 차후 행동을 지켜볼 것이다.

38. 최고위급 특사교환 실무접촉 관련 담화 발표

(’94.3.15)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최근 북과 남 사이에 최고위급의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이 여러차례 진행되고 있지만 남측의 부당한 처사로 말미암아 아직 응당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15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요즘 판문점에서는 북과 남 사이에 지난해 10월에 중단되었던 최고위급의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이 여러차례 진행되고 있다. 접촉들에서는 일련의 전진을 가져오고 있지만 아직 응당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특사교환 앞에 난관을 조성하면서 그의 조속한 타결을 달가워하지 않는 남조선 당국자들의 온당치 못한 처사에 전적으로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 12일에 진행된 제6차 실무대표 접촉에서 우리측은 우리가 정당하게 제기하였던 4가지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대범하고도 아량있는 입장을 보여주면서 쌍방이 특사교환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의 하나로서 특사교환에 대한 쌍방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특사를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을 공동 보도 형식으로 내외에 알림과 동시에 실무절차에 관한 쌍방 합의서안을 놓고 진지하게 협의하여 매듭을 지을데 대한 건설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이러한 획기적인 조치는 특사교환을

더욱 앞당기기 위한 조건을 쥐어줄 뿐 아니라 특사교환의 전도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는 온 겨레에게 희망을 주고 북남 관계에서 새 출발의 전기를 마련하는 의의깊은 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된다. 남조선 당국자들이 진정으로 오늘의 침체한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90년대 통일을 앞당겨 이룩하려는 입장에서 북남 최고위급의 특사교환을 실현하려 한다면 우리의 이 합리적이며 애국적인 발기에 응당 긍정적인 호응을 보여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남측은 이날 접촉에서 말로는 특사교환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도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데 대하여서는 부정하면서 우리의 건설적인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사교환에 대한 남조선 당국자들의 이러한 태도는 판문점 실무대표 접촉을 지켜보고 있는 내외인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북남 특사교환은 우리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서 조선반도의 비핵화 문제를 비롯한 북남 사이의 현안문제들,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민족의 중대사들을 민족자주성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최고위급의 정치적 결단으로 순조롭게 빨리 협의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최선의 방도로 된다. 북남 최고위급의 특사들이 평양과 서울을 오가고 그것이 역사적인 최고위급 회담으로 이렇지 않게 되면 북남관계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민족의 지상과제인 90년대 통일을 이룩하는데서 결정적 국면이 열리게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측으로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북남 최고위급의 특사교환을 주동적으로 발기하고 판문점 실무대표 접촉을 마련하였으며 쌍방 특사들의 평양과 서울 방문길을 순조롭게

열어나가기 위하여 지금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왔다. 그동안 우리측이 남측의 동족을 반대하는 모든 대규모의 핵전쟁 연습을 중지하고, 있지도 않는 핵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대한 국제공조체제를 운운하는 것을 포기하고 패트리엇 미사일을 비롯한 신형무기들의 반입 계획을 철회하여 핵무기를 가진 상대와는 악수할 수 없다고 한 발언을 취소할데 대한 태도부터 명백히 할 것을 요구해 온 것도 북남최고위급의 특사교환이 곡절없이 본연의 사명에 맞게 성과적으로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였다. 우리의 이와같은 요구는 거래의 염원으로 보나 지난날 북남대화의 교훈으로 보나 지극히 정당한 것으로서 내외의 여론에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남조선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북남 특사교환이 쌍방 최고위급 회담의 전제로 되고 있고 특사들이 안고 있는 임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절실하고 중대한 문제로 되고 있는 것만큼 그 실현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결과제로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측이 우리의 이 정당한 요구에 명백한 태도표명을 회피함으로써 모처럼 일정에 오른 특사교환의 전도에 그들을 던지고 그 운명을 위태롭게 만들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특사교환 앞에 가로놓인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측은 지난 12일에 있는 제 6차 실무대표 접촉에서 지금까지 남측이 모든 대규모의 핵전쟁연습 중지 문제와 국제공조체제 포기문제는 앞으로 특사교환에 들어가 협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조건부적이기는 하지만 얼마전에 팀스피리트 '94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으며 패트리엇 미사일 반입계획을 유보하였다고

하고 핵무기를 가진 상대와는 악수할 수 없다고 한 발언과 관련하여서도 북이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정보가 없다고 하면서 상황이 이전과 달라졌다고 한 사실 등을 검토 분석하고 비록 미흡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입장이 우리의 네가지 요구 사항의 타당성에 대한 이해의 표시로 된다고 보고 그에 유의하면서 특사교환에 대한 쌍방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특사를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을 내외에 공포할 것을 제의하였던 것이다. 우리측의 이 대범한 조치와 건설적인 제안은 어느모로 보나 정당하며 특사교환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의 반영으로 된다. 그러나 남측이 아무런 타당한 이유도 없이 공동보도를 내는 문제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보면 그들에게 과연 특사교환 의지가 있고 특사교환을 실시로 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또한 남측은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절차 토의에서도 특사의 임무를 규제함에 있어서 우리측이 제기한 긴장완화 문제, 전민족의 대단결문제, 조국통일 방도를 확정하는 문제, 민족자주성의 원칙을 지키는 문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그들이 특사교환을 결실있는 것으로 하기 보다는 걸치레나 하고 모양새나 내는 회담으로 만들자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남측은 북남 쌍방이 특사를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공동보도를 내는 것도 반대하고 특사의 임무를 규제함에 있어서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문제들을 포함시키는 것도 반대함으로써 특사교환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며 나아가서 제3단계 조·미 회담에 고의적으로 제동을 거는 행동을 하고 있다. 오늘 남측은 이와같이

행동하면서도 특사교환이 제3단계 조·미 회담의 전제조건이라느니, 3월 21일 제3단계 조·미 회담전에 특사교환이 되어야 한다느니 하는 따위의 횡설수설을 하는데 급급하고 있다. 지난 2월 25일에 합의된 조·미 뉴욕접촉 합의문 세번째항에는 북남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을 재개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을뿐 그 이상의 다른것은 없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해석이란 있을 수 없으며 더욱이 남조선 당국자들이 이 문제 해석에 끼어들어 어떤 조건부를 들고나올 명분도 없다. 지금 우리측이 판문점에서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을 재개하고 벌써 세차례나 접촉을 가졌을뿐 아니라 대범한 입장을 취하여 접촉을 특사교환의 문어구에 까지 접근시킨 것은 조·미 공동합의문의 내용보다 일을 훨씬 앞당겨 진척시킨 것으로 된다. 그런데 남조선 당국자들이 우리의 성의와 적극성을 외면하고 저들의 권능에도 속하지 않는 당치않는 전제조건까지 들고나와 빼뚫어진 생트집을 부리며 특사교환에 관한 공동보도도 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북남 최고위급의 특사교환 조치를 무산시키고 제3단계 조·미 회담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행위로 된다고 밖에 달리는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남조선 당국자들은 진실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비핵화를 비롯한 북남 사이의 모든 현안문제를 우리와 협의 해결할 용의가 있다면 온 민족이 납득할 수 있도록 특사교환에 대한 의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우리측의 실무절차안을 받아들이는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우리는 주장한다.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의 태도를 계속 지켜볼 것이다. 이와같이 조국평화통일

원회 대변인은 최근 북과 남 사이에 최고위급의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이 여러차례 진행되고 있지만 남측의 부당한 처사로 말미암아 아직 응당한 결실을 맺지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39. 조선외교부대변인 성명

(’94.3.21)

미국은 지난 2월 25일부 조·미뉴욕접촉합의문을 전면 뒤집어 엮는 배신행위를 하였다.

알려진 바와같이 조·미 쌍방은 지난 2월 25일 뉴욕접촉에서 팀스피리트 '94 합동군사연습 중지, 북남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접촉의 재개, 국제원자력기구 담보연속성 보장을 위한 사찰진행, 3월 21일 제네바에서 제3단계 조·미회담 개최 등 핵문제의 일괄타결을 위한 당면한 네가지 동시행동조치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이 동시행동조치들이 합의된 것은 탈선되었던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정을 다시금 재궤도에 들어설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계기점으로 되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대화를 통하여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염원으로부터 합의문에 지적된 우리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

우리는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을 제시일에 받아들이고 신고된 7개 대상들에 대하여 담보연속성 보장의 충분한 범위의 사찰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성근하게 보장해주었다.

심지어 기구측이 우리와 합의한 담보의 연속성 보장을 훨씬 초월하는 시료채취와 측정 등을無理하게 요구해 나선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조차 기구의 요구를 가능한한 수용해주는

최대의 선의를 보였다.

우리는 또한 북남실무대표접촉을 여러차례 진행하고 북남 특사교환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방도와 합당한 대책을 제기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미국측은 지난 2월 25일 뉴욕합의문 발표이후 빈말을 했을 뿐 자기의 의무를 어느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다.

미국은 팀스피리트 '94합동군사연습의 중지와 3단계의 조·미회담개최 날짜를 발표해놓고 기구의 사찰이 만족스럽게 진행되고 북남특사교환이 실현되어야 그것을 이행할 것이라는 부당한 전제조건을 붙였다.

이것은 동시에 움직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뉴욕합의문에 대한 위반이다.

오히려 미국은 우리가 받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북남특사교환을 실현하지 않았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동시행동조치를 취하기로 한 뉴욕합의문을 뒤집어 엮는 길로 나왔다.

미국은 만일 우리가 기구의 재사찰을 허용하지 않고 북남 특사교환을 실현하지 않으면 팀스피리트 '94 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고 제3단계 조·미회담도 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문제를 유엔안보이사회에 넘기겠다고 하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국제원자력기구 서기국도 관리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결의채택 놀음을 벌이고 있다.

미국이 핵문제 해결을 눈앞에 둔 지금의 결정적인 대목에 와서 이처럼 뉴욕합의문을 공공연히 뒤집어 엮고 3단계 회담

의 기초를 완전히 허물어 버림으로써 핵문제의 해결전망을 가로막은 것은 미국의 구태의연한 대조선 적대시정책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미국이 뉴욕합의문에 명기되어 있지도 않은 당치않은 전제조건을 내댄 것 자체가 당초에 조·미회담을 통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명백하다.

미국이 마치도 저들의 부당한 전제조건이 우리와 합의한 사항이라도 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지만 그것은 이미 뉴욕합의문 토의시 우리의 정당한 주장에 의하여 배격당한 것이다.

그런데 합의문은 합의문대로 발표해놓고 돌아앉아 우리에게 배격당한 일방적인 조건부를 끝내 고집하는 것은 명백히 뉴욕합의문을 뒤집어 엮고 대결상황을 조성하려는 의도적인 술책이라고 밖에 달리 볼 수 없다.

현실적으로 지금 미국은 기구사찰문제와 북남특사교환문제를 구실로하여 팀스피리트 '94 합동군사연습을 기어이 강행하여 유엔안보이사회에서 우리에게 대한 제재를 가하려는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놓으면서 국제적인 반공화국 압력소동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모든 사실은 미국에 더이상 회담을 할 생각이 없고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으며 다만 핵문제와 조·미회담이라는 공간을 이용하여 우리를 고립 압살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확증해 주었다.

미국의 이와같은 배신행위로 말미암아 오늘 조선반도에는

또다시 온민족을 대결과 전쟁의 국면으로 몰아갈 수 있는 엄중한 정세가 도래하고 있다.

미국이 이처럼 뉴욕합의문을 뒤집어 엮고 조·미회담을 결렬시키면서 정세를 극단으로 몰아가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도 동시행동조치와 관련한 우리의 의무를 더는 일방적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부터 우리는 제3단계 조·미회담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하였다.

우리는 또한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가 담보연속성 보장을 위한 이번 사찰결과를 고의적으로 왜곡하여 반공화국 압력의 구실로 악용하고 있는데 대처하여 기구의 담보연속성을 보장해주는 것을 더이상 자기의 의무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이 조치는 합의된 네개의 동시행동의 실행이 합의문의 전반적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명기한 2월 25일부 뉴욕합의문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미국이 우리와 한 약속을 뒤집어 엮는 이상 우리도 미국과 한 약속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우리의 입장은 확고하며 시종 일관하다.

지난해 3월 12일부 우리 공화국 정부성명에서는 우리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의 탈퇴를 선언하게 된 기본이유가 틱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포함한 우리에게 대한 미국의 핵위협 압살정책과 국제원자력기구의 불공정성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우리는 또한 1993년 6월 11일부 뉴욕 조·미공동성명에서 핵문제해결을 위한 조·미회담이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핵무기전파방지조약 탈퇴의 효력발생을 일방적으로 임시 정

지시킨다는 것을 명백히 밝혔다.

만일 미국이 조·미 회담을 끝내 회피하고 팀스피리트 '94 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면서 우리에게 대한 핵위협을 가중시키거나 국제원자력기구가 우리에게 대한 사찰결과를 왜곡하여 불공정성을 더욱 확대하면서 강권과 압력으로 나오는 경우 우리는 민족의 자주권과 국가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지난해 3월 12일 공화국 정부성명에서 천명한 조치들을 실천에 옮기는 방향으로 나갈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조·미 회담이 안되어 핵문제의 해결이 지연된다고 해서 우리에게서 전혀 바뀔 것이 없다.

미국은 조성된 현사태의 심각성을 똑바로 보고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4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대변인 성명

(’94.3.28)

최근 미국은 제3단계 조·미회담을 유산시킨 다음 핵사찰 문제를 가지고 부당하게 국제무대들에서 소동을 피우는 한편 우리에게 대한 군사적 압력책동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이미 중지하기로 하였던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겠다고 떠들면서 남조선에 패트리엇미사일을 배비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난 3월 21일 미국대통령이 내린 명령에 따라 48기의 패트리엇미사일 발사대와 800여명으로 구성된 미사일부대가 지금 미국 텍사스주로부터 남조선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4월 말에는 그것이 남조선에 와닿게 된다고 한다.

이것은 미국이 애당초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핵문제를 우리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

우리는 미국이 남조선에 패트리엇미사일을 끌어들이는 것을 상대방에 대한 핵위협을 하지 말데대한 조·미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노골적으로 파기하고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가기 위한 고의적인 책동으로 단호히 규탄한다.

미국이 대화파탄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면서 패트리엇미사일을 남조선에 반입하는 것은 조선반도의 군사정세를 더욱 불안정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새전쟁을 유발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위협한 군사행동이다.

미국당국자들이 패트리엇미사일을 그 무슨 방어적 무기니 뭐니 하고 있지만 그 무엇으로써도 그 배비를 정당화할 수 없다.

지형상으로 놓고 볼때 크지않은 조선반도에서 패트리엇미사일은 임의의 지점을 타격할 수 있는 공격용으로도 쓸 수 있다.

이 미사일에 어떤 탄두를 장착하는가에 따라 그 타격목표가 마음대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미국이 남조선에 패트리엇신형미사일을 끌어들이려는 것은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우리에게 대한 선제타격을 가하기 위한 노골적인 침략기도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미국은 개량된 신형미사일을 배비함으로써 남조선을 영원히 극동전초기지로 틀어쥐고 이 지역에서 군사경찰노릇을 계속하려는 저들의 야심을 자체폭로하고 있다.

우리인민과 아시아인민들은 조선반도와 아시아의 전반적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미국의 이 분별없는 군사행위에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패트리엇신형미사일을 남조선에 배비하기로 한 미국의 이번조치는 조선정전협정을 난폭하게 유린하고 정전기구를 무시하는 위법행위로 된다.

정전협정에는 조선반도에 군사장비와 작전물자들을 반입하지 말데대하여 명백히 지적되어 있다.

미국은 지난시기에는 그래도 정전협정이 두려워 핵무기를

비롯한 많은 신형장비들을 은폐된 방법으로 남조선에 끌어들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패트리엇신형미사일의 남조선배비를 공공연히 선포하고 백주에 강행하고 있는 것은 미국당국자들이 정전협정이나 정전기구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고 저들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국제적 공약도 헌신짝처럼 집어 던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문제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미국의 핵우산밑에서 자체의 핵철갑모를 뒤집어쓴 남조선당국자들이 계속 외세에 매달려 패트리엇미사일 반입까지 공식요청해 나선 것이다.

이것은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를 압살하기 위한 미국의 책동에 편승하여 핵소동에 가담해 나선 것은 물론 이제는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이행하는데도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남조선당국자들의 행동은 또하나 그들이 특사교환을 실현시키는 것 보다 조·미회담을 파탄시키는데 더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놓고 있다.

미국은 조선반도와 극동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커다란 위협을 주는 미사일을 남조선에 배비하는 것을 당장 중지하여야 하며 남조선당국자들은 동족을 해치는 매국배족행위를 즉시 견어치워야 한다.

만일 미국이 우리의 이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끝내 신형미사일배비를 단행한다면 엄청난 후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이에 대하여 심사숙고해야 한다.

41. UN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성명

Statement of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94.3.31)

The Security Council recalls the statement made by the President of the Council on 8 April 1993(S/25562) and its relevant resolution.

The council reaffirms the critical importance of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IAEA) safeguard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the Treaty) and the contribution which progress in non-proliferation makes to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e Council notes with deep appreciation the efforts of the Director General of the IAEA and the Agency to implement the IAEA-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 safeguards agreement(INFCIRC/403).

The Council reaffirms the importance of the Joint Declaration by the DPRK and the Republic of Korea (ROK)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of the parties to the Declaration addressing the nuclear issue in their continuing dialogue.

The Council welcomes the joint statement of the DPRK and the United States(U.S.) of 11 June 1993,

which included the DPRK's decision to suspend the effectuation of its withdrawal from the Treaty, and the understanding reached between the DPRK and the U. S. in Geneva in July 1993, and the progress achieved on that basis.

The Council welcomes also the agreements reached in February, 1994, between the IAEA and DPRK, and between the DPRK and the U.S.,

The Council takes note that the DPRK has accepted in principle IAEA inspections at its seven declared sites, following its decision to suspend its withdrawal from the Treaty on 11 June 1993, and the statement by the General Department of Atomic Energy of the DPRK(S/1994/319).

The Council takes note also of the IAEA Board of Governors' findings concerning the matter of compliance and the IAEA Director-General's report to the Security Council of 22 March 1994(S/1994/322), and expresses its concern that the IAEA is, therefore, unable to draw conclusions as to whether there has been either diversion of nuclear material or reprocessing or other operations.

The Council calls upon the DPRK to allow the IAEA inspectors to complete the inspection activities agreed between the IAEA and DPRK on 15 February 1994, as

a step in fulfilling its obligations under the IAEA-DPRK safeguards agreement and in honouring non-proliferation obligations of the Treaty.

The Council invites the Director-General of the IAEA to report further to the Security Council on the question of completion of the inspection activities agreed between the IAEA and the DPRK on 15 February 1994 when the Director-General is scheduled to report on the follow-on inspections required to maintain continuity of safeguards and to verify that there has been no diversion of nuclear material required to be safeguarded, as noted in the Director-General's report to the Council(S/1994/322).

The Council requests the DPRK and ROK to renew discussions whose purpose is implementation of the Joint Declaration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Council appeals to those Member States engaged in dialogue with the DPRK to continue that dialogue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reached on February 25 1994.

The Council decides to remain actively seized of the matter and that further Security Council consideration will take place if necessary in order to achieve full implementation of the IAEA-DPRK safeguards agreement.

Ⅱ. 북한 核관련 주요 日誌

빈 면

II. 북한 핵관련 주요 日誌

일 자	남 북 관 계	북·미 관 계	북·IAEA, 유엔관계
1985. 12			북한, 핵 비확산조약(NPT) 가입
1991년 9. 27	「부시」 미국대통령의 핵감축 선언		
11. 8	노태우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		
12. 18	노대통령, 「한국내 핵부제」 선언		
12. 31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 「기본합의서」 채택		
	제3차 남북 판문점회담 -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채택		
1992년 1. 30			북한, IAEA와 핵안전협정 서명
3. 19	남북 핵통제공동위(JINCC) 발족		북한, IAEA 핵안전협정 비준·발효
4. 10			북한, IAEA에 최초보고서(Initial Report) 제출
5. 4			

일 자	남 북 관 계	북·미 관 계	북·IAEA, 유엔관계
5. 11~16			블릭스(Blix) 사무총장 방북
5. 26~6. 5			제1차 IAEA 대북한 임시사찰
7. 8~18			제2차 IAEA 대북한 임시사찰 - 북측 신고내용과 IAEA 분석결과 기간 상이점 조정시작
7. 10			북한·IAEA간 보조약정 일반사항 (general part) 발효 - 시설부족(facility attachment) 은 현재까지 협상계속
9. 1~11			제3차 IAEA 대북한 임시사찰 및 핵폐기물 관련 2개장소 방문
9. 16~17			IAEA 정기 이사회
9. 21~25			IAEA 제36차 총회
11. 2~13			제4차 IAEA 대북한 임시사찰
11. 27	JNCC 제11차 회의 -'93 T/S훈련 문제에 대한 양측 입장 대립		

일 자	남북관계	북·미 관계	북·IAEA, 유엔관계
12. 3~4			IAEA 정기 이사회 -미·일·호·카 등 22개국이 북한 의 핵안전조치 협정 철저 이행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입각한 상호사찰 이행의 중요성 강조
12. 10	JNCC 제12차 회의		제5차 IAEA 대북한 임시사찰
12. 14~19			
12. 17	JNCC 제13차 회의		
1993년 1. 7			북한·IAEA간 협의(비엔나) -블립스 사무총장, IAEA의 방문 요청이 북한 핵계획의 명확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기회를 강조
1. 18~23			IAEA 대표단(단장: 엘바라디) 대북 -2개장소에 대한 방문의 중요성 강조
1. 26	한·미 '93 T/S훈련 실시 발표		
1.26~2.6			IAEA 제6차 임시사찰 실시
1. 29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모든 남북대화 중단」 발표		

일 자	남북 관계	북·미 관계	북·IAEA, 유엔관계
2. 7			북한 외교부 대변인, IAEA 특별사찰 관련 기자회견
2. 8			IAEA, 6차 사찰결과 보고·토의시 IAEA 검증결과와 북한측 신고자료 간 상이점이 해결되지 못했다고 결론
2. 15			IAEA 블릭스 사무총장 '특별사찰' 촉구 - 제6차 사찰결과 '중대한 모순'이 있음을 밝힘(IAEA의 복식적 결과설에 대한 최초의 공식적 결과 발표)
2. 18			손성필 주러시아 북한대사, 특별사찰 관련 기자회견
2. 19			IAEA, 이사국대상 북한 해문제 관련 비공식 협의회 개최
2. 20~21			최우진 핵통제 공동위원회 북측 위원장, '특별사찰' 추진 관련 비난성명 발표
2. 25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공동위 북측위원장 "T/S 혼란" 및 '특별사찰' 추진 중지 촉구		북한 대표단(단장: 최화근 원자력공업부장) IAEA 방문 IAEA 정기 이사회, 대북한 특별사찰 수락 촉구 결의 채택

일 자	남북 관계	북·미 관계	북·IAEA, 유엔관계
2. 26			IAEA 정기 이사회의 북한대표단, '특별사찰' 거부 성명 발표
3. 2			중국·러시아 주재 북한대사(주장준, 손성필), IAEA 대북한 '특별사찰' 수락 촉구 결의안 채택 관련 기자회견
3. 8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 T/S훈련 실시 관련 '준전시상태' 선포		
3. 12	한국, 북한 NPT 탈퇴선언에 대한 정부성명 발표		북한 중앙인민위원회 제9기 제7차회의, NPT 탈퇴 결정 북한, 정부성명을 통해 NPT 탈퇴 선언 북한 외교부 제1부부장 강석주, NPT 탈퇴에 대한 북한 정부입장 발표 북한, 안보리에 NPT 탈퇴 통고 공한 전달 및 IAEA 사무국에 NPT 탈퇴 성명 FAX 송부 블릭스 사무총장, 북한의 NPT 탈퇴 관련 조치 계획 및 사찰단 파견 제의 계속 유효내용의 전문 발송

일 자	남 북 관 계	북·미 관 계	북·IAEA, 유엔관계
3. 16		북·미 제30차 북경 참사관 접촉	북한, 블릭스 사무총장의 사찰단 파견 회의(2. 26, 3. 10, 3. 12)에 대한 회신 - 사찰단 접수 불가 - 모든 사태의 책임을 블릭스 사무총장에 전가
3. 17			이철 주재내바 북한대사, NPT 복귀 가능성 시사(교도통신 기자회견) IAEA, 비공식 이사국 협의회 개최 NPT 기탁국회의(미, 영, 러) - 공동성명 발표 합의
3. 18			IAEA 특별이사회, 대북한 결의(GOV/2639) 채택 주유엔 북한 대표부 허종 차석대사, NPT 복귀 가능성 시사
3. 24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 '전국, 전민, 전군에 준전시 상태를 해제한 데 대한 명령' 발표	북·미 제31차 북경 참사관 접촉	
3. 29			북한 외교부 대변인, 담화 발표

일 자	남북 관계	북·미 관계	북·IAEA, 유엔관계
3. 31			<p>북·IAEA, 유엔관계</p> <p>한스 블릭스 IAEA 사무총장, 특별 이사회 보고</p> <p>빈 주재 북한대사 김광섭, IAEA 특별이사회 발언을 통해 '안전조치 협정 이행용의' 표명 및 '임시사찰 수용용의' 발언</p> <p>IAEA 특별이사회, 북한의 안전조치 협정 불이행의 유엔안보리 보고 결의 채택</p> <p>블릭스 사무총장, 북한 최학근 원자력 공업부장관 취임 발송</p> <p>- IAEA 특별이사회 결의내용 전달</p> <p>- IAEA 사무국의 대북한 사찰단 상시 파견 테세 언급</p> <p>NPT 기탁국(미, 영, 리) 공동성명 발표</p> <p>- 대북한 NPT 탈퇴선언 철회 및 동조약과 안전조치협정상 의무 이행 촉구</p>
4. 1			<p>북한 외교부, IAEA 이사회 결의 비난성명 발표</p> <p>유엔안보리, 북한 핵문제 비공식 협의회 개최</p> <p>- 블릭스 IAEA 사무총장, 북한 핵문제 현황 보고 및 대북한 회담제의</p>
4. 5			
4. 6			

일 자	남 북 판 계	북·미 판 계	북·IAEA, 유엔관계
4. 7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회의 개최 - 친민족대단결 10대강령, 남조선 에 대한 4가지 요구		유엔안보리, 북한 핵문제 안보리의 장 - NPT 및 회원국들의 의무이행 준수의 중요성 재확인
4. 8			최학근 북한 원자력 공업부장 성명 발표 - IAEA 이사회 대북 결의(2. 25, 3. 28, 4. 1) 채택 비난
4. 9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회의의 에서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선출		북한 외교부 대변인, 안보리의장 성 명 발표 관련 답화 발표 - NPT 탈퇴 및 핵안전조치협정 이행관련 문제는 자주권에 속하 는 문제로 안보리 논의 불가
4. 10			북한 외교부 대변인, 유엔안보리의 장 성명(4. 8) 관련 답화 발표
4. 12			손성필 주러 북한대사, IAEA와의 '협상용의' 표명(기자회견)
4. 21		북한 외교부 대변인, 북·미 고위급접촉 관련 기자회견	

일 자	남 북 관 계	북·미 관 계	북·IAEA, 유엔관계
4. 22	통일원 대변인, 북한 NPT 복귀실발 및 타노포프 차관 발인 관련 논평 발표	미국무부 정무차관 피터 타노포프, 북한 핵문제 해결을 접 위해 '미·북한간 고위급 접촉' 가능성 시사	주 유엔 북한대표부 박길연 대사, NPT 탈퇴 철회 결정 부인
5. 7			북한, IAEA 사찰단에게 임국비자 발급 -방북기간: 5.8~16 -방북목적: 사찰장비 점검 및 교체
5. 10		제33차 북·미 북경참사관 접촉 개최	IAEA 사찰단 방북, 안전조치 장비 교체 및 정비 실시
5. 10~14			유엔안보리, 대북결의(825호) 채택
5. 11			-북한에 NPT 탈퇴철회 재고 및 NPT 준수 촉구 주유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 허종, 북한 핵문제 관련 IAEA에 대표단 파견 및 남북해통제 공동위 회담재개 발언
5. 12	한국 외무부 대변인, 유엔안보리 대북결의 채택 관련 성명 발표		북한 외교부 대변인, 유엔안보리 대북결의 채택 비난 설명
5. 14	김덕 안기부장 임시국회 국방위원회에 '추변정제' 보고		

일 자	남 북 관 계	북·미 관 계	북·IAEA, 유엔관계
5. 17~21		북·미 고위회담을 위한 1, 2차 뉴욕 예비 접촉	
5. 20	황인성, 남북 고위급회담 수석대표, 북한 핵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대표접촉」 제의		
5. 25	정무원 총리 강성산, 「최고위급 특사교환」 제의		
5. 27		주유엔 북한대표부 허종부 대사, 「북·미 고위급회담」 관련 「대미 6개항 요구조건」 제시	
5. 28			주오스트리아 북한대사 김광섭, 핵문제 관련 북한측 입장 표명
5. 30		「북·미 고위급 회담」 북측 대표단장 강석주, 뉴욕도착 성명	
6. 2	남북 고위급회담 수석대표 황인성, 「남북당국간 실무대표접촉」 제의	북·미 제1단계 고위급회담 (6. 2~11, 뉴욕)	
6. 3			박길연 주유엔 북한대사, 유엔경제 조차시 「한국전쟁재발」 발언
6. 8	강성산 북한총리, 「최고위급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 수락 촉구 (전통문)		

일 자	남 북 관 계	북·미 관 계	북·IAEA, 유엔관계
6. 10			김광섭 주오스트리아 북한대사, 「새로운 핵사찰 방법」 관련 발언
6. 11		강석주 북·미 고위급회담 북측 수석대표, 회담 개최 결과 관련 기자회견	
6. 12	한국 외무부 대변인 성명		
6. 16			한스 블릭스 IAEA 사무총장, 대북 핵사찰 재개 관련 기자회견
6. 18		강석주 북한 외교부 제1부 부장, 「북·미 회담」 관련 담화 발표	
6. 22	황인성 총리, 「특사교환」 관련 대북 진통문		
6. 27		북·미 제2단계 회담 관련 예비회담 개최	
7. 3		주창준 주중 북한대사 북·미 관계 정상화 및 IAEA의 불공정문제 관련 발언	
7. 10	한·미 정상회담 개최(서울)	북한, 미군유해 17구 미국 추에 인도	

일 자	남 북 관 계	북·미 관 계	북·IAEA, 유엔관계
7. 14~19		북·미 제2단계 고위급회담 (체네바) - IAEA 안전조치의 안전성, 공정한 적용의 중요성 재확인 -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의 중요성 재확인	북·IAEA, 유엔관계
7. 19		북·미 제2단계 회담 관련 강석주 북한측 수석대표 회견	IAEA 사찰단(3명) 방문 - 북측의 비협조로 제한적인 사찰 활동 수행
7. 20	한국 외무부 대변인, 북·미 체네바 회담 관련 설명	북한 외교부 대변인, 북·미 체네바회담 관련 기자회견	
7. 22			
8. 3~10			
8. 4	남북고위급회담 남측 수석대표 항인성 총리, 「남북해통제공동위원회」 개최 제의		
8. 9	남북고위급회담 북측 대표단 「해통제공동위원회」 개최 및 「특사교환을 위한 T/S 혼련 중지 및 국제공조체 포기 등 2개 전제조건 최초 거론)		
8. 11~12	한·미 및 한·미·일 실무협의 개최 - 대북 전략 공조 재확인		

일 자	남 북 관 계	북·미 관 계	북·IAEA, 유엔관계
8. 14	남북 고위급회담 남북대변인, 남북 해통제 공동위원회 개최 촉구 통일관계 장관회의, 해문제 관련 정부입장 결정	북·미 미군유해 발굴에 관 한 합의서 교환	최학근 원자력 공업부장, 안전조치 이행문제협의 관련 IAEA 블릭스 사무총장앞 전문
8. 18		윈스턴 로드 미국무부 동 아·태 차관보 이지역에 대 북 한 3대 정책기준 「원칙적입 장」 발표	북한·IAEA간 협상개최 (평양: 8. 31~9. 4) - 북측의 공정성 문제 시비로 안 전조치 합의 도출 실패
8. 24	남북 고위급회담 북측 대변인, 「최 고위급 특사교환」 관련 담화 발표	손성필 주러시아 북한대사, 북·미회담 관련 기자회견	
8. 31	황인성 국무총리,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접촉」제의	감루치 차관보 강석주 부 부장앞 서한 발송 - 북·미간 3단계 접촉의 전 제조건, 북한·IAEA 2차 협의를, 남북대화 등 언급	
9. 2		미하원,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9. 10			
9. 13	갈루치 미국무부 정치·군사담당 차 관보 방한		

일 자	남 북 관 계	북·미 관 계	북·IAEA, 유엔관계
9. 14		강석주 부부장, 대미국 서 한 발송 -북·미 3단계 접촉 전제조 건, NPT 탈퇴 등 언급 제34차 북·미 북경참사관 접촉	
9. 15			블릭스 사무총장, 9월 이사회 및 안 보리에 대해 보고서 제출 -대북 안전조치협정 발효시('92- 4. 10)부터 현재까지의 조치내용 사실적 기술
9. 21	남북 고위급회담 북측대변인, 특사 교환관련 담화 발표		블릭스 사무총장, IAEA 정기이사 회 북한 핵문제 보고
9. 21~24			IAEA 이사회, 북한 핵문제 결의 채택
9. 27			블릭스 사무총장, 제37차 IAEA총 회에 북한 핵문제 보고
9. 29	한승주 외무부 장관, 제48차 유엔총회 연말을 통해 북한 핵문제 해결 촉구		
10. 1			IAEA 제37차 총회, 북한 핵문제 결의 채택
10. 2	강성산 총리, 「특사교환을 위한 실 무대표 접촉」 개최 제의		-북한의 IAEA 임시 및 일반사찰 수락거부로 안전조치협정 불이 행의 범위 확대에 우려 표명

일 자	남 북 관 계	북·미 관 계	북·IAEA, 유엔관계
10. 4			북한 외교부 대변인, 제37차 IAEA 정기총회 대북결의 채택관련 담화 발표
10. 5	「특사교환을 위한 제1차 실무대표 접촉」 개최		에커만 미하원 외무위 동아·태 위원장, 방북
10. 9			최학근 부장 담화 발표
10. 11			- 유엔 사무총장의 IAEA총회 폐시지를 날조한 IAEA는 더이상 북한과 상충할 자격상실
10. 12		북측 일괄타결 방안 제시 - 애커만 의원 방북시 수행한 키노네스 북한당 관에게 비공식 문건 전달	블릭스 총장, 유엔안보리 추가보고서 제출 - 9. 16 보고서에 대한 추가
10. 15	「특사교환을 위한 제2차 실무대표 접촉」 개최		미국무부, 「IAEA 안전조치의 계속성 중단」 및 「대북한 제재조치」 결정 가능성 시사
10. 16			북한 외교부 대변인, 국제제재조치관련 담화 발표

일 자	남 북 관 계	북·미 관 계	북·IAEA, 유엔관계
11. 1			유엔총회, 북한 핵문제 포함한 결의 채택 - 안전조치협정의 불이행 범위 확대에 우려 표명
11. 12			강석주 부부장 일괄타결 방안에 관한 답화 발표
11. 17~18	한·미 및 한·미·일 협의개최 - 북한 핵문제 대응방안 협의		
11. 23	한·미 정상회담 - 「철저하고 광범위한」 접근방안 합의		
11. 24		북·미 실무접촉(하버드-허중) - 한·미 정상회담 결과 전달	
12. 3		북·미 실무접촉(하버드-허중) - 북측 부분사찰 허용 용의 표명	IAEA 12월 이사회 - 사무총장 보고 및 주요 이사회 발언
12. 10		북·미 실무접촉(하버드-허중) - 미측 최종입장 전달(7개 장소 사찰허용시 동시 조치)	
12. 20		북·미 실무접촉(하버드-허중) - 2개 장소에 대한 사찰 허용의 문제를 IAEA와 협의	

일 자	남 북 관 계	북·미 관 계	북·IAEA, 유엔관계
1994년 1. 7			북·IAEA 사찰 협상개시(빈)
2. 9~13		한승주 외무장관 방미	
2. 15		한승주 외무장관 방미(2. 18 클린턴 대통령면담시 김 대통령 친서전달)	북한, 7개 신고시설 대상 IAEA 사찰 수용의사 표명
2. 17~19			IAEA 정기 이사회 개최
2. 18~21			
2. 25	김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북한 핵개발 저지에 도움이 된다면 김일성 북한 주석과의 상회담 추진 의사 천명	북·미 실무접촉(뉴욕)시 4개 동시조치 합의 -7개 신고시설에 대한 IAEA 사찰 수용 -남북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 제개 -94 T/S호련 중지 -북·미 3단계 회담 개최 일정 합의	
2. 28	한국,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 제개 제안		

일 자	남 북 관 계	북·미 관 계	북·IAEA, 유엔관계
3. 3	한국 국방부, '94 T/S훈련의 조건부 중단 발표	미국, 북·미 3단계회담 일정(3. 21 예정) 발표	IAEA 연속성 보장을 위한 대북 사찰
3. 3~14			
3. 3	특사교환을 위한 4차 실무접촉		
3. 9	특사교환을 위한 5차 실무접촉		
3. 12	특사교환을 위한 6차 실무접촉		
3. 16	특사교환을 위한 7차 실무접촉		
3. 19	특사교환을 위한 8차 실무접촉		
3. 21			IAEA 특별이사회 북핵 관련 결의안 채택
3. 31			북핵 관련 유엔 안보리의장 성명

◎發刊資料目錄 案內◎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김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 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 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的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 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Ⅳ)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Ⅲ)-
- 93-07 東北亞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 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備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備統制條約의 示 唆點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析을 中心으로
- 93-2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공동체」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1993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진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 安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 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 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 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 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 會議를 계기로 본
亞·太地域 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北韓 核問題와 美·北 關係改
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대외개방 現황과 전망-외자유치 관련법 제
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 核問題에 대한 中國의 立場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9期 第7次會議 結果 分析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1993. 6. 30)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1993. 9. 30)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1993. 12. 31)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論叢〉

-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資料〉

- 92-01 統一 및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및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93-03 獨逸統一條約 批准法律

北韓 核問題와 南北關係
－展開過程 및 發展展望－

年例情勢報告書 94-01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政策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2-4726, FAX : 232-5341

印刷處 웃고문화사 전화 : 267-3956

印刷日 1994년 4월 일

發行日 1994년 4월 일
